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제3장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제5장 기타 사례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사례

명예훼손 사례 1

옥션 집단소송사건 보도에서 착수금에 소송비용이 포함되고, 성공보수는 전부 승소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명확하게 하였으므로 구체적 내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반론청구는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가합16890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09년 4월 21일 박○○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8년 7월 26일 MBC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원고가 소송참가비로 6억 6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비가 132억원이라면서 수임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과다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최○○ 변호사 인터뷰 방송 부분에 관해서는 반론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부분에 대한 정정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막으로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이라고 보도하여 3만 원 가운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소송참가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공보수 방송 부분도 성공보수가 132억 원이라는 계산은 전부 승소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명확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청구와 관련하여 “착수금에 인지대가 40~50%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반론청구는 원문 보도의 내용에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서, “성공보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의 반론 청구는 결국 원문 보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다시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역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종이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1만명이면 명단에 1만명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최○○ 변호

사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견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12월 7일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8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23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6890 정정 및 반론 보도

원 고 : 박 ○ ○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09. 4. 7.

판 결 선 고 : 2009. 4. 21.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 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중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 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중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 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만일 원고가 제1, 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

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7. 26. 21:40경부터 22:40경까지 60분 동안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과다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송참가비 3만 원에 성공보수 30%를 받기로 하고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원고는 2만 2천 명의 피해자를 모아 소송참가비만 6억 6천만 원을 받았고,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한 돈을 모두 받게 되면 성공보수로 132억 원을 받게 된다. 작년 11월 국민은행 정보유출 소송 처럼 청구금액 중 2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받는 돈은 13억 원이 넘는다. [피고는 위 내용의 보도시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2만 2천 명=약 6억 6천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2만 2천 명×30%=약 132억 원, 총 138억 6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 부분’이라 한다.)

② 최○○ 변호사는 피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1백 명이든 1만 명이든 법률사무소의 일이 어떤 종이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만 명이면 명단에 1만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 변호사 인터뷰 방송 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원고는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에 관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4.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8. 18.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을1, 을6의 1 내지 31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

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의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을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원문 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이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 부분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육선 소송의 착수금에는 인지대가 40~50% 정도 포함되어 있어 착수금을 변호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200만 원도 전부 인용 받는 것이 아닌데, 피고는 이를 부풀려서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별지 1 중 정정보도요구문의 내용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별지 1 중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착수금 방송 부분에 원고가 지급받는 착수금 3만 원중에 인지대가 40~50%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막으로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이라고 보도하여 3만 원 가운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소송참가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공보수 방송 부분도 성공보수가 132억 원이라는 계산은 전부 승소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명확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 부분이 허위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2)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문보도에서 자막으로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이라고 보도하여 3만 원 가운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 한 점, 소송참가비 중 인지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지는 이 사건 착수금 보도의 핵심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착수금에 인지대가 40~50%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반론청구는 원문 보도의 내용에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또한, 성공보수가 132억 원이라는 계산은 전부 승소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문 보도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므로, 성공보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의 반론 청구는 결국 원문 보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다시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역시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방송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최○○ 변호사 인터뷰 방송 부분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수만 명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다른 소송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인력과 시간이 드는데, 종იდ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과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은 ①입금자를 대조하여 원고 명단을 작성하는 일, ②위임장에 원고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일, ③소송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 ④ 문의 전화를 처리하는 일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원고의 주장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인력과 시간이 드는 어려운 일’인지 아니면 최○○ 변호사의 주장처럼 ‘1백 명이든 1만 명이든 종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명단에 1만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쉬운 일’인지는 증거에 의하여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견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 변호사의 “원고가 1만 명이면 명단에 1만 명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인터뷰의 내용을 ‘집단 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갑1, 을1의 각 기재, 을1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부분의 방송에 이어서 곧바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소장 내고 앞으로 관리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라는 원고의 반론을 남자 아나운서의 육성과 자막으로 함께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반론은 원문보도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더 이상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 변호사 인터뷰 방송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자 뉴스 후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P변호사의 옥션 상대로 한 소송의 “착수금 3만 원×2만 2천 명=6억 6천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2만 2천 명×30%=132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제로 착수금의 경우 인지대가 40~50% 정도 차지하여 위 착수금을 변호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200만 원 전부를 인용 받는 것은 아니므로 성공보수 계산도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반론보도 요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자 뉴스 후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P변호사의 옥션 상대로 한 소송의 “착수금 3만 원×2만 2천 명=6억 6천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2만 2천 명×30%=132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옥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P변호사는 “실제로 착수금의 경우 인지대가 40~50% 정도 차지하여 위 착수금을 변호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200만 원 전부를 인용 받는 것은 아니므로 성공보수 계산도 부풀려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 요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자 뉴스 후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종이가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1만 명이면 명단에 1만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라는 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옥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P변호사는 “수만 명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다른 소송과 달리 같은 시간대에 입금한 수많은 입금자를 대조하여 원고 명단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수만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2년여의 소송 과정 중에 소송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수많은 문의 전화를 처리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인력과 시간이 들므로 종이도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최변호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중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은 허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6월 17일 농림수산물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정정보도문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8년 4월 29일 MBC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 18일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로 정정보도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가 일어설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현재까지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의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정도의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② 아래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래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래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아래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③ 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의하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였다는 오해를 국민들로 하여금 받게 되어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④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한국정부는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⑥ 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시행되던 수입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되던 뼈 조각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시스템의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도 내용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⑦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두고 원고는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사이에 2개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현지조사 중 파악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측에 해명을 요구하여 미국측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으로 미국의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7. 7. 19.부터 2007. 10. 12.까지 사이에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으며, 위

와 같은 회의에 앞서 원고 나름대로 광우병에 관한 미국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등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5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2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 및 반론)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되었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7~128면 참조)

판결문

사 건 : 2008나80595 정정, 반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농림수산식품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4. 1.

판 결 선 고 : 2009. 6. 17.

주 문 : 1. 당심에서의 일부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나.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다. 만일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10일째 되는 날의 MBC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화면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10일째 되는 날의 MBC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화면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4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정정 및 반론보도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4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 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축산물의 식품안전확보와 그로 인해 유입될 수 있는 동물질병방역, 국내유통관리 등도 그 소관사무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운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일컫는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

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상황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원고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피고는 별지 5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이 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PD 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한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하고 일컫는)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2)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기관 또는 단체와 별개의 자연인인 그들의 대표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인 원고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따라서, 원고의 대표자인 장관에 의하여 제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거나 국가기관인 원고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

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제①주장(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들이 도축 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내보내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의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사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헨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일준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 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피고는 생방송 중의 말실수라고 주장하나, 진행자인 송일준 프로듀서조차도 이 동영상을 본 후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뒤 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은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5,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현재까지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의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일준 프로듀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라고 묻자, 오동운 프로듀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일준 프로듀서가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제①보도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론보도로 구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후속보도의 내용 중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 중 이 사건 제①보도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고, 위 후속보도의 내용 자체도 다우너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동영상 속 다우너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후속보도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도의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②주장(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펔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사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롯이 “일반 크로이츠펔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배계(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②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갑8의 1, 9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

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오동운 프로듀서가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6. 17.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일준 프로듀서가 “지난 12일 CDC, 즉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13). 그리고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2008. 6. 12.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위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방송을 통하여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③주장(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

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③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된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불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의하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였다는 오해를 국민들로 하여금 받게 되어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는 정부기관으로써 일반 개인과 달리 보도 자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보도 이후 국민들에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은 2가지’라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왔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전인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분류한 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에 의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반론보도로서 구하는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산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는 위 전문가 회의에서 분류한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 다르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전문가 회의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3항에서 국가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정부기관이고,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입장을 표명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제④주장(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 송일준 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

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거나 그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위 후속보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 발병확률을 94%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확률 수치만을 정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후속보도로써 허위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제⑤주장(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련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준근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라는 송일준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준근 프로듀서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

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⑤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의 보도는 이 부분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의 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8, 20, 을29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미국에 BSE(광우병을 의미하는 ‘소해면상뇌증’의 영문 약어이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0조는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

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b)호에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한국정부는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원고의 제⑥주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⑥주장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춘근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일준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춘근 프로듀서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⑥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정위험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

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3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시행되던 수입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되던 뼈 조각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시스템의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도 내용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⑥보도 중 쟁점 부분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 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의 제⑦주장(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⑦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스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보슬 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일준 프로듀서의 질문에, 김보슬 프로듀서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보도를 받아들이

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하여 보면, 그 내용은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22, 23, 26, 27, 을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두고 원고는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사이에 2개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현지조사 중 파악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측에 해명을 요구하여 미국측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으로 미국의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7. 7. 19.부터 2007. 10. 12.까지 사이에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으며, 위와 같은 회의에 앞서 원고 나름대로 광우병에 관한 미국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등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하고,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하고, 반론보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타기2133호로 이미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부분에 관하여만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일부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의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우리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체결 전인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 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반론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

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 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3〉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4〉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5〉 언론중재위원회결정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3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3229 판결 (확정)

사실개요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009년 1월 14일 이○○ 외 345명(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선정자)와 그 대표이사 조갑제(선정자) 및 소속 기자인 우○○(선정당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우○○은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통권 제259호)에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 제하의 기사에서 소위 여순사건의 발생경위 및 역사적 평가,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의 제작과정 및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제주4·3 사건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된 인원이 9,860명이면서,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사실의 적시가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란 무장소요사태를 일으킬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을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10일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1~153면 참조)

판결문

사 건 : 2008나3229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이○○ 외 345명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우○○
 제 1 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2가합560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12. 3.
 판 결 선 고 : 2009. 1. 14.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주4·3 사건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법에 규정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선정자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월간지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며, 선정자 조갑제는 선정자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의 대표이사이자 월간조선의 편집장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월간조선’의 취재2팀장이다.

나. 제주4·3사건의 개요

(1) 의의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발발원인 및 진상에 대한 여러 견해

(가) 제주4·3사건의 성질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제주4·3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① 남로당의 선

동과 음모로 인하여 무고한 제주시민들이 희생당한 폭동이라는 견해, ② 좌익세력의 우익정부에 대한 반란이라고 보는 견해, ③ 제주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중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 ④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나)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이 좌파적 시각을 말살하던 1980년대까지는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 후 사회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1947. 3. 1. 봉기시 민간인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던가, 미군정수립을 반대하는 것이 그 직접적인 동기라던가, 육지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과 제주도에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이러한 원인들이 종합된 민중항쟁이라고 보거나, 좌익계열의 모험적 도발과 미군정과 한국민주당의 과잉집압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제주4·3사건에 접근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 결국 해방전·후의 역사에 대한 인식차이와 당시 제주도의 여러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발생원인 및 성격을 달리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과

(가) 1948. 4. 3. 이전의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제주도에서 경제적 불안과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1945. 9. 22. 결성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제주도 전역에 자치행정을 실시하여 오던 중, 1945. 9. 28.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정이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자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7. 초 경 남로당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던 3·1절 기념 대규모 집회 후 가두시위 중 경찰의 발포에 의하여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제주도내의 관공서와 학교·직장에서 납세거부 및 파업투쟁이 일어났다. 미군정과 경찰은 서북청년단 등 지원세력을 증원받아 이를 강경하게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발적인 테러행위가 있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예비검속 등 혐의자에 대한 체포, 구금이 계속되었다. 그로 인하여 속칭 ‘종달리 사건’과 ‘2·7사건’ 등에서 상호 피해가 속출하였고, 경찰에 연행되었던 일부 청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

(나) 1948. 4. 3. 이후의 상황

(1) 1948. 4. 3. 사건의 본격적인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 5. 10.에 실시되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1948. 4. 3. 02:00경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인 무장유격대를 동원하여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는데, 이 습격으로 경찰관 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초기 미군정과 경찰 수뇌부는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무장유격대는 투표거부운동을 주도하면서 무기로 무장하고, 기습공격을 통하여 경찰관 등을 살해하고, 경찰지서 등에 방화하였다. 무장유격대의 이러한 공격과 투표거부운동으로 인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만 선거를 실시하

는 등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2) 진압과정

미군정은 1948. 5. 15. 이후 진압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 8. 15. 수립된 후 정부는 진압경찰과 군 병력을 증원하여 대규모 소탕작전을 준비하였고, 이에 맞서 무장유격대는 1948. 10. 1. 소련혁명기념일을 기해 제주도 일원의 경찰지서와 진압군에 대하여 기습을 벌이는 등으로 대항하였다. 정부가 이른바 ‘초토화전술’을 채택하여 무장유격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친 결과, 결국 1949. 3.경에는 무장유격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1949. 5. 15.에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토벌과정에서 쌍방 간에 적대세력,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을 공격하여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진압군은 단지 무장유격대와 연결되는 의심이 있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공산주의활동을 한 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전력을 문제 삼거나, 그들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들을 살해하고, 주민들은 이를 피하여 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이들도 무장유격대원 또는 그 동조자들로 간주되어 진압군에 의하여 피살되는 무리한 진압이 빈발하였다.

1954. 9. 21. 마침내 한라산에 대한 입산금지가 해제됨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평시체제로 환원되었다. 다만, 일부 잔존 무장유격대는 1956. 지서를 습격하는 등 간헐적으로 활동하였으나, 1957. 최후의 유격대원 오〇〇이 검거됨으로써 제주4·3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4) 피해상황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994. 2.부터 1999. 12. 31.까지 피해신고를 받아 조사한 희생자의 수는 14,841명이고, 2000. 6. 8.부터 2001. 5. 30.까지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모름 1,266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는 잠정적으로 4·3사건 전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민의 최대 추정인구가 약 27만 명 내지 약 3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명피해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희생자로 파악된 인원 중 적극적인 무장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의 유·노년층이 각 약 6%에 이르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특별법의 제정

(1) 제정목적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지 50년이나 지났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전개되던 중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억울한 희생을 신원(伸冤)하며,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

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과 민족의 단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희생자의 확정

(가)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1960. 4. 19. 이전까지는 제주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으로서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은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 1996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1999.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도 2000헌마238,302(병합) 사건에서 “군경의 진압과정이나 무장유격대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중 무장유격대 또는 진압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보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현재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제주4·3사건의 발발 및 전개에 책임이 있는 공산주의자 및 무장세력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나) 위원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을 제외하고 제주4·3사건의 발발, 전개 및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희생자로 보고, 2005. 3. 17. 현재 전체 신고자 14,373명 중 68.6%에 해당하는 9,860명을 희생자나 유족으로 심의 확정하였다.

라. 월간 조선의 기사 내용

피고는 2001. 10. 1. 발행된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통권 제259호)에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대제목과 ‘여순 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비호하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왜곡한 영화제작에 헬기·트럭 등 군장비를 지원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약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본문에서 소위 여순사건의 발생경위 및 역사적 평가,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의 제작과정 및 내용, ‘애기섬’ 제작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및 입장변화 과정, ‘애기섬’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밑줄은 원문에는 없음).

• 여순14연대 반란사건은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1948. 5. 10. 실시되었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주둔 14연대 1개 대대에 제주도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14연대 내부의 일부 좌익 군인들이 1948. 10. 19.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켰다(한국전쟁사 참조).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4·3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4·3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순 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사건이라고 호칭했다.

• 다큐멘터리 영화라면 사실에 접근해야지 사실과 동떨어지면 잘못된 역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순사건은 제주4·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제주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마. 북한의 관련 여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의 하나’로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여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3. 5. 2.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는 북한과 소련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글도 있는데,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원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의 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보수적 입장에 있는 필진들에 의하여 위 글이 인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이 2002. 7. 11. 그와 같은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남로당 전문연구가인 김○○의 증언 등과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제주4·3사건은 발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 개입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7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 김□□, 박□□, 이□□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2007. 6. 1.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폭동’, ‘제주4·3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 ‘제주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하였다’

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로 보도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애기섬’의 제작에 헬기 등 군장비를 지원한 군수 뇌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논평 혹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 이 사건 기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인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 ‘제주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위 기사 부분을 그 기사의 전체적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제주4·3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평가한 ‘의견표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등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점 및 그 의견표명에 전제된 사실과 단정적 표현방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는 위 기사부분을 통하여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4·3사건을 일으켰다’, ‘5·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들이 제주4·3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지적인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집단만을 표시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주4·3사건의 관련자는 무장유격대, 진압군, 희생자로 구분되는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무장유격대가 아니라 희생자들과고, 위원회에 2005.3.17. 현재 신고된 전체 희생자만 하여도 무려 14,373명에 이르고, 그 중 68.6%에 해당하는 9,860명이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되어(위 위원회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5,000명~30,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사실의 적시가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제주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개별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성명 기타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주4·3사건은 1960.4.19.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은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나, 1961. 이후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논의로 인하여 1999. 특별법 제정당시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제주4·3사건의 관련자들을 무장유격대, 진압군, 희생자로 구분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란 1947.3.1.을 기점으로 하여 1954.9.21.까지 계속된 제주4·3사건 기간 중에서 1948.4.3. 무장소요사태를 일으킬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제주4·3사건의 전개 및 진압과정에서 무

고하게 희생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을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목록

1. 이 ○ ○ 외 345명

〈별지 2〉 선정자목록

1. 우 ○ ○
2.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3. 조 갑 제

원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15239 판결 (파기환송심,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는 2009년 1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 외 18개 시민단체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4년 9월 1일자 및 2일 자 조선일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등 6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9년 11월 25일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내지 문제제기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5년 8월 17일 “피고가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위 두 사실 외에도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선일보사나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김○○이 그와 같은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도 2006년 8월 16일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193~212면 참조)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다60908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 2004총선시민연대 외 18개 시민단체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김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1. 30.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활동의 내용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2004충선시민연대(이하 ‘원고 충선시민연대’라고 한다),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기독교청년회, 참여자치21, 환경운동연합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충선시민연대의 대표자라 하여 소를 제기한 박○○에게 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박○○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서는 직권으로 박○○에게 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조사함으로써 과연 박○○이 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판시 이 사건 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및 그 부제목 바로 아래의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또 다른 부제목의 배치, 제목의 크기, 제목과 중간제목 문구의 내용과 구조, 더구나 ‘낙선운동’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으로부터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이나 그 표는 대강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각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목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시민단체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내용이라든가, 기사 말미에 “‘낙선운동’과 더불어 총선 당시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 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대비되는 문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를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소제목 자체만으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어느 단체가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표현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본문은 그 첫머리에서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다음,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각 지원금의 액수 및 지원방법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2004. 4. 실시된 총선과정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에 대비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였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보도내용은 공적인 존재인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중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가 ‘낙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함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에 있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 건 : 2009나15239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2004총선시민연대 외 18개 시민단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김○○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66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변 론 종	결 : 2009. 9. 30.
판 결 선	고 : 2009. 11. 25.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주민자치 생활화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단체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여성복지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녹색자치의 실현 등을 목표로 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모니터, 언론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문화연대는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는 청소년·시민문화·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감시·비판·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참여자치21은 지역사회·지방자치·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민족예술의 창작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권익신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위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17대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2004. 1. 12.경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2. 3.경 총 32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를 ‘원고 총선시민연대’라 하고,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가 게재·보도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이며, 피고 김○○, 환송전 사건의 공동피고 주○○, 이○○, 정○○, 박○○은 피고 조선일보 소속의 기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1.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 면에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라는 제목과 “행자부 150억·복지부 85억·국방부 29억, 낙선운동단체들도 돈 받아… 정당 성 논란”이라는 부제목으로 주○○, 이○○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 이 사건 1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현황’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가 몇 개의 시민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사 내용 우측에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별지 1-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좌측 상단 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1억 3,000만원까지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각 부제목으로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 이 사건 2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기사 내용 좌측에 ‘정부지원 단체 중 중앙본부 혹은 지방조직이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느 부처로부터 어떤 사업목적으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별지 2-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민언련 등 일부 관련단체”라는 제목으로 이○○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2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정권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 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수억 집중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이 작성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4 기사’라 한다)를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2.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 면에 “시민단체에 411억 … 아낌없이 퍼주는 혈세”라는 제목과 “기준·용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부제목으로 정○○, 박○○이 작성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5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31면 좌측 상단면 사설란에 “시민단체, 옥석을 가려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3) 피고 디지털조선도 이 사건 각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2004. 9. 1. 및 2004. 9. 2. 인터넷홈페이지에 게

재·보도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내용

(1)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한 단체인바, 2004년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원고 환경운동연합의, 원고 여수 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청년회의 각 하부단체로서 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대표자인 박○○은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박○○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3, 16, 19,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200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총선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분의 처리와 이 사건 소송의 유지 등의 한정된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여수 기독교청년회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대표자 박○○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대표자는 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판단의 기준·범위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

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및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3, 4 기사

(가) ① 이 사건 1 기사는, 정부가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과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총 411억원을 565개 시민단체에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 정부 언론 정책을 앞장 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각 부처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② 이 사건 3 기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취재를 시도하였는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취재를 거부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다른 시민단체들의 답변 내용 등을, ③ 이 사건 4 기사는, 당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고, 정부의 언론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의 각 부처(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로부터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출간, 신문고시 개정방안 토론회 등의 명목으로 언론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1 기사 중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만 한해 수십 억원에 이르는데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은 모두 앞서 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조선일보 등의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가 일반 독자들에게 정부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사실’과 ‘낙선운동’이 대가관

제에 있거나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3, 4 기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 1, 3, 4 기사는 “정부가 2003년 시민단체들에게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낙선운동을 한 단체도 있으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문을 비판하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실의 경우

(가) 이 사건 사실은, 먼저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총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 단위의 25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친여(親與) 선거운동이란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본적 사실로 적시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단체가 주류를 이룬다”는 피고 조선일보의 평가에 대한 근거로 “선거 때나 지난 탄핵사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될 때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고, “이번 국회 자료로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쓰면서 선거 때나 정쟁이 격화될 때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게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 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 예비군(豫備軍)의 중간집결지나 이권(利權)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실은 또한,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 위 원고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신문에 대한 비판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위 원고들이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신문시장 점유율 조정이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 지분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僞裝)수법을 써왔다”라거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 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라는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에서의 적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언론정책

에 대해 정부와 같은 의견을 취하고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으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 기사 중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소제목 자체만으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어느 단체가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표현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2 기사의 본문은 그 첫머리에서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다음,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각 지원금의 액수 및 지원방법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2004. 4. 실시된 총선과정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에 대

비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였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2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2 기사의 주된 보도내용은 공적인 존재인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중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가 ‘낙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함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에 있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2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5 기사

한편, 이 사건 5 기사는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대해 411억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그 지원되는 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원금 중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중도사업포기로 환수·반납된 금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인지의 여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가 그러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의 여부

(1) 이 사건 1, 2, 3, 4 기사 및 사설이 그 내용에서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활동한 나머지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위 각 기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2)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경우, 앞서 본 각 사실적시 부분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각 내용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거나(이 사건 1 기사 및 사설의 위 (가) 부분),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고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언론기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3, 4 기사 및 사설의 위 (나) 부분), 이는 결국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부비판신문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이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이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퍼주기 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고, 권력과의 유착의 대가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기사 및 사설이 앞서 본 적시사실과는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주었더라도 이는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따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2 기사에서 특별히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5 기사의 경우에도, 정부가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그 배분의 기준이나 사용용도의 정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아낌없이 퍼주는 혈세’라는 제목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5 기사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절차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피고 조선일보 등의 의견표명일 뿐이고, 그 의견표명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된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의견표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적시된 시민단체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은 물론 그 원고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2, 5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 5 기사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2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은 원고들이 제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보도 또는 논평이며, 그 목

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 2. 5. 낙천대상자명단을, 2004. 4. 6. 낙선대상자 명단을 각각 발표하였고, 그 각 시기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부패정치·돈선거를 반대하는 홍보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제17대 총선에 즈음한 2004. 2. 5. 발표한 총 66명의 낙천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0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4. 4. 6. 발표한 총 108명의 낙선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9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10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19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2004. 3. 12.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한 국회의원 100명을 일률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에 선정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68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그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몇몇의 언론들은 “낙선운동의 생명은 공정성”(문화일보 2004. 1. 13.자 사설), “공천반대 66명/시민-네티즌 반응 - 형평성 잃어 혼란스럽다”(2004. 2. 6.자 국민일보 기사), “시민단체 낙선명단 공감 못한다”(문화일보 2004. 4. 7.자 사설), “시민단체가 당선·낙선 다 정하나”(동아일보 2004. 4. 8.자 사설), “낙선·당선운동 설득력 약하다”(서울신문 2004. 4. 8.자 사설)라는 등의 제목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특정정치 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중립성이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4) 정부는 2003년 각 부처를 통해 565개 시민단체들에 대해 41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정부가 2004. 8. 31.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보고서와 상세내역서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였던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사들은 “NGO, 정부 돈 받아도 되나”(중앙일보 2004. 9. 1.자 사설), “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 된다”(문화일보 2004. 9. 1.자 사설),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 이유 없다”(동아일보 2004. 9. 2.자 사설) 등으로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6)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2001년 1월경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두기자 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세청이 피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하였고, 피고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언론사의 대표이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우리 사회 여론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당시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그에 관한 후속조치를 지지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등은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검찰수사는 언론탄압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01. 7월경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에 대해 찬성하며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 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당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2001. 7. 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각 방송사들은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 및 시위사실과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7)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001. 8. 28. 및 2001. 11. 15. 각 “왜 조선일보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2. 11. 11. “한반도 위기와 조선일보”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0. 24.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KBS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1. 20. “최근 조선일보의 정치관련 보도 태도에 관한 토론회”, 2003. 12. 12. “안티조선운동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4. 5. 24. “안티조선과 진보진영”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기도 하는 등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대체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한편,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들도 여러 명 당선되었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1)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라. 공익성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실과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외의 가입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만 가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그 도덕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피고 조선일보와 사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 정책 등에 있어 서로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오면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선일보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선운동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한 사실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가 정치, 문화, 언론, 인권, 여성문제, 환경 등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정부나 정당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기관과 마찬가지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전통적인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영리법인, 더 나아가 비영리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반면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기관이나 법률적인 견제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당해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권력기관의 요구나 의사에 부합하는 쪽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라도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이나 정치성향의 다양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각기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제기나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7대 총선이 실시되기 바로 전해인 2003년에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실과 그러한 원고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낙선대상자에 대한 선정절차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차치한다면, 사실상 당시의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장 적게 선정되었고, 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선정된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와 당시 정권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조선일보는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는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 중 여러 명이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점,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하여 온 점, 설령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였던 낙선운동에 참가하였다면 그러한 교부금의 지급과 그와 같은 원고들의 정치적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실에서의 의견표명은 사실이라는 보도의 특성상 비유적 표현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표명인 점,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 사안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나 문제제기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나 문제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사실 적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내지 문제제기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실과 관련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6〉 기사내용 및 참고자료 생략

명예훼손 사례 5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비판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비판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편향성을 띄고 있는 점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단10984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9년 2월 10일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병대가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7년 11월 8일자, 12월 13일자 및 2008년 1월 15일자 디지털세정신문에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죠”李 부산청장 발언 ‘한탄’』 등 3차례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원고가 국세청 상납의혹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듯한 표현을 하고, 원고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세정가에 지배적인 여론이며, 원고가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보도 내지 악의적 추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비록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보도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원고로 하여금 모욕감을 유발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원고가 마치 상납의혹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듯한 표현을 하고, 원고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세정가에 지배적인 여론이며 원고가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비판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편향성을 띄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앞서 실시한 법리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단10984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병 대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문사

2. 김 ○ ○

변 론 종 결 : 2008. 11. 18.

판결 선고 : 2009. 2. 10.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8.부터 2008. 3.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문사는 신문발행업, 일반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김○○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디지털세정신문’에 게재된 아래 다 항의 (1) 내지 (3)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취재, 작성한 기자이다.

나. 전임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상곤이 2007. 8. 7. 수뢰 혐의로 구속되자 원고는 2007. 8. 중순경과 9. 초순경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실에서 각 1회씩 정상곤을 면회하였다. 그런데, 2008. 10. 23.경 당시 국세청장이던 전군표가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날 무렵 원고가 정상곤에게 “전군표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반복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의 처신으로 인하여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명자료를 내고 2007. 10. 31. 사정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 위 ‘디지털세정신문’은 2007. 11. 8.자, 2007. 12. 13.자, 2008. 1. 15.자 기사를 통해 원고의 위 기자회견과 거취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11. 8.자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죠”李 부산청장 발언 ‘한탄’

◇ … 전군표 前 국세청장 구속 이후 긴박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과정을 되돌아 본, 세정가 인사들 중 대부분이 이병대 부산청장의 국세청 상납관행에 대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크나 큰 실언’이었다는 의견을 제기하면

서 ‘성토’ 일색.

이병대 부산청장은 지난 1일, 전군표 前청장의 부산지검 소환에 앞서 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정상곤씨에 대한 진술번복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정치권 등에)준 게 있으면 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남자로서 가슴에 묻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묘한 말을 했던 것.

특히 이 청장은 ‘국세청장이 외유를 나갈 때마다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행은 모르겠다. 국세청장이 나가고 할 때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면서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죠”라고 답하는 한편 “그런 관행이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

이와 관련 세정가 인사들은 “이병대 청장의 그날 기자회견이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와 전군표 청장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국세청의 상납의혹에 대해 ‘절대로 상납이 없다’는 답변 대신, 회피로 일관해 상납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이 됐으며 자기방어적인 회견이었다”고 한탄.

(2) 2008. 12. 13.자

【인사풍월】 고공단만 모이는 타운미팅 배경과 의미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장급 타운미팅을 갖기로 한 것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상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인사쇄신을 천명했는데, 이번 미팅의 주된 목적이 인사쇄신책을 위해 마련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분야 고공단 국장급 타운미팅은 한상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이후 공석 중인 국세청 차장에 대한 인선 등 고공단 국장급 인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세정가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공석 중인 자리로는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이지만 ▶이병대 부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세정가의 관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세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은 “그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지방청장으로서의)을 볼 때,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이 부산청장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후략)

(3) 2008. 1. 15.자

국세청 외부파견 국장 3명(왕○○·이○○·박○○)내정

이병대 부산청장 “향후 인사시기 도래하면 사의 예정”

◇…국세청 국장급 외부파견자 3명이(국방대, 중앙공무원교육원, 미국연수) 최근 내정된 가운데 공식 발령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

외부파견 보직은 약 1년여의 근무기간이며, 이 중 미국연수는 경우에 따라서 6개월여 근무도 가능하다.(중략)

한편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향후 인사시기가 도래할 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전문.

라. 원고는 2008. 1. 18. 피고 주식회사 한국세정신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8. 1. 15. 보도한 이병대 부산청장 "향후 인사시기 도래하면 사의 예정" 제목의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향후 인사시기가 도래할 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본인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정정보도합니다.

위 정정보도 요청 후 위 '디지털세정신문'은 2008. 1.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세청 외부파견 국장 3명 내정에 "잘 뽑은 거 같다"
이병대 부산청장, '향후인사 때 사의 예정 설' - '아니다' 부인
◇...국세청 국장급 외부파견자 3명이(국방대, 중앙공무원교육원, 미국연수) 최근 내정된 가운데 공식 발령날 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선을 잘한 것 같다'고 호평가.
(중략)
한편 '향후 인사시기가 도래할 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인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하여 허위 보도 내지는 악의적 추측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평론이나 해설로 볼 수 있으므로 평론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고, 가사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게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보도 내용 중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의 성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의견을 표명하

는 방법으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와 같은 전언, 전문의 경우에도 적어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적인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피고 김○○가 세정가 인사들의 진술을 전언하거나 세정가의 여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디지털세정신문’은 2007. 11. 8.자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쇼” **李** 부산청장 발언 ‘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세정가 인사들 중 대부분이 이병대 부산청장의 국세청 상납관행에 대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크나 큰 실언’이었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성토’ 일색, 특히 이 청장은 ‘국세청장이 외유를 나갈 때마다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행은 모르겠다. 국세청장이 나가고 할 때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면서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쇼”라고 답하는 한편 “그런 관행이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 이와 관련 세정가 인사들은 “이병대 청장의 그날 기자회견이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와 전군표 청장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국세청의 상납의혹에 대해 ‘절대로 상납이 없다’는 답변 대신, 회피로 일관해 상납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이 났으며 자기방어적인 회견이었다”고 한탄』, 2008. 12. 13.자 【인사풍월】고공단만 모이는 타운미팅 배경과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와 관련 세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은 “그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지방청장으로서의)을 볼 때,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이 부산청장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2008. 1. 15.자 국세청 외부과건 국장 3명(왕○○·이○○·박○○)내정. 이병대 부산청장 “향후 인사시기 도래하면 사의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편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향후 인사시기가 도래할 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전문』이라고 각 게재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와 비슷한 무렵에 게재된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들(갑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원고로 하여금 모욕감을 유발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원고가 마치 상납의혹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듯한 표현을 하고, 원고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세정가에 지배적인 여론이며 원고가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비판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편향성을 띄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앞서 설시한 법리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피고들에게 있는바, 피고들은 다른 증거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 ‘디지털세정신문’의 다른 기사들(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지위,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기사에 나타난 비방성의 정도, 후속 기사의 내용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6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4046 판결 (파기환송심,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는 2009년 2월 26일 이○○가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이 위법성조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경남신문 2006년 3월 14일자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고발』 제하의 기사, 3월 15일자 『전직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고발, 검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3월 30일자 『전직 사무장 변호사 고발 취소, 검찰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 제하의 기사에서 창원지방법원 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장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A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수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변호사인 원고는 언론사가 일방의 주장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의 내용(3월 14일자, 3월 15일자 기사)은 김□□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의 내용, 그로 인한 검찰의 수사 착수의 경위와 그 진행상황 등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추측에 의한 보도(3월 30일자 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 객관적 경과 자체는 모두 진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각 기사 전부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에 대해 별지 3 기재 기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산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 후 파기환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9년 12월 2일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의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별지 3 기재 기사의 보도에 대한 위법성만을 인정하여 “피고 언론사와 소속 기자는 원고에게 각자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6월 7일 제보자에게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는 2008년 4월 3일 제보자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없다면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2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4~200면 참조)

3심 판결문

사 건 : 2008다2776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 ○

피 고, 상 고 인 : 1.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2. 김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11033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2. 26.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피해자의 특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의 별지 1, 2, 3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에서 “A 변호사”, “B 사무장”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A 변호사에 고용되어 있던 B 사무장의 나이 및 그가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 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김□□의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고발내용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 그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김□□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별지 3 기재 기사(2006. 3. 30.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위 기사에 앞서 작성된 제1심판결의 별지 1, 2 기재 각 기사(2006. 3. 14.자 및 2006. 3. 15.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위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김□□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의 내용, 그로 인한 검찰의 수사 착수의 경위와 그 진행상황 등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추측에 의한 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 객관적 경과 자체는 모두 진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그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내용 등은 변호사업의 공공적 특성 및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적절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별지 1, 2 기재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각 기사의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별지 3 기재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앞서 보도된 일련의 관련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의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 부분은 원심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 전부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별지 3 기재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인용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 건 : 2009나4046 손해배상(기)

원 고 , 항 소 인 : 이 ○ ○

피 고 ,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2. 김 ○ ○

제 1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환 송 전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11033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9. 16.

판 결 선 고 : 2009. 12. 2.

주 문 :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가운데 환송판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9.부터 2009. 12. 2.까지 연 5%,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5. 5.경부터 창원시 사파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호칭은 생략한다) 김□□은 1997.경부터 2004. 7. 31.까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2005. 8. 1.부터 같은 직위로 근무하다가 2006. 2. 24. 해고되었다.

② 김□□은 2006. 2. 24. 23:03경부터 23:21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어~이 이○○이,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을 시키고야 말겠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 망신을 주고 변호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③ 김□□은 2006. 3. 13.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86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2006. 2. 24.자 해고로 인한 일일수입 등 합계 93,480,8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 소송은 2006. 10. 2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강○○, 김◇◇ 등을, 2002. 3.경부터 2003. 초경까지 양○○ 및 경찰관 출신 서모 씨를,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김△△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유치하게 하고 소개비로 수입료의 20%를 지급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06. 3. 15.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④ 김□□은 검찰에 위 고발장 등을 접수한 2006. 3. 13. 16:50경 창원지방법원 기자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김○○에게 소장, 고발장, 진

정서 등을 내보이면서, “나를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입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⑤ 피고 김○○은 김□□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검찰 민원실 등에 전화하여 그 고발장 등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고용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 고발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사실확인 없이 김□□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신문사 발행의 경남신문 2006. 3. 14.자 사회면에,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고발”, “불법 브로커 고용·부당해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⑥ 피고 김○○은 그 다음날인 2006. 3. 15.에도, “전직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고발 사건”, “검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⑦ 김□□은 검찰 고발 후 원고의 ‘불법 브로커’ 고용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사무장들을 ‘브로커’라고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는데, 피고 김○○은 이를 기사화하여 2006. 3. 30.자 경남신문에 「전직 사무장 변호사 고발 취소, 검찰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⑧ 한편, 김□□의 원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김□□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KT 영남고객센터장, (주)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규모 및 수입건수, 브로커로 지칭된 사무장들의 변호사협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김□□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② 피고들이 기사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지칭하긴 하였으나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1차 보도 이후에도 다시 연이어 기사를 내보내는 등 위법한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별지 1 기재 기사는 ‘김□□이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별지 2 기재 기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 별지 3 기재 기사는 ‘김□□이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내용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보도내용 중 원고의 실명을 거론함이 없이 단순히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③ 김□□의 제보 이후 법원, 검찰, 지방변호사회 등에 확인을 거쳐 김□□이 원고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후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보도를 하였고, 이러한 보도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위 각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별지 1, 2 기재 각 기사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내용은 김□□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의 내용, 그로 인한 검찰의 수사 착수의 경위와 그 진행상황 등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서 추측에 의한 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객관적 경과 자체는 모두 진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그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등 위 각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변호사업의 공공적 특성 및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척결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이 사건에서, 위 각 기사에 관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각 기사의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

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각 기사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 3 기재 기사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3 기재 기사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별지 3 기재 기사내용을 보면, ‘고발인 A씨’, ‘B 변호사’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선행 보도인 별지 1, 2 기재 각 기사내용과 아울러 살펴 볼 때,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김□□의 나이 및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별지 1, 2 기재 각 기사의 ‘A 변호사’, 별지 3 기재 기사의 ‘B 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하에 아래에서 피고들이 별지 3 기재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실의 공익성 여부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는 등 별지 3 기재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척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 사실의 진실성 여부

별지 3 기재 기사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를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발 취소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있다”, “법조 주변에서는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그러한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고발내용이 마치 진실한 사실인 듯한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위 발언들의 뉘앙스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별지 3 기재 기사에는 ‘불법 브로커’ 고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원고의 반론이 함께 실려 있으나, 이는 위 기사의 제목이나 주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김□□의 고발내용을 부각시킨 위 기사의 전체적인 진실성에 관한 평가를 뒤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김○○이 김□□로부터 제보를 받고 검찰 민원실 등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취재활동만으로 김□□의 고발내용이 마치 진실한 사실인 듯한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별지 3 기재 기사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별지 3 기재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김□□의 고발건을 수사 중이던 당시의 창원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 임○○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별지 3 기재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지 3 기재 기사의 내용에 김□□의 고발내용이 진실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주관적이고 추측성의 발언이 포함된 점, 그 보도시점 또한 김□□의 고발이 취하된 후인 점, 위 고발내용에 관한 피고 신문사의 보도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크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6.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가운데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7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단체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서울고등법원 2009. 3. 18. 선고 2008나3529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3월 18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주식회사 문화일보 및 교복업체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는 2007년 2월 23일자, 2월 24일자 및 3월 5일자 문화일보에 『교복업체 3곳에 “사회환원기금 내라”』, 『학사모, 교복업체에 수십억 요구 ‘충격’』 등 5차례에 걸쳐 원고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 102개 지부에 38,000여명의 학부모 회원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활동에 대하여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이 사건 문제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피고 문화일보가 이 사건 문제기사 중 ‘기부금’, ‘발전기금’ 등의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문제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원고 단체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문제기사의 작성,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청구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2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73, 80)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나35298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문화일보

2. 주식회사 아이비클럽

3.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합29138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2. 25.

판 결 선 고 : 2009. 3. 1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제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돈 지급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제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부모단체(2003. 7. 15.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하였다)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클럽(이하 ‘아이비클럽’이라고 한다),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이하 ‘에리트’라고 한다)을 상대로 교복 값 현실화 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 아이비클럽, 에스케이, 에리트(이하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국내 교복시장의 약 80% 상당을 점유하고 있는 교복 제작 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문화일보’라고 한다)는 일간신문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교복 값 현실화 운동

원고는 2006. 1.경부터 피고 회사들이 제조하는 교복의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교복원가공개, 과대광고철폐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 대하여도 교복 값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1) 피고 문화일보 소속 기자들인 박○○, 손○○, 윤○○은 2007. 2.경 ‘서울시의원으로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 고교에 교복을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교복 값 현실화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그와 관련된 공문 및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를 마친 후에 별지 2 내지 별지 6 기재 각 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문화일보는 2007. 2. 23. 문화일보 제1, 7면에 별지 2 내지 4 기재 각 기사를, 2007. 2. 24. 제2면에 별지 5 기재 기사를, 2007. 3. 5. 제6면에 별지 6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5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각 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피고회사들에게 기부금 등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 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교복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2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그동안 피고 회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해 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아이비클럽의 직원 한○○, 피고 에스케이의 직원 김○○, 피고 에리트의 직원 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문화일보 소속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고, 피고 문화일보의 기자들 또한 피고 회사들의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피고 회사들 및 원고의 실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등 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특종을 터뜨릴 욕심에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원고가 사용할 용도의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교복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형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수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여 고가교복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얻고 있던 원고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순수한 학부모 단체인 원고의 위상이 손상되는 등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그 피용자인 한○○, 김○○, 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

고 문화일보는 그 피용자인 소속 기자들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답변

(1) 피고 문화일보

이 사건 문제기사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취재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문화일보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피고 회사들

피고 아이비, 에스케이의 직원들은 피고 문화일보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에리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문○○은 피고 에리트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 에리트의 직원이 피고 문화일보 소속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부분

1) 「학사모(원고 단체를 지칭한다)는 대형 교복업체 3개 회사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공문과는 별도로 학사모의 고위관계자가 전화해 “학사모발 전기금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답변하니, 그럼 5억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

했다'고 밝혔다.」, 「'학사모가 교복 값 거품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의 돈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

2) 「23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학사모의 공문(사진) 3건과 교복업체 3사에 따르면 학사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사회환원기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

3)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현금 송금이 불가능하니 교복 현물을 기증하겠다"고 주장했다.」(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한다).

4) 「학사모는 K 상임대표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다른 단체행사에서 대입특례 의혹과 국고지원금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2004년 K 전 상임대표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4 기사'라고 한다).

5) 「한편 교복메이저 3사는 "이번(사회환원금 요구) 사건은 오래된 일"이라며 "학사모가 최근 명분도 없이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를 계속해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하 '이 사건 제5 기사'라고 한다).

6) 「고〇〇 교복 값 종합대책위원장은 "업체들이 돈을 주겠다면 협정식을 한 뒤, 16개 시·도 교육청에 (돈을) 나눠주려 했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나중에 공정부 과징금도 내야하니 기부가 어렵다고 밝혀와 사회환원금 얘기가 없던 것으로 끝나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원장은 "(사회환원금 요구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하 '이 사건 제6 기사'라고 한다).

7) 「'학사모' 사태로 본 위기의 시민운동, '기업에 손 벌리고 정치 기웃' 신뢰추락이라는 제목 하에, 학사모가 교복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하였으며, 학사모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시민운동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적시하면서 2006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표를 같이 게재함으로써 학사모가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 기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문제기사'라고 한다).

(다)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제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교복 값 현실화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들에게 기부금 또는 사회환원금을 요구하였고, 그 상임대표는 국고지원금 부당사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성 조각여부

(가) 판단기준

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원고가 전국 102개 지부에 38,000여명의 학부모 회원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활동에 대하여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공공성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교복 값 현실화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교복업체인 피고 회사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다룬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제4 기사의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새삼 언급함으로써 원고 단체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사는 원고 단체의 그간의 활동내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상임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인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실성, 상당성

① 이 사건 제1 기사

갑 7호증의 3, 5, 6, 갑 16호증, 을가 4호증, 을나 7, 8, 12, 13호증, 을라 2, 4호증, 을라 5호증의 16, 19, 20, 3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2006. 7. 6. ‘거품 값에 대한 당사의 분명한 조치(환불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등의 제안)에 대하여 2006. 7. 10.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공문의 내용 중 위 기사와 관련된 사회환원금 등과 관련된 내용만을 살피기로 한다. 이하 같다), 2006. 11. 20. ‘일부 귀사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이제는 최종 안을 결정지어 저희와 함께 협정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회환원금과 장학금 관련 금액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협정식을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2006. 11. 24.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7. 1. 16. ‘교복 값 현실화 공동제안 협정식을 하기로 하였으나 무시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책위에 협의한 발전기금은 사회로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기 위함과 귀사와 명분을 쌓기 위한 기금이었고, 학사모가 요구한 적은 없으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낸 사실, 이에 피고 아이비클럽은 원고에게, 2006. 10. 24. ‘귀 단체와 함께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007.

신학기를 맞이하여 귀 단체와 함께 소년, 소녀 가장 500여 명에게 1억 원 상당의 겨울코트를, 산간지역 및 소규모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학생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6. 12. 13. ‘귀 단체에서 제안하신 사회환원금과 장학금(2006. 11. 20.자 공문), 학사모 발전기금(2006. 12. 8. 전화통화 내용) 관련해서는 금번에 진행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 에리트는 원고에게, 2006. 11. 7. ‘2004. 적십자사를 통해 전국 소년, 소녀 가장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교복을 기증하는 등 당사는 활발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학사모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환원 활동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복판매금액의 1%를 적립하여 사회환원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매달 일정금액의 효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으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 에스케이의 원고에게, 2006. 12. 12. ‘귀측의 2006. 10. 24. 요청에 대하여 학사모와 공동으로 학생복 300 ~ 500벌 수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으나, 귀측은 2006. 11. 28.경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해서 그 규모 및 학생복 기증방법의 불편함을 들어, 매출액의 10% 수준(10억 원)의 기증, 학교 발전기금 형태의 현금기증 등을 구두로 요청하여 협의가 표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당사의 의견은 학사모에서 추진하는 전국의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학생복 기증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의 학생복 기증행사를 기획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낸 사실, 원고의 교복 값 현실화대책위원장이던 하○○은 2006. 11. 중순경 원고의 위 2006. 11. 20.자 공문과 관련하여 피고 에스케이의 입장을 듣고자 피고 에스케이의 직원인 손□□에게 전화하였다가 손□□에게 원고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및 발전기금을 요청하면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현금기증을 요청하면서 원고 측에서 현금을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알아서 깨끗이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손□□이 원고 측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자 2006. 12. 11. 하○○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하○○은 손□□에게 원고측에서 잘못하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하○○으로서는 돈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원고 대표들은 교복을 받더라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한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또한 하○○은 피고 에스케이로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코트를 받아서 나눠주는 경우 그 명분이 약하므로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하○○은 2006. 12. 8. 피고 아이비의 직원인 한○○에게 전화하여 피고 아이비가 원고측에서 요청한 사회환원과 장학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발전기금 형태로 현금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전기금의 용도가 무엇이냐의 한○○의 물음에 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업은 관여하지 말라면서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청이나 학교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등 원고측에서 알아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발전기금으로 처음에는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한○○이 너무 많다고 하니 5억 원이라도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교복 값을 부당하게 부풀려서 취득한 이득에 대한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처리의 불편함을 들어 피고 회사들의 현물 교부 제안을 거부하고 현금으

로의 환원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측 업무담당자인 하○○이 사회에 환원할 돈에 대한 명칭, 관리주체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아 피고 회사들의 담당자들은 원고가 요구하는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제1 기사에 ‘기부금’이나 ‘학사모발전기금’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다가 별지 제2 기사에서 원고 측의 반론과 원고 대표자인 최○○의 해명을 함께 보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기사는 원고가 ‘원고의 이익으로 사용될 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피고 문화일보의 기자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아래에서 살펴 볼 기사의 내용 중 위 표현 내용과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2 기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문화일보 소속 기자들이 피고 회사들의 담당자를 통하여 위 공문을 입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사회환원기금과 관련된 공문을 수회 보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제3 기사

원고 측에서 그 처리의 불편함을 들어 피고 회사들의 현물 교부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제4 기사

위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화일보가 위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원고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제5 기사

위 기사 내용은 피고 회사들 관계자의 진술을 인용한 것인데, 원고가 2006. 1.경 교복 값 현실화운동을 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회환원금에 관한 언급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 제6 기사

을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일부가 처음 게재된 2007. 2. 23. 원고 단체의 고○○, 최○○, 하○○이 위 기사 내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사실, 당시 고○○ 위원장이 ‘위 기사로 인하여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될 것 같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렇게 했냐고 한다면 좋다. 그렇다 치자. 그래도 교복 값 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 위원장의 위 발언은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하여 교복 값 현실화운동에서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기사에서 고

○○ 위원장이 “(사회환원금 요구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 문화일보가 위 발언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다분히 있어 보이므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이 사건 제7 기사

별지 6 기재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기사는 시민단체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실패함으로써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을 요구하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단체의 필요경비에 대한 자금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관련된 ‘2006년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표’를 게재한 것인바, 위 기사에서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는데, 위 표의 인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피고 문화일보가 이 사건 문제기사 중 “기부금”, “발전기금” 등의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문제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원고 단체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문제기사의 작성,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기사의 작성, 게재로 인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피고 문화일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 문화일보는 허위의 이 사건 문제기사를 작성하였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문화일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31조에 의하여, 피고 문화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제1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피고 문화일보가 이 사건 기사 중 ‘기부금’, ‘발전기금’ 등의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 그로 인하여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문제기사에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같이 정정을 구할 허위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 2. 23. “학사모 사회환원 명목 기부금 요구”, “교복업체들 사실상 협박”이라는 제목 하에 학사모가 교복업체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학사모가 교복업체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보도를 하였고, 2007. 3. 5. ‘학사모’ 사태로 본 위기의 시민운동, ‘기업에 손 벌리고 정치 기웃’ 신뢰추락이라는 제목 하에 학사모가 교복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한 학부모단체, 뉴라이트 교사연합 성명서를 인용해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한 단체로 기사를 썼습니다. 또한 ‘2006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현황’ 도표를 인용하여 학사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쓰고 정치에 기웃거리려 신뢰추락 ‘한 단체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학사모가 교복3사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사회환원기금을 학사모로 보내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학사모는 교복3사에 대하여 수년 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취득해 온 부당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약속을 요구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학사모는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2006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며, 뉴라이트 교사연합도 학사모에 사실 확인 없이 성명서를 내보내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복3사 관계자가 주장한 ‘학사모가 기부금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교복3사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으로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끝】

〈별지 2~6〉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8

원고가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황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나63484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4월 15일 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7년 4월 4일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런던 교외 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원고가 자녀들 조기유학을 위해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 5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상황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김□□, 이○○ 및 박○○ 등으로부터 다소 많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황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4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50, 166)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 및 손해배상 500만원)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2008년 6월 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나63484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피 항 소 인 : 김 ○ ○
피 고,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1560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3. 25.

판 결 선 고 : 2009. 4. 15.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9시 뉴스데스크’의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기사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링크시켜 위 기사를 검색할 때 위 정정보도요구문이 함께 보이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0, 11, 13 내지 22, 26, 27, 35, 3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화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6 내지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문화방송’이라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뒤에서 보는 보도 당시 영국 런던 교외 한국교민 밀집 거주지역인 뉴 멀든(New Malden)에 거주하면서, 뉴 멀든 인근의 ○○에 위치한 ○○○ ○○ 센터 내에서 한식당인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과, 뉴 멀든 인근의 ○○○○○에서 ‘○○○○’이라는 상호의 영국식 선술집(‘pub’)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보도가 있기 약 3년 전까지는 런던에서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나. 피고의 뉴스 보도 경위 및 내용

(1) 피고의 런던 특파원인 김○○(이하 ‘특파원’이라고 한다)은 2007년 3월 말경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 찰주재관인 이○○ 총경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이○○은 특파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영국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이하 ‘기러기 엄마’라고 한다)를 상대로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유인을 한 다음 거액의 돈을 받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단기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자녀가 어학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방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아마 20 내지 3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금액도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2) 특파원은 김□□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김□□으로부터 ‘원고가 일시불로 2만 파운드의 과외비를 주면 딸을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명문대학교에 가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고에게 과외비로 2만 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 믿고 13만 파운드를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특파원은 또 이○○으로부터는 ‘김□□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경우를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 원고가 자식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기러기 엄마의 마음을 악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피고는 특파원의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2007. 4. 4.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데스크’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뉴스를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news.com)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1) 한편, 이 사건 보도 직후 주영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정보’ 등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보도의 주인공이 원고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2)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주영 한국교민 사회 내에서 커다란 파장이 일자, 영국에 있는 재영한인회가 발행하는 월간신문인 ‘재영한인회보’의 편집장인 김△△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취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김□□, 이○○ 및 박○○ 등을 2007. 4. 16., 2007. 4. 18. 및 2007. 4. 19. 등 여러 회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은 ‘자신의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과외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 과외비를 돌려받고 싶었다.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갚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기러기 엄마는 박○○과 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 사건 보도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합법적으로 영국에 가져온 돈 이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다만 예전에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교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은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자신의 자녀가 원고로부터 과외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박○○은 ‘특파원과 인

터뷰를 한 적은 없다. 자신의 아들이 2004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인 ○○○○○○○를 다녔고, 2005년에도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아내 이□□가 사업투자를 제안하여 많은 돈을 교부하였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이 피해자가 많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박○○은 2007. 4. 21.경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5. 17.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보도와는 달리,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과 선술집은 런던 교외 교민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 식당은 2006년 말경 이미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보도는 한국 내에서 방송된 것일 뿐 영국에서 보도되지 아니하였는데 영국 교민사회에서 발행되는 다른 보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지목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는 이른바 기러기 엄마의 사기 피해 사례를 알림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9,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런던 교외 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영국 런던과 런던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내의 한국교민의 수(2006년 12월 당시 24,357명)와 교민사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국 런던 교외의 한국교민 밀집 거주지역 인근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민들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고 한 명 뿐으로서 그 지역 교민 이라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지목된 김씨라는 사람이 원고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더욱이 영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유학원과 학원의 업종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가 나간 후 한국교민을 상대로 한 신문 등이 이 사건 보도의 주인공이 원고라고 쉽사리 특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보도의 허위 여부

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허위의 사실로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가 나간 후 재영 한인회보의 편집장이 김□□, 이○○ 및 박○○ 등에 대하여 한 인터뷰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외비를 편취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과외선생님인 원고를 믿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김□□, 이○○ 및 박○○도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특히 이○○, 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이○○ 총경의 인터뷰 내용 중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파원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로서 당사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김□□, 이○○ 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이 사건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자에 불과한 권○○ 등 일부 교민과 인터뷰만을 한 점(갑 제11호증인 조정심 리조서(3차, 기록 제153면)에 의하면 피고측 대리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4명만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박○○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은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점, 김□□과 박○○ 등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런던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 김□□, 이○○ 및 박○○ 등이 원고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가 기리기 엄마들에게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협박을 하는 등 파렴치한 자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김□□, 이○○ 및 박○○ 등으로부터 다소 많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기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라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 소결

따라서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위법성조각 여부

(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영국 런던 부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교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특파원은 김□□, 이○○을 인터뷰하고 그 외 제3자인 권○○ 등과도 사실확인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들 역시 자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달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 특파원은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에 관한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이○○ 총경의 추측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이 5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는 10억여원 정도라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정정보도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보도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②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사와 링크된 화면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부분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지위, 이 사건 보도 및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언론사로서의 피고의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4. 4.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저희 MBC에서는 2007. 4. 4. 9시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하여 런던 한인사회에서 유학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러기엄마들과 김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외에 김모씨가 대학진학을 미끼로 기러기 엄마 5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하고 협박하였다고 불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

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2007. 4. 4.자 보도 내용 및 기사

▷앵커 : 자녀들 조기유학을 위해 영국에 가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엄마 50여명이 현지 교민에게 10억원대의 집단 사기를 당했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말에 모두 그냥 넘어갔습니다. 런던 김○○ 특파원입니다.

▷특파원 : 런던 교외 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유혹하며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것입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 이○○ 총경 인터뷰 내용 : “몇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단기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자녀가 아직은 조금 어학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방출을 하는 거죠”

▷특파원 : 명문대학 진학 보장이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걸려든 학부모는 50여명, 피해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대사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유학원이나 취업 알선업체로부터 비슷한 사기를 다하고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밝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피해 영국 교민 인터뷰 내용 : 여기서 어디가서 법률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렵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

▷특파원 : 사기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합법적으로 영국에 가져온 돈이냐며 오히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김○○입니다. 끝.

명예훼손 사례 9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네티즌들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하였으며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게시물을 차단·삭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은 2009년 4월 16일 김○○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피고 포털사이트들은 원고가 교제중인 여성을 두 번이나 임신을 시킨 후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고, 그 충격으로 애인이 자살하였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뉴스란에 게시하였고, 그 후 댓글 등으로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가 밝혀지고 비난이 확산되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과 관련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5월 18일 “피고들이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엔에이치엔은 5백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는 각 4백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5집 103~124면 참조) 이에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2일 1심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여 엔에이치엔은 1천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백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8백만원, 야후코리아는 5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7~301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고인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3.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4. 16.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1.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 있는 각종 정보제공 장소(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이트’라고 부른다)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 기능을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저장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와 서로 공유·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그 중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인터넷 동아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게시공간을 아래에서는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아울러 전자우편,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터넷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포털서비스’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장소를 ‘포털사이트’로 부른다. 아래에서는 그 서비스를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라고 한다)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기사들에 관하여 이를 최초로 작성한 해당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 관련 기사 선별 및 게재와 관련하여 그 중 일부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기사들의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들이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

지 않으나 일부 기사에 실린 망 서○○의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구체적으로 위 게시공간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미니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위 게시공간을 제공한 원심공동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니 홈페이지’를 가리켜 ‘미니홈피’라 부른다) 초기화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망 서○○ 관련 정보 또는 위 기사들 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사 삭제 금지 약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이 보도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기사 삭제 금지 약정만으로는 자신들의 원고 관련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위 종합 정보서비스의 검색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망서○○의 교제 및 망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던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뉘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

한 불법행위 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특정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반드시 불법행위의 일시, 방법,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재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원심판결의 이유에 위 피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 가운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원심이 열거한 증거들과 원심이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 판단에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피고 야후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대법관 김영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위 사업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 아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다를 논점이다. 이에 관한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먼저, ‘인터넷’,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중매체(大衆媒體, mass media)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이른바 정보통신매체로서 종래의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등과 대비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매체)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정의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참조).

이러한 인터넷의 매체로서의 특성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로부터 제공되는 ‘뉴스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 각종 정보서비스의 내용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뉴스 서비스는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열람하거나 검색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 기사를 열람·조회하는 것 이외에도 뉴스기사 하단에 설치된 댓글 창을 열어 뉴스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짧게 덧붙일 수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또는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 이미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동호인별 게시 공간을 개설한 다음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하고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통칭한다. 그 중 ‘카페’ 또는 ‘클럽’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안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말하는데, ‘미니홈피’의 개인운영자는 그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직접 꾸미고 다른 미니홈피 운영자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교류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블로그’ 역시 그 운영자인 ‘블로거’ 개인의 관심사에 관하여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의 일종이지만 그 게시물이 자동연결(인터넷 이용자들은 위 서비스를 ‘링크’라고 부른다)기능에 의하여 다른 블로그와 서로 자동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자신의 블로그에는 수많은 다른 블로그의 게시물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은 수많은 다른 블로그에 실리게 됨으로써, 결국 이른바 수많은 ‘1인 매체’가 모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제공 장소에 게시된 전자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수많은 정보자료 게시물 가운데 원하

는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아울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는 인터넷의 대중매체로서의 특성인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시공간 초월성 등에 힘입어 종래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매체로서의 기능을 ‘1인 매체’ 위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도하면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며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어느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참여적 대중매체이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위와 같이 ‘1인 매체’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규제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간접적인 형태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정당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본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현도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단순한 정보운반자와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장소에 게재된 표현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신장만을 염두에 두고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거나 그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은 명예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인격적 법익의 보호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표현행위라는 법익의 보호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가 서로 상충할 경우 그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찾는 관점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명예라는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

게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고 한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해석의 원리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위에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리가 최대한 명확하게 정립·제시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게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명예훼손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를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포섭하여, 위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단순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라 정하려는 것도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 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가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어떠한 요건 아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를 설정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양자의 법익 보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법리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본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 배포자로서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게시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하에서는 ‘삭제의무’라고만 한다)가 생기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면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

(가)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까지 강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함은 그 게시물의 표현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실체적 구성요건,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 즉 범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의 가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한 직접 가해자와는 별개의 제3자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위 사업자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형사처벌법규와 대비하여 본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형사법규들은 그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예외 없이 그 죄를 이른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종국적인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

는 바와 같다(형법 제312조 제1,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등 참조). 이러한 형사법의 법정신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응하여 본다면, 위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미처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침해는 직접 가해자가 그 게시물을 게시공간에 게시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게시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하여도 그러한 공표행위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는 위 사업자 역시 직접 가해자인 1차적 책임자와 동일한 범주 안에 놓고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예외적 상황으로서 게시물에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방어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지, 피해자가 보호 요청 등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되는 게시물의 정보량은 엄청난 분량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면 위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또는 예측가능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중한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은 본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의하여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제공된 공간이므로 그 곳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행위를 본질적·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도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위 사업자에게 삭제조치까지 강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삭제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조차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관리·감시도 하지 않아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자진하여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리·감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게시물을 알게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되고 그러한 사정을 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한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라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비록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없지만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삭제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정적·가정적 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명확한 기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법규와 비교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추정하거나 가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빗대어 보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는 없었으나 삭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알게 된 때에는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거나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에 따라 위 사업자가 그러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모르고 있는, 즉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어떠한 때에도 삭제·차단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새겨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의인 이상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삭제를 하지 아

니한 경우 역시 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또는 감시에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괄적인 상시 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하여 상시 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는 오늘날 거의 이론(異論)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부정되어야 할 상시 검열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은 대체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직접 가해자와는 독립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한 자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의견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바람직하고 큰 틀에서 이와 뜻을 같이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때에는, 위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이미 위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러나 후자(後者)의 의미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실이나 정황들에 의하여 외관상 명백히 그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다수의견의 입장에도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역시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기 위해 그 정황이 될 만한 사실이나 정보들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간접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에 대한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삭제요구 없이도 위 사업자가 그러한 정황이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할 때와 똑같은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삭제요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요구를 특정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도로 특정하여 삭제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성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특징이 ‘현저히’ 곤란한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그러한 삭제요구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삭제요구에 관한 특정성의 요청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처럼 제한적으로라도 특정성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요구 받은 명예훼손 게시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검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검색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예외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것이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 등이 게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위 사업자에게 당연히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불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삭제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현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명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문제, 그 표현이 사실의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문제,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비판이나 논쟁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게시되는 표현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외의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와는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인지 구별하는 기준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 가능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조차 그러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곧바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게시물의 삭제에까지 나아가려면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위험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견이 적절히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삭제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4)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앞서 본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문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삭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제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발생의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다를 바 없으므로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다.

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들인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원고로부터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가 없이는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7.에 이르러 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 고만 답변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5. 7. 7. 기자회견을 열고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고 난 뒤에 비로소 원심 판시와 같은 삭제 및 차단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나. (1).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의 삭제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삭제요구 당시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요구를 하지 않아 유효한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역시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네티즌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3자에 의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타인의 특정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한 보도매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임은 위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1)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뉴스 게시공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전파한 원고 관련 기사의 내용과 그 외에 정보배포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문제의 게시물들은 원고라는 동일한 피해자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인 점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

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방식으로 특정하는 것도 유효한 삭제요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아울러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삭제요구만으로도 위 피고들로서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게시물들은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관리·통제 아래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한 경우임은 다수의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원고의 삭제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원심 인정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다수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나 그 이유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혀둔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요구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별개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별개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명예의 보호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게시물의 불법성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삭제 등의 피해구제가 필요할 정도의 불법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별개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1)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제한되어야 하는 논거를 인터넷에서

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서 구하고, 이에 따라 그 제한에서 벗어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논거를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찾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때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한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개의견의 견해와 같다. 그런데, 별개의견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에 관하여 삭제 등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게시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이와 같이 게시물의 명예훼손성 유무 그리고 이를 이유로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령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안 역시 전혀 공공성, 사회성 없이 사적인 생활영역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순히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의 내용 자체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불법성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주관적인 불법성 인식 여부에 따라 그 불법성의 현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별개의견은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인정하려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게시

물 그 자체가 현존함으로 인한 위험과 다른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의 위험성이 커서 이로 인하여 게시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이미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위험에 관한 사정을 더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게시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인 논거로 삼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성의 명백 외에 또 다른 위험성이 요구된다는 별개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별개의견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별개의견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은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위험으로서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랄 정도의 위험’이라는 것이 되며, 그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문제 제기에 의하여 객관화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 등이 없으면 그 위험성이 없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삭제를 바라는 의사 여부 내지 삭제 요구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인터넷이 신속하고 막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견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미 타인의 법익 침해라는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에 의하여 그 위험이 비로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등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뒤늦게 위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뿐더러,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서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직접적인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고의의 방조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굳이 별개의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자에게 게시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과 별도의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그리고 모욕행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고소는 형사상의 소송조건에

불과하므로, 그 존부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성립 뿐 아니라 책임 유무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요구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방지·중단의무 발생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구가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위 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의2 제6항, 제2항,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나아가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항상 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시물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법의 침해로 인한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피해자의 요구가 없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위 게시물의 게시행위 당시에 이미 그로 인한 법의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게시물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 유무에 따라 게시물 방치로 인한 명예훼손책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별개의견의 해석론에 따르면,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자로서, 2005. 5. 초순경부터 이미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에 관한 자세한 사연과 함께 원고를 비난하며 그 인적 사항을 노출시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급증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에는 그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이 위 피고들의 뉴스 제공 공간에 기사로 게재될 정도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위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위 기사 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남에도 위 피고들은 2005. 6. 27.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3) 또한, 피해자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정

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의 존재와 그에 관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을 쉽게 검색하고 접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인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분쟁이 된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된다.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능력이 아닌 평균인 또는 사회 일반의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불법행위책임의 근간이다. 따라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동종 업계 일반 운영자의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위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그 위험의 인식 여부를 가리면 되지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별개의견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만 위 사업자가 자신의 물적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감시함으로써 게시물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된다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봉쇄될 우려가 높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시를 충실히 해 온 사업자일수록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괄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면 위 사업자로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표현물과 같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이 공개된 후에 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등 결정 참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한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지운다면,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을 상시검열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위 사업자에게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게시물에 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요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

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다고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요구를 받아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때부터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될 것이며, 그 인식에 관한 사실이 입증된 일부 사안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요구가 없더라도 그에 관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견은 삭제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 외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을 요구하고 그 위험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짓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만을 요구하는 다수의견과는 그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의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위험을 파악하는 별개의견의 해석론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의 5.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에 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에 관한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예훼손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별개의견은,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표시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별개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 및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은 별개의견의 위 논리에 부합되지만, 그 예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를 특정한 것만으로 과연 구체적·개별적인 특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특히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확인에 관한 책임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넘겨 위 사

업자가 탐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삭제요구라고 보는 예외적인 해석론이 위 논리에 부합되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즉, 어느 특정 게시공간에 게재된 어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게시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개별 게시물마다 기재내용이나 표현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개별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가 어느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별개의견에서 말하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 게시물마다 일일이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가려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별개의견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 사업자가 게시물의 존재 및 불법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해석론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2005. 6. 27.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관련된 기사 댓글이나 관련 게시판의 폐쇄, 원고 관련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로써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직접 게시자로서의 명예훼손책임을 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개괄적인 삭제요구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외에 원고에 관한 다른 게시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별개의견은 개괄적인 삭제요구에 불구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보유한 광범위한 정보 검색 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하여도 인식 가능성을 긍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론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삭제요구가 없었던 게시물에 관하여 보면, 별개의견이 취한 위와 같은 결론은 그 불법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인식가능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의하면 삭제요구에 기초한 다른 게시물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검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다수의견보다 더 광범위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 결론적으로,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가 제한되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할 정도의 위험이 현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 사업자가 인식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장된 논리와는 달리 삭제요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그 특정성을 완화하고 오히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스스로의 인식 가능성에 기초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별개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명예훼손 사례 10

언론기관은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필요·최소한의 사실만 보도하여야 하는데, 피고 독립신문사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까지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범인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보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6가단454525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5월 8일 이○○가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와 한국방송공사 및 담당수사관, 수사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수사반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독립신문사와 담당수사관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3년 12월 1일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헤어지자에 앙심’ 내연남 자녀 2명 독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독립신문사는 2003년 12월 9일 시사저널 제738호에서 『‘빋나간 치정’ 긴 꼬리 잡히다』라는 대제목 및 『고양시 청산가리 살해범 검거 과정/공범에 초점 맞춰 1년 9개월 만에 개가』라는 소제목으로 초등학생 형제 독극물 피살사건 용의자인 원고에 관해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에는 용의자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는 고양경찰서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다른 용의자에 대한 취재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수사반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독립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피의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필요·최소한의 사실만 보도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독립신문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까지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원고가 범인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보도가 위법한 허위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담당수사관에 대해서는 “피고 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해서는 안 될 내용까지 기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자에게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도록 하는 잘못을 하였다”며 담당수사관이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독립신문사와 담당수사관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5월 12일 항소를 기각하였다.(2심 확정)

판 결 문

사 건 : 2006가단454525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피 고 : 1.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2. 한국방송공사

3. 김○○

4. 정○○

변 론 종 결 : 2009. 4. 9.

판 결 선 고 : 2009. 5. 8.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김○○은 연대(부진정)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09.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방송공사, 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2/3는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2002. 2. 20. 고양시 화정동 소재 이○○의 아파트에서 이○○의 아들 이□□, 이◇◇이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은 여러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고양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인 피고 김○○은 2003. 11. 하순경 하○○으로부터 ‘원고가 위 사건의 범인이고, 자신이 원고의 범행을 도왔다’라는 자백을 받고 원고와 하○○을 구속하였다.

다. 2003. 12. 1. 고양경찰서 측에서 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여러 언론기관은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위 사건을 보도하였다.

라. 하○○은 2003. 12. 20., 원고는 2003. 12. 26. 각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고

합141, 143(병합), 2004고합43(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노1406호), 상고심(대법원 2005도7910호)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3. 12. 1. 고양경찰서 측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고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하○○에 대한 취재를 거쳐 그날 밤 9시뉴스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방송화면에는 ① 원고가 경찰서로 들어오는 정면과 측면 전신 모습을 상반신 내지 2/3 모자이크 처리하여 3초간, ②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뒷면 상반신 모습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3초간, ③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뒷면 전신 모습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2초간, ④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측면 전신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2초간, ⑤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뒷면 전신 모습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2초간 내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위 보도를 함에 있어서 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하였고, ② ‘이 형제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던 26살 이 모씨’라고만 지칭하였으며, ③ 다른 용의자 하○○의 인적사항 또한 특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보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① 2003. 12. 1. 고양경찰서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와, ② 다른 용의자 하○○의 자백 등을 근거로 보도를 하였는바, 이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에는 용의자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는 고양경찰서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다른 용의자에 대한 취재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김○○,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김○○, 정○○에 관하여

- 피고 김○○, 정○○는 2003. 12. 1.부터 며칠 뒤까지에 걸쳐 언론사 기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를 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과 사생활,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공표하였다.

- 피고 김○○, 정○○는 원고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와 하○○의 허위 진술에 기초하여 얻은 불확실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 피의사실 공표는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에도, 피고 김○○, 정○○는 그러한 목적 없이 공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 정○○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마치 원고가 살인의 진범인 것처럼 유죄를 속단하게 하는 표현을 하였다.

- 피고 김○○, 정○○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원고가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이하 ‘피고 독립신문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 피고 독립신문사는 피고 김○○, 정○○가 배포한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저급 소설을 연상케 하는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의 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흥미위주로 기술하였으며, 그 표현방식에서 있어서도 원고가 범인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피고 독립신문사는 익명보도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 피고 독립신문사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독립신문사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2003. 12. 1.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하여

2003. 12. 1. 고양경찰서 측에서 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여러 언론기관에서 위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위 사건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고양경찰서 수사반장이던 피고 정○○나 수사관이던 피고 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선 경찰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보통 경찰서장 또는 형사과장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수사반장이나 수사관이던 위 피고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할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 독립신문사 대리인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보도자료를 수사과장 혹은 수사계장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 독립신문사의 2003. 12. 9. 기사와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1) 고양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로부터 며칠 후(2003. 12. 4. 내지 5.경) 피고 독립신문사의 주○○ 기사는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남○○의 소개로 피고 김○○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수사과정과 사건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피고 김○○의 허락 하에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였다.

2) 피고 독립신문사는 2003. 12. 9. ‘시사저널 제738호’를 통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별지 2 기사 중에서 2면 3번째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에 있는 내용(원고와 하○○의 관계, 범행준비과정, 범행 당일의 행적과 범행과정)은 고양경찰서 측에서 2003. 12. 1.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존의 언론보도에는 없던 내용으로, 주○○ 기사가 피고 김○○을 인터뷰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알게 된 내용이다.

【인정근거 : 을가1호증, 을가5호증, 을가6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 을가7호증의 1 내지 12의 영상, 증인 주○○의 증언, 피고 김○○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피고 김○○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나) 판단

1)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

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김○○이 위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①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데, 피고 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주○○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준 것은 위법하다.

② 수사기록에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각종 조서와 증거물이 편철되어 있으므로, 이를 직접 기자에게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김○○이 주○○ 기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것 역시 위법하다.

③ 공표하는 내용도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 김○○은 주○○ 기자에게, 「이씨와 하씨는 우연한 기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1차로 이△△의 자식들을 죽이고 2차로 그 놈과 처를 죽이고 싶다... 9월에는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의 CCTV의 위치,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빠져 나가는 길 등을 정밀 답사했다... 이씨는 하씨에게 따로 준비한 핸드폰을 건네며 계단으로 올라가 집에 누가 오면 알려달라며 망을 보게 했다... 2시50분께 플라스틱 약통 2개를 양쪽 주머니에 넣은 이씨가 흰 면장갑을 낀 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윽고 엄마,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몇 분이 지난 후 이씨는 “이제 다 끝났다. 고맙다. 바빠서 먼저 간다”라는 말을 남긴 채 핸드폰을 빼앗아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별지 2 기사 중에서 2면 3번째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라는 내용까지 알려주었는바, 위 내용들은 기존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까지 기자에게 알려준 점 역시 위법하다.

요약하건대, 피고 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해서는 안 될 내용까지 기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자에게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도록 하는 잘못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2) 피고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정○○가 피고 독립신문사의 위 보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독립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① 익명보도 여부

피고 독립신문사는 2003. 12. 9. 기사에서 피의자를 ‘이순자씨’라고 익명으로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26

세의 회사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뒷부분에서는 ‘이순자씨는 지방 명문 대학 신방과를 나온 재원으로서 날씬한 몸매에 미모를 자랑했다’, ‘지난 11월 28일 이순자씨는 경북 ○○에 있는 고향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친지, 고향 사람,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위 기사의 피의자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하였다.

②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도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하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 독립신문사가 위와 같은 기준을 지켰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주○○ 기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던 피고 김○○을 통하여, 그리고 열람해서는 안 될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재를 하였다.

둘째, 주○○ 기자는 위 보도 내용을 담당수사관과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취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피고 독립신문사는 주○○ 기자가 사건현장인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별도의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현장방문으로 위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셋째, 위 기사가 보도되던 무렵 원고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으므로, 언론기관으로서 그 피의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필요·최소한의 사실만 보도하여야 하는데, 피고 독립신문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별지 2 기사 중에서 2면 3번째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원고가 범인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 독립신문사의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피고 독립신문사의 위법한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김○○과 피고 독립신문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사의 내용, 피고들의 지위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독립신문사, 김○○은 연대(부진정)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09. 5. 8.(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독립신문사,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2〉 보도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부산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가합1103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사실개요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09년 12월 3일 송○○와 그 처가 월간 ‘시민시대’를 발행하는 사단법인 목요학술회 및 발행인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정정보도와 함께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시민시대 2008년 5월호(통권 283호)에서 『부산대 기부금 소란, 통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송○○, 진○○ 부부가 기부금을 빌미로 부산대학교 측에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를 ○○○○○○재단 명의로 등기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및 대학교 당국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부산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였고, ○○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해 달라거나 ‘부산대학교 60년사’ 첫 면에 송○○의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송○○, 진○○ 부부는 기사와 달리 부산대학교 측에 양산캠퍼스 부지 구입을 위해 기부한 자금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역 대학의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조명을 받은 바 있는 원고들의 기부 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며, 가사 다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가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이사회 상임이사인 정○○, 홍보팀장인 김○○을 만나 부산대학교 측 입장을 확인한 후 게재한 이상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위 기부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들과의 분쟁에서의 부산대학교 측의 입장 표명에 관한 것이나,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들이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위 피고의 반론보도청구 거부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반론보도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은 각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

고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피고 목요학술회의 피용자인 피고 박○○, 조○○의 고의·과실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성도 인정되며, 비록 피고 목요학술회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목요학술회는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민법 제764조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시민시대’가 일반인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인 피고 조○○와 그 편집인인 피고 박○○, 그리고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목요학술회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년 3월 5일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1033 정정보도 등

원 고 : 1. 송○○

2. 진○○

피 고 : 1. 사단법인 목요학술회

2. 박○○

3. 조○○

변 론 종 결 : 2009. 3. 18.

판 결 선 고 : 2009. 5. 27.

주 문 : 1. 가.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는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지 시민시대의 제50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4포인트 고딕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반론보도문 기재 같은 반론보도문을 10포인트 고딕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나.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시민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시민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1회 게재하라.

(2) 위 피고가 위 (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시민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시민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2) 위 피고가 위 (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송○○는 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 10. 설립된 재단법인 ○○○○○○재단의 이사장이고, 원고 진○○은 원고 송○○의 처로 위 재단법인의 이사이다.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월간 정기간행물인 시민시대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이고, 피고 박○○은 시민시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조○○은 시민시대의 기자이다.

나. 기부 약정 체결

원고들은 2003. 10. 8. 부산대학교와 사이에 금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2003. 10. 14. 금 100억 원, 2003. 12. 31. 금 5억 원, 2005. 5. 30. 금 50억 원, 2006. 8. 23. 금 40억 원 등 합계 금 195억 원을 부산대학교에 기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부산대학교 사이의 분쟁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위 기부금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체육관 건축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원고 진○○은 2007. 2.경 위 기부금이 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위 기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대금으로 사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금 195억 원 기부 이후 나머지 금원을 기부하지 않고 있고, 부산대학교 총장인 소외 김인세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7. 3. 20.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기재된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기사

피고 조○○는 2008. 4.경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이사회 상임이사인 소외 정○○, 홍보팀장인 소외 김○○을 만나 원고들과 부산대학교 사이의 위와 같은 기부금 분쟁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을 제6호증)를 교부받는 등 기부금 분쟁을 취재하고 시민시대 2008년 5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 이 사건 제1기사

학교 측의 기부금 약정서 변경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은 “기부금 약정서는 기부자가 기부 대상기관에 약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3년 10월에 기부자가 정당하게 작성하여 학교 측에 준 약정서의 내용을 3년 반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간 기부금을 빌미로 한 진○○여사의 학교 측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게 되자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학교 측에 대하여 당초 약정 당시의 날짜로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 이 사건 제2기사

대학 측에서는 기부자 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다.

먼저, 양산 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대학 비하 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또한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타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고 한다.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를 포함해달라는 요구와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피고 조○○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부산대학교 측에 과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부산대학교를 비하하거나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시민시대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1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의 이행을 구한다.

(2) 위 피고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의 진실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익을 위해 게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진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인상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제목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원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산대학교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를 전후하여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입장(시민시대 2008년 5월호 51, 52면)과 원고들의 입장(시민시대 2008년 5월호 52, 53면)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측에 과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산대학교를 비하하거나 총장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암시한다기보다는 위 기부금과 관련한 원고들과의 분쟁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측이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산대학교 측의 입장 표명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산대학교 측이 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정리한 을 제6호 증을 취재기자인 피고 조○○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이 사건 각 기사가 부산대학교의 입장에 대한 사실보도가 아니라 그 기사내용 부분을 암시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일응 위와 같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제3항은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법 제1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전체적인 구성 및 취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반론보도의 청구인이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해 언론사가 위와 같은 거부사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으로서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위 기부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들과의 분쟁에서의 부산대학교 측의 입장 표명에 관한 것이나,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들이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위 피고의 반론보도 청구 거부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1 기재 반론보도문을 시민시대에 게재하고,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지면 및 그 비중, 그 표현 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반론보도의 시기, 활자체, 활자의 크기, 간접강제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부산대학교 측의 입장 표명이라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사실을 보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대학교 측 입장으로 표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위와 같은 입장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그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피고들로서는 부산대학교의 입장에 표시된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역 대학에의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조명을 받은 바 있는 원고들의 기부 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며, 가사 다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가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이사회 상임이사인 정○○, 홍보팀장인 김○○을 만나 부산대학교 측 입장을 확인한 후 게재한 이상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사단법인 목요학술회는 지난 2008년 5월호에 발행한 ‘시민시대(통권 283호)’ 제50~55면에 『부산대 기부

금 소란, 통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① 「학교 측의 기부금 약정서 변경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은 “...이미 2003년 10월에 기부자가 정당하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의 내용을 3년 반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간 기부금을 빌미로 한 진○○ 여사의 학교 측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게 되자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학교 측에 대하여 당초 약정 당시의 날짜로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② 「대학 측에서는 기부자 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다. 먼저, 양산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대학 비하 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또한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타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고 한다.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를 포함해달라는 요구와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에 대한 기부자인 송○○ 회장, 진○○ 여사는 보도내용과 달리 부산대학교 측에 위와 같은 각종 과도한 요구 내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산대학교 등에 대하여 각종 비하 발언을 하거나, 총장선거에 개입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 2009나9003 정정보도등

원 고, 항 소 인 : 1. 송○○

2. 진○○

피 고, 피 항 소 인 : 1. 사단법인 목요학술회

2. 박○○

3. 조○○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가합11033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11. 5.

판 결 선 고 : 2009. 12. 3.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 시민시대’ 제50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제목(‘긴급진단’)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가 위 (1)항의 기간 내에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60%를,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박○○,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80%를,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사단법인 목요학술회(이하 ‘피고 목요학술회’라 한다)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시민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시민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시민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시민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송○○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 ○○○○○○재단(○○은 원고 송○○의 호이다.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원고 진○○은 원고 송○○의 처로서 ○○재단의 이사이다.

(2) 피고 목요학술회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향도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3. 1. 7.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월간 정기간행물인 ‘시민시대’를 발행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박○○는 ‘시민시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조○○는 ‘시민시대’의 기자이다.

나. 원고 송○○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기부

원고 송○○는 2003. 10. 8. 부산대학교와 사이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4.에 100억 원, 같은 해 12. 31.에 5억 원, 2005. 5. 30.에 50억 원, 2006. 8. 23.에 40억 원 등 합계 195억 원을 부산대학교에 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시민시대’ 2008년 5월호(통권 283호)에 “긴급진단”, “부산대 기부금 소란, 통 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 기부문화 위축 없도록 대승적으로 풀기 바래”라는 제목 아래 제50면에서 제55면에 걸쳐 피고 조○○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전체 기사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은데, 제1, 2, 3 기사는 “대학 측의 분개와 기부자에 대한 과격적 예우”라는 제목 아래, 제4 기사는 “○○(○○), 송고한 사표”라는 제목 아래 게재되어 있다. 이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기사’라 한다).

• 이 사건 제1 기사(제53면)

학교 측의 기부금 약정서 변경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은 “기부금 약정서는 기부자가 기부대상 기관에 약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3년 10월에 기부자가 정당하게 작성하여 학교 측에 준 약정서의 내용을 3년 반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간 기부금을 빌미로 한 진○○ 여사의 학교 측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게 되자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학교 측에 대하여 당초 약정 당시의 날짜로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 이 사건 제2 기사(제54면)

대학 측에서는 기부자 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다.

먼저, 양산 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대학 비하 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또한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타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고 한다.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를 포함해달라는 요구와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제3 기사(제54면)

부산대학교 측은 우리 사회의 시금석이 될 뜻깊은 기부를 한 송○○ 회장에 대해 현 본관 원편에 ○○동상을 건립했다. 이후 양산캠퍼스가 완공되면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양산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재단에 대한 지원과 각종 개인행사에 대한 대표자 참석 및 예우, 그리고 학내외 공식·비공식 행사시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인사, 대학 홍보물에 기부자 측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사업비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체육관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어느 대학 졸업자는 “부산대는 국립대학교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본관 옆에 세워진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 부산대 출신, 아니면 설립에 관계된 누구도 그런 예우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너무 엄청난 대우를 해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가장 큰 규모의 동상과 건립되는 체육관에 호까지 붙여준 사례를 국립대학을 통털어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다. 대기업인 엘지 측에서 부산대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고, 국제회관을 지어주면서도 고작 도서관 옆에 시계탑을 세우고, 회관명칭에 ‘상남’이란 호를 붙였을 뿐이다.

부산대학교가 동상에 기념문까지 새기며 뜻을 기리는 이유는 송○○ 회장의 기부문화는 그만큼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동상 옆에 새겨진 기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이하 생략. 제54~55면).

• 이 사건 제4 기사(제55면 끝)

기부자 측이든 대학 측이든 원래의 숭고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 사회의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초심(初心)의 순수한 뜻을 다시 새겨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래본다.

송○○ 회장이 기부 당시 인터뷰에서 했던 말 “다 내놓고 갑니다. 사회에서 이룬 재산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無)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서 몸소 보여준 아름다운 삶으로 좋은 결말을 끌어내기를 바란다. 대학 측에서 개인을 위해 유용한 것도 아니고, 또 길을 잠시 돌아왔지만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돌려 놓겠다고 한 만큼 ‘화해’의 미덕을 다시 한번 더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양산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산대학교 측에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② 대학 및 대학 당국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 송○○) 동상 건립위치 변경을 요구하거나 ‘부산대학교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수상자에 기부자(원고 송○○)를 포함할 것,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대학 행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이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각 청구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갑3, 4, 5호증, 을4, 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9, 13, 14, 을9호증의 1 내지 8, 을1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조○○에 대한 본 인신문결과 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조○○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목요학술회의 설립 당시 임원진 등

피고 목요학술회가 설립된 1993. 1. 7.경 회장으로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인 서○○, 부회장으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김□□이 각 선출되었고, 그 외 이사로 부산대학교 총장인 장○○, 부산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인 오○○ 등이 각 선출되었다(기록 51면). 한편 피고 조○○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시민시대’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송○○ 등의 기부약정 및 분쟁의 경위

(가) 부산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박재윤은 양산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제2캠퍼스’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6.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제2캠퍼스의 부지로 쓸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3단계 지역 일부 838,560㎡를 대금 380억 4,966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억 4,966만 원은 2002. 6. 27.에, 1차 중도금 3,425,094,000원은 2005. 6. 27.에, 2 내지 9차 중도금 각 34억 2,440만 원은 2005. 12. 27.부터 2009. 6. 27.까지 매년 6. 27.과 12. 27.에, 잔금 34억 2,440만 원은 2009.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지역 일부 285,412㎡를 129억 5,055만 원으로 평가한 부산대학교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79 외 2필지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김인세가 2003. 6. 12.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9. 1. 취임하게 되었고(2006. 3. 10.부터는 ○○재단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박재윤은 퇴임하기 전에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3. 6. 17. 원고 송○○에게 “자신이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한 일 중 제2캠퍼스 조성을 원고 송○○의 고향인 양산시에 성사시킨 일이 가장 보람 있었기에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 잔액을 확보하는 일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 도움을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김인세는 총장에 취임한 후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원고 송○○가 설립한 학교법인 ○○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에게 부탁하여 2003. 9.초경 롯데호텔에서 원고 진○○을 만난 것을 비롯해 수차 원고들에게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 무렵 원고들은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라) 1) 원고들이 김인세에게 위 결심을 전하자 김인세는 2003. 10. 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305억

원을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부산대학교에 기부하되 그 중 100억 원은 2003. 10. 14.까지, 나머지 205억 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회 균등 분할하여 매년 10월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이하 ‘이 사건 기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7호증의 2. 기록 97면).

2) 이 사건 기부약정의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피고 목요학술회는 2003년 12월호(통권 230호)의 표지에 원고 송○○의 사진을 싣고 제14-19면에 걸쳐 ‘시민시대가 만난 사람, 蓄財와 用材의 達人 宋○○ 會長’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 송○○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칭송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을10호증의 1, 2, 3. 기록 185면 이하).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5억 원을 출연하였다. 부산대학교는 2004. 6. 12.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위 기부금 중 68억 5,000만 원을 성학관 건립비용으로, 9억 5,000만 원을 제1 교수연구동 건립비용으로, 38억 3,000만 원을 학술연구조성비용으로, 13억 7,940만 원을 BK21사업 대응 투자연구비로, 8억 5,000만 원을 첨단과학기술연구동 건립비용으로, 20억 원을 제2예술포럼 건립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는데, 제1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낀 김인세는 2005. 5. 23. 한국토지공사와 제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금은 2009. 6. 27.부터 2013. 6. 27.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잔금은 2013. 1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기록 143면).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매년 기부금을 출연함에 있어 ○○재단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왔는데, 2005.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진○○은 “김인세가 당초 위 기부금으로 제2캠퍼스 부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부지대금 지급은 연기해도 된다’면서 체육관 건축에 230억 원을 사용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기부약정서에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연구비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김인세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다른 이사들이 “부산대학교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자”면서 50억 원의 기부 안건을 승인하였고, 2006. 3. 25.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진○○은 “부산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제2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서면약속을 받은 후에 기부금을 출연하거나 기부금을 감액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원고 송○○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그대로 출연하자”고 하여 40억 원의 기부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2007. 3. 23.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진○○은 “이 사건 기부약정의 이행에 있어 서류상의 왜곡 등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40억 원 기부 안건이 승인되더라도 학교 측과 의논하여 공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고, 위 안건이 승인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들은 부산대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 진○○은 2007. 2. 26.부터 김인세에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수회 보냈고(을7호증의 1, 7.

기록 93, 107면), 김인세는 결국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7. 3. 20.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양산캠퍼스(제2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기재된 기부약정서를 작성(다만 작성일자 2003. 10. 8로 소급 기재하였다)하여 원고들에게 주었다(기록 98면).

(아) 한편 이 사건 기부금을 관리하던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1992년경 설립되었다.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이사회는 2007. 5. 18. "원고들의 기부금은 제2캠퍼스 부지대금임을 확인하고, 이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2007. 9. 30.까지 사용된 기부금이 충당되도록 이사장(김인세)이 최대한 노력하며, 이 사건 기부금이 2007. 9.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기록 100면).

(자) 김인세는 2007. 6. 12. 실시된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서 재선되자 위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7. 9. 21. 한국토지공사와 제2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금은 2007. 9. 27.부터 2009. 9. 27.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잔금은 2009. 1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음, 2007. 10. 1. 중도금 3,425,094,000원을 지급하고(기록 144면), 2007. 10. 24. 학술연구조성비용 중 20억 원, 제2 예술관 건립비용 중 11억 6,000만 원을, 2007. 12. 7. BK21사업 대응 투자연구비 중 4억 7,940만 원을 각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2007. 12. 27. 그 중 34억 2,440만 원을 제2 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1.까지 제2캠퍼스 부지대금 중 23,169,020,54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기부금 중 19,228,109,094원{23,169,020,547원(지급된 부지대금 총액) - 3,804,966,000원(이 사건 기부약정 전인 2002. 6. 27. 지급된 계약금) - 135,945,453원(선납할인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차) 원고들은 2008. 7. 3.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371호로 대한민국(당초에는 피고가 부산대학교로 지정되었다가 그 뒤 변경되었다)을 상대로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 기부금을 당초의 사용용도인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기부약정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증자인 부산대학교의 교수 등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부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305억 원 - 195억 원)의 출연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5.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의 항소로 현재 부산고등법원 2009나7601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3)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기사작성 경위 등

(가) 부산대학교 수리통계학부 교수이자 발전기금 이사회의 상임이사인 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기부금의 용도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자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음이 없이 부산대학교 총장인 김인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메모지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송○○ 회장님 기부금 관련 개요(을6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부산대학교 홍보팀장인 김○○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였다(기록 206면). 정○○도 이 사건

메모 중 제4항 부분, 즉 ‘기부자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명에 훼손 사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기록 207면).

(나) 피고 조○○는 2008. 4.경 부산대학교를 찾아가 정○○과 김○○에게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정○○과 김○○은 피고 조○○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메모(을 6호증)와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측에 보낸 서신(을 7호증의 1 내지 9, 13, 14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같은 달 25.경이고, ‘시민시대’의 발행일이 같은 해 5. 1.인 점에 비추어 을 7호증의 10을 추가로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을 7호증의 11, 12는 그 작성일자가 ‘시민시대’가 발행된 후인 2008. 7. 3. 및 같은 달 6.로서 피고 조○○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입수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을 8호증도 피고 조○○가 입수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을 건네주었고, 그와 아울러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 조○○는 정○○이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음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기록 207면), 정○○이나 김○○ 외 다른 부산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제1심의 피고 조○○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 기록 233-234면).

(다) 피고 조○○가 정○○과 김○○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와 함께 건네받은 원고들의 서신은 주로 “이 사건 기부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고, 특히 부산대학교 총장후보로 재출마한 김인세가 2007.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흑색선전으로 총장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 달라. 총장으로 재선출되면 예우서의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데 대하여(기록 118면), 원고 진○○은 같은 달 12.자 답신에서 “오히려 총장(김인세)이 이 사건 기부금을 총장선거와 관련시키는 바람에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매우 불쾌하다. 원고들은 총장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기록 119면).

(라) 정○○과 김○○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 등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고 조○○는 원고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또 정○○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메모와 서신 등에 원고들의 입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언론보도내용과 이 사건 메모 등을 근거로 2008. 4. 25.경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의 2008. 9. 23.자 준비서면. 제1심의 피고 조○○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 기록 82, 234면), 그 과정에서 피고 조○○는 정○○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메모에 최종 기사의 출력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캠퍼스 사진(본, 양산) 부산대 이미지’, ‘기금 전달사진’ 등의 추가기재와 ‘시민시대’의 발행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1천부’ 등의 추가기재를 하였고(을 6호증. 기록 87면 상단), 또 ‘현재까지의 납부액 195억 원’ 다음의 괄호안에 ‘반환소송’, 〈현재까지의 예우〉란 중 ‘○○동상 건립’ 다음의 괄호안에 ‘양산’, ‘○○체육관 명칭 채택(217억 원)’ 다음의 괄호안에 ‘예우차원’ 이라고 추가기재를 하기도 하였다(기

록 87, 91면).

(마) 이 사건 제1, 2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대학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같다.

(4) 부산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예우 및 원고들의 요구사항 등

(가) 1) 이 사건 기부약정이 체결되자 부산대학교는 총장인 김인세 명의로 2003. 10. 8. 원고 송○○에게 “기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재의 장전동 캠퍼스에 ○○스포츠센터, (원고 진○○) 예술관을 각 건립하고, 제2캠퍼스(양산캠퍼스)에 ○○의학관을 건립하며, ○○대학로를 조성하고, ○○광장 및 동상을 조성·건립 하며(다만 위 광장 및 동상의 조성·건립 시기는 2007년이다), 원고 송○○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원고들에게 부산대학교 병원의 무료 VIP 진료를 보장하며, 실버타운 내 원고들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언론사의 원고 송○○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하며, 부산대학교가 원고들의 장례식을 주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예우서를 교부하였다(갑4, 5호증).

2) 부산대학교는 2003. 11. 14. 원고 송○○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기록 188면), 또 이 사건 기부약정 체결 이후인 2003. 10. 15. 원고 송○○와 부산대학교 사이에 작성된 ‘송○○회장 출연금 중 건설계획에 대한 특약서(을7호증의 2. 기록 99면)’의 약정내용(건물의 인·허가취득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가 주관하고, 건물의 설계, 감리 및 시공자는 원고 송○○가 결정하며, 건물완공시에는 부산대학교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다는 것이다)에 따라 원고 송○○는 2005. 10.경 “본인이 기부한 발전 기금을 ○○법학관 건설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건축설계 및 시공사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축사무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법학관 건설 동의 및 시공사 추천서(기록 105-106면)’를 작성 하여 부산대학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1) 부산대학교는 2006. 7. 31. 원고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이행하기로 한 내용 중 원고 송○○의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제2캠퍼스에 ○○의학관이 준공되는 즉시 현 장전동 캠퍼스 본관앞에 있는 원고 송○○의 동상을 이전하고(제2항), 제2캠퍼스에 건물준공시 기부채납 후 조경구역을 설정하여 ○○재단의 입주공간을 확보하겠다(제9항)”는 취지의 공문(갑3호증. 기록 215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초부터 부산대학교가 이행하기로 한 것이고(제2캠퍼스가 미완공 상태이므로 임시로 장전동 캠퍼스에 설치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제2캠퍼스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9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예우서에는 없었지만 원고들의 요구로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기록 208면. 제1심 증인 정○○은 “위 공문의 내용 중 제1 내지 제6항은 당초 예우서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제7, 8, 9항은 원고들의 요구를 부산대학교가 수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송○○의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된 건립위치(제2캠퍼스)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고, 단지 원고 진○○이 2004. 11.경 임시로 동상을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산대학교에 “장전동 캠퍼스 본관 앞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 현재의 위치에 원고 송○○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기록 208면), 또한 원고들이 제2캠퍼스의 부지일부를 ○○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제1심 증인 정○○은 원고 진○○이 2006. 6.경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후 부산대학교와 협의가 된 사항이다).

(다) 1) 원고들은 평소 대화를 하면서 “일개 국립대학”, “부산대학교 병원의 수준이 서울만 못하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원고 진○○이 2007. 4. 12. 김인세에게 보낸 위답신서(기록 119면)에도 “일개 대학 총장선거에 악용될 정도로 (원고 송○○와 ○○재단이) 미약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또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일인 2007. 6. 12. 직전인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학교 통신망을 이용하여 임○○, 이○○ 교수 등이 원고들과의 서신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현재의 김인세 총장이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것인데(기록 203면), 학교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 인사로만 제한되어 있어 외부인인 원고들의 접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정○○이 원고 송○○에게 부산대학교가 발간한 『부산대학교 60년사』를 보여주자 원고 송○○가 “중요한 책을 만드는데 우리 사진은 없느냐”고 물어 정○○이 “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다시 원고 송○○가 “없다”고 하여 정○○이 “책자 가운데 좀 보면 송희장님이 기부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해 준 사실은 있지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60년사』첫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기록 209면).

(마) 1) 원고 진○○은 2006.경 부산대학교 만찬행사장에서 정○○에게 “우리 송희장님 같은 분이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을 받아야지 우리를 빼 놓고 그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운한 한 사실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원고 송○○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2) 2007. 3.경 이 사건 기부금의 용도를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에서 ‘양산캠퍼스(제2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발전기금 이사회가 열릴 무렵 원고 진○○이 정○○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을 하겠다”고 요구하여 정○○이 “발전기금은 그런 이유(기부자의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는 이사회를 열지 않는다.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원고 송○○가 “저렇게 원하는데 이사회를 한 번 열어서 우리 집사람(원고 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정○○이 발전기금 이사회들에게 자문한 결과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자”고 하여 이 사건 기부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점 등을 확인·의결한 2007. 5. 18.자 발전기금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는 발전기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적은 없다(기록 210면).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메모 ‘기타 대학행정 개입(기록 92면)’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전기금 이사장의 출입저지를 한 사실은

없다(기록 211면).

나. 판단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직접 또는 부산대학교의 교직원 등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전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고, 기타 대학행정에 개입하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의 출연중단과 관련하여 마치 원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기사에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가) 제2캠퍼스 부지 일부에 대한 ○○재단명의 등기 요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가 2003. 10. 8. 원고 송○○에게 교부한 예우서에 위 부지 중 일부를 ○○재단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305억 원을 부산대학교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원고 송○○에게 부산대학교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약정하였고, 또 설명 원고들이 위 부지 일부에 대하여 ○○재단이 이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산대학교에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래 국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하여 기부자 측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의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용방안 강구』 요구에 대하여 부산대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2006. 7. 31. 위와 같이 ○○재단이 제2캠퍼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공문까지 발송하였고(기록 215면), 더 나아가 정○○이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 조○○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더 이상 원고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또 원고들이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 공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2캠퍼스의 일부를 ○○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부채납’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원고들이 위 건물의 준공후 이를 부산대학교의 관리주체인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후 ○○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동상 건립위치 변경요구 부분

부산대학교가 원고 송○○에게 교부한 예우서에 제2캠퍼스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 원고들과 부산대학교가 제2캠퍼스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장전동 캠퍼스 본관 옆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이 임시로 ○○동상을 건립할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현재의 ○○동상 건립위치인 “장전동 캠퍼스 본관 옆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당초 ○○동상이 건립되기로 예정된 제2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분은 허위이다.

(다) 부산대학교의 명예훼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 등이 부산대학교 등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2007. 4. 12. 김인세에게 발송한 답신에서 “일개 대학총장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상, 이는 부산대학교 또는 그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각종 대학 비하 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 개입부분

피고 목요학술회 또는 부산대학교가 주장하는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임○○, 이○○ 교수 등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김인세 총장이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글의 내용과 형식(원고들과 주고 받은 서신의 인용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 교수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하여 사실상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임○○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또 총장선거 과정에서 김인세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원고들을 거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김인세가 총장선거를 앞두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원고들이 “김인세 총장이 이 사건 기부금을 총장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은 총장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한 점에 비추어(기록 119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마)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사실 및 사진 게재 요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위 책자를 원고 송○○에게 보이자 원고 송○○가 “우리(원고들)와 관련한 기사는 없느냐”고 물어 정○○이 “중간 썸에 있다”고 설명한 사실만 있을 뿐, 원고들이 위 책자 첫면에 기부사실과 사진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은 허위이다.

(바)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은 부산대학교 졸업생만이 수상할 수 있는데, 원고 진○○이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아닌 원고 송○○가 위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발전기금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전기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이 이사회 참석 및 발언을 원하였고, 이에 원고 송○○도 정○○에게 이를 요구하여 결국 발전기금 이사회에서 2007. 5. 18. 원고들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발언을 청취한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이사장 출입저지’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서 빠져 있다).

(2) 피고 목요학술회의 정정보도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은 각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피고 목요학술회의 피용자인 피고 박○○, 조

○○의 고의·과실로 작성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도 인정되며, 비록 피고 목요학술회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목요학술회는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민법 제764조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명예훼손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의 일방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교에 거액인 305억 원을 기부한 원고 송○○가 기부금이

당초의 지정된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의 출연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익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 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이 각 허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기사 중 “각종 대학 비하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일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기사들이 진실하다고 막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조○○가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인 부산대학교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제공받고서(부산대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메모는 발전기금 이사인 정○○이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의 서신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나 원고들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막바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③ 비록 인용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초반부의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논란이 전개된 과정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메모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또한 부산대학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조○○가 제1심의 본인신문과 정에서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분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238면 이하), ⑤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제3, 4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가 “부산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상까지 건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송○○가 당초의 이 사건 기부약정을 뒤집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가 원고들의 요구대로 지정된 지금이라도 원고 송○○가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의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⑥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목요학술회는 설립 초기부터 부산대학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모에 발행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1천부”라는 기재까지 추가되어 있어 당초부터 이 사건 기사가 어떤 특정한 의도 아래 작성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위와 같은 공익 목적보다는 이 사건 기부금 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부산대학교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사 작성과정에서 피고 조○○ 등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시민시대’가 일반인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인 피고 조○○와 그 편집인인 피고 박○○, 그리고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목요학술회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부금을 둘러싼 원고들과 부산대학교의 논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원고들도 위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점, 피고 목요학술회가 제1심 판결에 기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내용, 게재 시점 및 게재 부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각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들의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보도 등이 허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보도 등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서에 따라 심판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또한 원고들이 피고 목요학술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라도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의 순위를 붙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된 이상,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본 문 : 본지는 2008년 5월호로 발행한 ‘시민시대(통권 283호)’의 『부산대 기부금 소란, 통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 진○○ 부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

를 ○○○○○○재단 명의로 등기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비하 발언 및 대학교 당국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부산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였고, ○○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산대학교 60년사’ 첫 면에 송○○의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산대학교는 2006. 7. 31.경 양산캠퍼스 내에 건물준공시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재단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송○○, 진○○ 부부가 계속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부산대학교 임○○, 이○○ 교수 등이 송○○ 부부와의 교신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총장선거일(2007. 6. 12.) 직전인 같은 달 초순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교내 통신망에 “김인세 총장이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지만 송○○ 부부가 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없으며, 송○○ 부부는 2004. 11.경 ○○동상 건립 당시 “현재의 위치(장전동 캠퍼스 본관 앞)에 건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부산대학교 측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상이 현재의 위치에 건립되었으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이사회 상 임이사인 정○○ 교수가 송○○에게 『부산대학교 60년사』를 보여주자 송○○가 “우리 사진은 없느냐”고 물어 정○○이 “책 가운데 쯤 보면 송회장님이 기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하기만 하였을 뿐 송○○ 부부가 위 책자 첫면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4〉 보도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2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는 2009년 5월 29일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및 회사대표인 주수도가 대한민국 및 인터넷신문 폴리뉴스 기자인 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을, 피고 오○○는 대한민국과 각자 해당 금원 중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오○○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이○○로부터 제이유그룹이 정, 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고 2006년 4월 17일 인터넷신문인 폴리뉴스에 『[독점] 제이유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 직위, 직급따라 5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제이유그룹이 경찰, 검찰의 간부들에게 무차별 ‘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고, 제이유그룹의 로비는 일부 법원 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도 예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위법한 이상, 원고들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범행과 관련되었고 원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등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는 제이유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및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금품수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위와 같은 의혹은 과장되었거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 바,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피해이익보다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 오○○은 이 사건 보고서만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금품수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 내용이 보도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공무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인 제이유그룹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이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2010년 2월 10일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를 부정하고 명예훼손만 인정,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40668 손해배상(기)

원 고 : 1.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2. 주 수 도

피 고 : 1. 대한민국
2. 오○○

변 론 종 결 : 2009. 4. 24.

판 결 선 고 : 2009. 5. 29.

주 문 : 1.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오○○은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오○○은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1. 5. 23. 설립되어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 방문판매업체인 소외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체인 소외 제이유피닉스 주식회사 및 에스엘테크 주식회사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제이유그룹의 모기업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주주도는 제이유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자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팀인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2004년 6월경부터 제이유그룹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판단실에서는 2005년 1월경 '제이유그룹이 납품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사채놀이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금을 밀반출한다는 의혹이 있으며, 원고 주주도 등이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부패를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내부 보고서와 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 관계 인사 및 경찰관, 검사,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의 근무 관서, 직위 및 성명(성만 기재되어 있음)과 금품이 수수된 날짜, 금액, 사유 등이 기재된 리스트 2매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

다. 국가정보원의 정보판단실장인 김○○은 이 사건 보고서가 2005년 1월경 청와대에 보고되고, 2006년 1월경 검찰에 지원되었음에도 제이유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부각되어 보도되지 않자, 2006년 4월경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서 5급 정보사무관인 소외 이○○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제이유그룹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이○○는 2006. 4. 14. 평소에 친분이 있던 기자인 피고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사건 보고서 중 리스트 2매를 보여 주었고, 피고 오○○은 이 사건 보고서의 리스트 중 일부 정, 관계인사를 제외한 62명의 경찰관, 검사,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의 근무 관서, 직위 및 성명과 금품 수수 날짜, 금액, 사유 등을 옮겨 적은 후 리스트를 재작성 하였다. 이○○는 다음날 피고 오○○을 다시 만나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리스트 2매 제외)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오○○은 2006. 4. 17. 인터넷 신문인 폴리뉴스(www.polinews.co.kr)에 “【독점】 제이유그룹, 검, 경에 무차별 '돈 로비', 직위, 직급따라 5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제이유그룹이 경찰, 검찰의 간부들에게 무차별 '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폴리뉴스의 취재결과 밝혀졌고, 제이유그룹의 로비는 일부 법원 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도 예외 없이 이루어졌는데, 경찰간부 20여명, 현직 검사 1명, 전직 검사 1명, 검찰청 직원 1명, 판사 3명,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및 사무관이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간부들의 근무 관서와 성명 등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시기

등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오○○은 2006. 4. 21.까지 4회에 걸쳐 폴리뉴스에 제이유그룹에 관한 후속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원고 주수도 및 제이유그룹의 경영진은 2006년 4월경부터 검찰(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원고 주수도는 2006. 8. 2.경 제이유그룹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사기, 배임, 횡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2. 20.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사건).

바. 검찰(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07. 3. 8.부터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재차 수사를 한 후, 전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 김희완, 전 국회의원 이부영, 염동연 등을 기소하였고, 원고 주수도를 다시 배임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원고 주수도는 2009. 3. 2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박○○, 에스비에스 서울방송의 뉴스추적 제작팀 차장 임○○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하에 금품을 공여하였고, 이부영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695, 2008고합391(병합)사건).

사. 한편, 원고 주수도가 2007년경 폴리뉴스의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이원컴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와 국가정보원장인 소외 김승규, 이○○와 피고 오○○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2008. 3. 13. 김승규 및 이○○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이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오○○에게 건네주면서 ‘취재에 참고하고 취재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도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승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김승규가 이 사건 보고서의 유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김□□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 사건 보고서 내용 중 제이유그룹에서 수십 명의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주었고, 해외에 거액을 밀반출하였다는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갑 제6호증).

아. 피고 오○○은 2008. 3. 12.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303)이 계속 중이다.

자. 이○○는 이 사건 보고서의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2006. 8. 31. 국정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영업상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에도 피고 오○○에게 제공하는 등 이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이○○는 이 사건 보고서가 폴리뉴스 기자인 피고 오○○에게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이 보도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피고 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오○○은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로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의 위법성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사업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과 비자금 조성, 비자금의 해외 밀반출, 부실한 경영 은폐를 위한 사업 확장, 정·관계 인사와 수사 및 사법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의 금품 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설

령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사기, 횡령, 배임 또는 뇌물수수 및 공여, 배임수증재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설립목적이나 비공개를 특징으로 하는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과거의 국방이나 외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 통상, 환경 등 사회 전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변화되었으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 사기사건과 같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 피해액도 천문화적인 규모에 이를 정도로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명확히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보고서는 대규모의 부패 및 비리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은 국가정보원의 부패 및 비리 관련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결정 참조).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라고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일반적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의 ‘기획’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가정

보원의 설립목적, 비공개적 업무성격, 변화된 안보개념 등을 이유로 위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의 의미는 질서유지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56조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반 규정에 불과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제2조는 국가정보원장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회의의 배석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부패 및 비리 관련사건에 미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관한 정보는 대규모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피해이익을 비교衡量 했을 때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위법한 이상, 원고들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범행과 관련되었고 원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등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는 제이유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및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금품수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위와 같은 의혹은 과장되었거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피해이익보다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사건 참조),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업의 영업 및 그 밖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그 정보가 설령 불법적인 기업 활동이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내란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의 영업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 관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그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상당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 자체로 인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정보원이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제공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손해 및 원고 주주도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인바, 이러한 손해는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기사의 보도와 관련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오○○과 이○○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폴리뉴스 기자인 피고 오○○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하고, 피고 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 신문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오○○과 이○○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오○○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가 피고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하도록 당부하였으므로 이○○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 증 3, 4, 7, 8,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가 피고 오○○에게 사실확인을 당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확인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피고 오○○에게 보여주거나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게 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오○○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사는 제이유그룹이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금품수수 및 로비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초사실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결과,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19(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은 이 사건 보고서만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금품수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 내용이 보도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공무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인 제이유그룹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이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의한 손해(피고 대한민국)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정보원의 원고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으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현출된 부분 9쪽 분량 이외 30쪽 가량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수사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원고 주수도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도 수사결과 상당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피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업을 통한 사기범행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 및 로비 관련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인터넷 언론매체의 과급효과, 허위내용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이 사건 기사의 게재 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오○○은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 4. 17.부터 피고 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13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005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는 2009년 10월 29일 전○○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7년 8월 23일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객의 커트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 및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부 벽면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하였다는 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전에 오산시청 위생계 등에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진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전에 윤□□과 그 남편을 면담하여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여 원고를 취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윤□□과 그 남편은 제보자와 그 남편에 불과하여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줄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도에 방송된 원고의 대화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취재하여 윤□□의 제보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윤□□의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는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원고가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은 윤□□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커트를 하는 동안 앉아 있던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컷·크리닉컷, 디자인컷과 일반컷을 구별함이 없이 커트를 마친 후 위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컷·크리닉컷 내지 디자인컷의 가격인 50,000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의 음성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용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은 원고 청구의 불분명한 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각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개별적인 인용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9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344)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 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 및 손해배상 100만원)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되었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24일 “피고는 정정보도를 방영하고,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80052 정정등

원고, 피 항 소 인 겸 부 대 항 소 인 : 전 ○ ○

피 고, 항 소 인 겸 부 대 피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21642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4. 29.

판 결 선 고 : 2009. 6. 3.

주 문 :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초기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윤○○’으로 표시된 부분은 ‘윤□□’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증거란에 이 법원의 증인 이○○, 이□□의 각 서면증언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부터 제8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윤□□의 제보를 접수한 다음 윤□□과 그 남편을 면담하여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오산시청 위생계 등에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진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내부조감도 및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현장확인, 원고와의 인터뷰 등을 거쳐 이 사건 보도에 이른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 가격표를 보지 못하였다가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비로서 요금을 알게 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윤□□의 위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전에 오산시청 위생계 등에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진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전에 윤□□과 그 남편을 면담하여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여 원고를 취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윤□□과 그 남편은 제보자와 그 남편에 불과하여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줄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도에 방송된 원고의 대화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취재하여 윤

□□의 제보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윤□□의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7. 8. 23. 방송한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오산시 모 미용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하여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미용실은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쓰인 미용 가격표를 게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3심 판결문

사 건 : 2009다49766 정정등

원고, 피상고인 : 전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0052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10. 29.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

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간판 “전○○ 헤어랜드” 중 “전○○”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를 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전○○ 헤어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여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바, 구체적으로는 윤□□의 남편 김○○이『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말하는 영상과 함께 위 내용이 자막처리되어 있는 부분인 사실,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에는 “남자컷 50,000원(오만원)”으로 기재된 출력물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불투명 가림벽면 중 계산대쪽 방향에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데, 위 미용가격표는 출입문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사이에 위치한 미용의

자 3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위 불투명 가림벽면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쇼파 2곳, 미용의자 4곳과 계산대에서만 보이며, 위 미용가격표에는 “컷 · 크리닉컷 50,000, 디자인컷 50,000, 일반컷 000, 남자컷 000, 어린이 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윤□□은 실제로 2007. 1. 23.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출입문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사이에 위치한 미용의자 3개 중 가운데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를 하는 동안 미용가격표를 보지 못하였고, 커트를 마친 후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려고 할 때 원고로부터 미용가격을 50,000원으로 고지받고 원고가 위 미용가격표를 가리키면서 보라고 해서 비로소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원고가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은 윤□□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커트를 하는 동안 앉아 있던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컷 · 크리닉컷, 디자인컷과 일반컷을 구별함이 없이 커트를 마친 후 위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컷 · 크리닉컷 내지 디자인컷의 가격인 50,000원을 일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압축 ·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만연히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에 “남자 컷 50,000원(오만 원)”이라고 쓰인 가격표가 붙여지고 그 내부 벽면에 미용가격표가 게시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방송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만연히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므로 그 방송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음성권과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만 원을 구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음성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용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인용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어느 채권에 대한 청구인지 불분명하여 그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이 불완전·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하도록 보정을 명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상의 청구를 명확히 특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청구의 불분명한 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각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개별적인 인용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판단되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72044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6월 17일 정○○ 외 4인이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와 소속 기자들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정○○, 김○○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도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원고 배○○, 김□□, 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번복,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07년 3월 19일자, 20일자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경찰 늑장대응…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방치』,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검거도 차일피일 미뤄』라는 제목으로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딸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아버지가 애타게 경찰서 문을 두드렸지만 경찰의 늑장대응 때문에 결국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수리절차가 없어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응태도 및 그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과 성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왜곡되었다며, “이 사건 기사 중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들이 그 허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표현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인 원고 정○○, 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정도를 넘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보도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배○○, 김□□, 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와 그 후속 보도에 여성청소년계의 모든 경찰관들이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사와 그 관련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 배○○, 김□□, 장○○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 배○○, 김□□, 장○○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였으며, 2009년 7월 16일 상고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앞서 원고 정○○은 2007년 4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

판부는 2008년 6월 25일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 김○○에게 각 7백만원, 원고 배○○, 김□□, 장○○에게 각 2백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나72044 정정보도등

원 고, 피 항 소 인 : 1. 정 ○ ○

2. 김 ○ ○

3. 배 ○ ○

4. 김 □ □

5. 장 ○ ○

피 고, 항 소 인 : 1.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2. 권 ○ ○

3. 심 ○

4. 조 ○ ○

5. 박 ○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가합49132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5. 20.

판 결 선 고 : 2009. 6. 17.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 김□□, 장○○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배○○, 김□□, 장○○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 정○○,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정○○,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배○○, 김□□, 장○○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배○○, 김□□, 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 김○○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배○○, 김□□, 장○○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노컷뉴스 메인화면 우측 상단부에 팝업 창으로 7일간 별지2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에는 대제목 부분을 40급 고딕체 활자로, 소제목 부분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s.co.kr/nocut/>)를 통해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 권○○은 피고 회사의 사회부장, 피고 심○, 조○○는 사회부 취재기자, 피고 박○○은 카메라 기자로서 아래 기사의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 회사는 2007. 3. 19.과 같은 달 20. 자신이 운영하는 위 홈페이지에 “경찰 늑장대응…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방치”,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검거도 차일피일 미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딸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아버지가 애타게 경찰서 문을 두드렸지만 경찰의 늑장대응 때문에 결국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한 40대 남성과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울 동작경찰서로 달려왔다.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는 이들의 말에 경찰관은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가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보라는 부서를 겨우 찾은 40대 남성은 굳게 잠긴 채 불이 꺼진 사무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 지 10여분 만에야 경찰관을 만났다. 막 잠에서 깬 경찰관은 “대체 누가 밤중에 전화를 걸었느냐”라며 호통을 쳤다.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20살 난 딸 최모양(가명)이 귀가하다 실종됐는데 딸의 뒤를 쫓아오던 대여섯 명의 남성들이 납치한 것 같다고 어서 찾아달라고 사정했다. 최양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최양의 친구는 최양의 휴대전화를 낚신 남자가 받았다고 어서 신고를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종합상황실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고 경찰의 늑장대처에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

갔다. 최양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뭐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눈치였다. ‘24시간 안 들어와야 신고가 되는데 왜 왔느냐’ 그런 거였다. 납치당한 게 확실한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 나서기까지는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실종된 최양은 두세 명의 20대 남성들에게 끌려가 집단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15시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능동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사는 곳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검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이 있던 지 이틀 뒤인 지난 16일 최양은 성폭행 용의자들로부터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최양의 아버지는 즉시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동작경찰서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양의 아버지는 최양이 납치된 장소로부터 500미터쯤 떨어진 한 고시원에서 성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고시원의 주소도 경찰에 알렸다. 성폭행 용의자들이 고시원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용의자들이 곧 검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며칠 뒤에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양의 아버지는 “형사들이 지방에 내려갔다고 월요일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최양의 아버지와 함께 동작경찰서를 찾았던 최양의 친구도 사라진 최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남자가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말을 듣고서도 30분이 지나서야 최양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최양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경찰 대여섯 명을 보내 납치장소를 수색했다. 당시 최양이 납치된 장소는 동작경찰서로부터 불과 200미터 가량 떨어진 노량진 학원가였다. 최양이 납치 장소 인근의 고시원에서 집단성폭행당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이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다. 이 사건 기사 게재 전후의 상황

• 이 사건 기사에서 최모양이라는 가명으로 언급되었던 김◇◇은 2007. 3. 1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친구 이○과 함께 노량진역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 이르렀다. 이○이 김◇◇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가던 도중, 지나가던 주○○, 백○○이 다가와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그 주위를 서성거렸다. 이○은 김◇◇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핸드폰 충전지를 교환하러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에 김◇◇이 사라졌다. 그러자, 이○은 김◇◇이 주○○, 백○○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을 찾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 01:44경 김◇◇의 아버지인 김○○, 언니인 김◇◇(이하 위 3명을 ‘김○○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근에 있던 동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갔다.

•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그날 밤 수색작업을 벌였음에도 김◇◇을 찾을 수 없었는데, 당시 만취상태에 있던 김◇◇은 2007. 3. 13. 23:30경부터 다음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 ○○○-○에 있는 한 자취방에서 주○○, 백○○ 및 그 친구들인 박□□, 김△△로부터 순차로 성관계 또는 성적 추행을 강요당하였다. 주○○, 백○○, 박□□, 김△△는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2008. 1. 25.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김◇◇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만 인정되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법원 2007고합933호 판결).

• 한편,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위 기사는 다른 언론매체에 여러 차례 인용보도되었고, 동작경찰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폭주하여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 김○○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심○의 취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피곤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에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 의해 ‘동작 피곤녀’로 지칭되는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당직근무 중 잠을 자다가 실종신고를 받은 것으로 묘사된 원고 정○○와 동작경찰서 경찰관인 심○○, 이○○은 위 보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원고 정○○과 심○○는 계고처분(계고는 징계처분이 아니다)을 받았고, 이만식은 견책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여 위 견책처분을 취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2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정○○,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정○○, 김○○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정○○, 김○○은 실종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நட장대응을 한 바 없고 성폭행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를 지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 정○○, 김○○을 비롯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நட장대응을 하여 집단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폭행 피의자들의 검거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정○○,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정○○, 김○○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답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 정○○, 김○○을 포함한 동작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종신고수리를 지연하는 등으로 낙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집단성폭행을 방지하게 되었고, 성폭행범 검거를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정○○, 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정○○와 원고 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고들 주장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가) 낙장대응과 관련된 부분

1) 인정사실

원고 정○○, 김○○을 포함한 동작경찰서 경찰관들이 김○○ 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대처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01:44 경 - 김○○ 등이 동작경찰서 폭력계에 들어와 별다른 설명 없이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라고만 말하자, 폭력계에 있던 한 경찰관은 3층에 있는 여성청소년계가 담당부서이므로 그 쪽으로 가서 실종신고를 접수하라고 말하였다. 피고 심○은 당시 동작경찰서 폭력계에서 다른 취재활동을 하던 중 김○○ 등이 여성청소년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 박○○도 피고 심○을 따라가면서 취재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01:47경 - 피고 심○과 김○○ 등은 여성청소년계 사무실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어 근무자를 부르기 위해 피고 심○이 1회에 수회씩 도합 3회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피고 심○은 사무실 문에 붙어있는 메모용지에 당직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번호로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빨리 나와서 실종신고를 받으라고 하였다.

• 01:51경 - 당시 여성청소년계 당직이었던 원고 정○○는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 심○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고 나와 “누가 전화하셨어요. 방금 전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당시 원고 정○○가 호통을 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 심○이 경위를 설명하자, 원고 정○○는 피고 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술 드셨어요 혹시?”라고 물었고, 이로 인해 잠시 언쟁이 있었다.

• 01:53경 - 원고 정○○는 김○○ 등을 데리고 여성청소년계 사무실로 들어가 김○○의 인적 사항 및 사건발생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정○○는 피고 심○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또다시 잠시 동안 언쟁이 벌어졌다.

• 02:00경 - 원고 정○○는 대강의 조사를 마친 후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을 나와 종합상황실로 가서 당시 상황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청소년계장인 원고 김○○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 02:05경 - 상황을 보고받은 원고 김○○은 112 무선지령을 통해 순찰차 1대를 노랑진 232-54 일대에 대기하게 하고 순찰차 1대를 동작경찰서 상황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김○○의 인상착의와 함께 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

• 02:11경 - 원고 김○○은 김○○ 등과 함께 서울소방방재본부 119 상황실에 신고하여 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의뢰하였다.

• 02:24경 - 김○○ 등은 위와 같이 119 신고절차를 마친 다음 동작경찰서로 들어온 순찰차에 동승하였고, 경찰관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위 순찰차에 김○○ 등을 동승시킨 상태로 사고지역 인근을 돌면서 수색을 하였다.

• 02:38경 - 서울소방방재본부 119 상황실로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김◇◇이 대방동 44- 55 소재 동작전화국 부근 반경 1km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통보가 오자,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관할 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를 동원하여 그 부근의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탐문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김◇◇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

• 04:00경 - 원고 정○○는 원고 김○○의 지시로 경찰내부전산망에 김◇◇에 대한 가출인 수배신고를 입력하였다.

• 08:45경 -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김◇◇에 대한 수사개시여부를 협의하던 중, 김◇◇의 대학선배 차○○ 등으로부터 유선으로 ‘김◇◇이 사건 당일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잤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수배를 해제하고 실종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검토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위 인정사실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 김○○ 등이 동작경찰서로 들어가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한 경찰관이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가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 김○○ 등이 그 부서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고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으며 당직근무자가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고서야 나왔다는 부분은 당시의 실제상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이 사건 기사 중 △ 김○○ 등이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지 10여분 만에 경찰관을 만났다는 부분(원고 정○○는 김○○ 등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이후 4분만에 나왔다), △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나온 경찰관이 “대체 누가 밤중에 전화를 걸었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부분(원고 정○○가 “누가 전화하셨어요. 방금 전화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하였지만 호통을 치지는 않았다), △ 김○○ 등이 종합상황실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는 부분(원고 정○○가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하러 간 후 경찰차로 수색에 나서기까지 김○○ 등이 종합상황실 밖에서 기다린 시간은 약 24분이었고, 그동안 원고 정○○, 김○○은 112 지령을 내리거나 서울소방방재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 김○○가 “한마디로 뭐 받아주지 않는 그런 눈치였다. ‘24시간 안 들어와야 신고가 되는데 왜 왔느냐’ 그런 거였다. 납치당한 게 확실한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원고 정○○는 김○○ 등을 만난 후 피고 심○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지체 없이 김◇◇의 인적 사항, 실종당시

의 상황 등에 관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바로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였다), △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 나서기까지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부분(김○○ 등이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최초로 동작경찰서 폭력계에 들어온 지 약 40분 만에 경찰차가 출동하여 수색에 나섰다)은 모두 실제의 사실관계를 조금씩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한 부분들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보도내용들이 △ “경찰 늑장대응 … 20대 여성 집단성폭행 방지”,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제목, △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 ‘늑장대응’, ‘늑장대처’라는 표현, △ 김○○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발을 동동’, ‘사정’, ‘애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 등의 표현, △ 원고 정○○를 비롯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호통’, ‘받아주지도 않는 눈치’, ‘왜 왔느냐’ 등의 표현과 같이 다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방식과 결합됨으로써,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정○○, 김○○을 포함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마치 김○○ 등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실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건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김◇◇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묘사되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등이 01:44경이라는 심야시간에 동작경찰서를 찾아왔을 때 비록 그들이 납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고만 말하였다 하더라도 동작경찰서 폭력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그 취지를 자세히 물어서 납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곧바로 종합상황실로 안내하여 신고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여성청소년계로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점, 여성청소년계 당직근무자였던 원고 정○○가 당직 중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약간 늦게 실종신고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을 취재하려던 피고 심○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절차가 다소 지연된 점 등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김○○ 등의 실종신고에 대해 다소 부적절하게 대응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김○○ 등이 동작경찰서로 들어오자마자 김◇◇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바로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고만 말하였으므로 동작경찰서 폭력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일반적인 가출신고인 것으로 생각하여 여성청소년계로 안내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 원고 정○○는 사무실 문에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사무실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김○○ 등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불과 4분 만에 사무실 밖으로 나온 점,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2008. 6. 16.자 원고 측 참고자료), △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는 가출청소년이나 미아 등의 실종사건처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성폭력이나 납치 등과 같은 긴급상황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청소년계 당직근무자 심야시간에도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이나 내부적인 근무수칙도 없어 보이는 점,

△ 원고 정○○가 김○○ 등을 상대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던 중 피고 심○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원고 정○○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 심○이 술냄새를 풍기면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안에 들어와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면서 취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 또는 당혹감을 느껴 피고 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실랑이 과정에서 그리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은 점, △ 원고 정○○가 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약 31분 만에 경찰차를 이용한 인근 수색이 시작되었고, 그 후 새벽까지 수색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 위 31분 동안 기본적인 사태과학과 112 지령, 위치추적 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 정○○, 김○○이 위 실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 당시 김◇◇이 성폭행을 당한 곳이 가해자들의 자취방이어서 실종신고 즉시 수색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현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정황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묘사된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실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건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응과정의 과실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김◇◇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정○○, 김○○을 비롯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마치 불성실한 태도로 실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건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김◇◇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묘사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들로서는, 동작경찰서가 민원인의 실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의 문제점, 즉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수리절차가 없어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 나아가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응태도 및 그로 인한 사건처리지연과 김◇◇의 성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왜곡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검거지연과 관련된 부분

1) 인정사실

• 김○○는 김◇◇이 위 실종 당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는 2007. 3. 16. 23:00경 다시 동작경찰서 강력4팀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날 강력4팀이 휴가 중이어서 당직 중이던 강력 1팀에서 수사를 맡게 되었다.

• 강력1팀 소속 경찰관들은 2007. 3. 17. 00:30경 김◇◇을 동작경찰서에 출석시켜 피해경위 등을 조사한 후 김◇◇과 그 가족을 동행하고 같은 날 01:00경부터 02:30경 까지 피해장소로 추정되는 ‘장성 불가마 사우나’ 부근을 답사하였으나, 김◇◇이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여 정확한 피해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 김◇◇은 경찰관들에게 ‘사건 당일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가 2007. 3. 16. 다시 켜올 때 발신번호 정보 없이 부재중 전화가 수 회 걸려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전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

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들은 당일인 17일과 18일은 주말이라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역발신번호)를 구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통신회사가 영업을 재개하는 월요일에 발신자 추적을 의뢰하기로 하고 김◇◇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후 귀가시켰고, 같은 날 13:00경에는 김◇◇과 함께 보라매병원 산부인과에 가서 질 내용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다.

• 김○○는 2007. 3. 17. 17:00경 가해자 중의 1명이 김◇◇의 휴대전화에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 문자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고, 경찰관은 김◇◇과 통화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월요일인 2007. 3. 19.에 그 휴대전전화의 가입자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그 후 동작경찰서 강력4팀 소속의 형사가 월요일인 2007. 3. 19. 오전 김◇◇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들이 모두 출석요구에 응하여 그들을 모두 긴급체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검토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위 인정사실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동작경찰서 소속경찰관들은 이 사건 기사 보도시까지도 범행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범인이 2007. 3. 17. 17:00경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으나 휴대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요일까지 기다린 것이어서 검거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에서는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범행장소인 고시원의 주소를 모두 알고도 담당경찰관들이 지방에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검거를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바, 위 보도 또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다.

(3)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2007. 3. 19. 06:51분에 보도되었는데, 당시 김◇◇이 남자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 6시경에 풀려 나왔다는 사실만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김◇◇이 정확한 성폭행 시간대를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심○로서는 김◇◇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 6시경 풀려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경찰의 늑장대응과 늦게는 아침 6시경까지 저질러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성폭행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피고 심○은 김○○로부터, 김○○가 경찰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알려 주었고, 김◇◇이 자신이 성폭행당한 고시원의 주소도 경찰에 알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담당 형사들의 휴가로 인하여 범인검거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심○은 동작경찰서를 출입하는 담당기자로서 김○○ 등이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으므로, 원고 정○○가 김○○ 등을 만난 후 피고 심○과 약간의 실

량을 벌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지체 없이 김◇◇의 인적 사항, 실종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바로 종합상황실에 보고한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 정○○로부터 보고를 받은 상황부실장 원고 김○○이 즉시 순찰차를 불러 김○○ 등을 태워 인근지역을 순찰하게 하고, 김◇◇의 휴대전화위치추적을 의뢰하는 등 김◇◇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 심○로서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이나 김○○ 등에게 김◇◇을 찾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원고 김○○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이 성폭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심○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피고 심○에게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김◇◇이 성폭행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작경찰서 강력1팀 소속 경찰관들은 김○○로부터 김◇◇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김◇◇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김◇◇과 함께 피해장소를 찾아다녔으나 피해장소를 찾아내지 못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범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범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임을 밝히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경우 범인이 도주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점을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에 범인을 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심○로서는 경찰이 범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알아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경찰이 범인의 주소는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고, 긴급체포(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검거’는 긴급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으로서 이러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범인을 긴급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단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갑 제9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긴급체포된 위 범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최초 검사가 재수사지휘를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판사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위 범인들 중 구속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 심○에게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인검거를 지연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김◇◇이 성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이 범인검거를 지연하고 있다

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기사게재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인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가족의 범죄신고를 적절하게 접수하고 후속 수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기사이고, 이 사건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는 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동작경찰서장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늑장대응을 사과하였고, 동작경찰서 관련 경찰관들이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점, 동작경찰서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정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들이 그 허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표현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인 원고 정○○, 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정도를 넘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인 2007. 3. 20.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과·대장회의를 소집하여 동작경찰서의 실종·납치의심 사건 늑장대처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동작경찰서장도 동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원고 정○○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 이상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보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동작경찰서 관련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가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 정○○,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정○○, 김○○이 마치 실종신고조차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고 범인도 검거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인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원고 정○○, 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 김○○은 자신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인적 사항까지 알려지면서 네티즌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를 비롯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 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대응한 면도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경찰의 신고수리체제와 초동대응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공론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정○○, 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정○○, 김○○에게 각 7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이상, 피고 회사는 허위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게재방법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등의 실종신고가 수리되는 과정에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간이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어 원고 정○○, 김○○이 구하는 대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건신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건처리를 하였으며’라고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운영여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정○○, 김○○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내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게재시기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도 원고 정○○, 김○○의 청구와 달리 제1심 판결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원고 배○○, 김□□, 장○○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이 늑장대응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청소년계의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있지 않아 여성청소년계의 모든 경찰관이 늑장대응을 할 것으로 오인되어 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 배○○, 김□□, 장○○도 주위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 배○○, 김□□, 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하고, 피고 회사는 허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여성청소년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후 다시 작성된 기사에, 실종신고를 하러 온 김○○ 등에게 경찰관이 알려 준 담당 부서가 여성청소년계라는 내용과 원고 정○○가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임을 알려 주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와 그 후속 보도에 여성청소년계의 모든 경찰관들이 능장대응을 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사와 그 관련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 배○○, 김□□, 장○○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 배○○, 김□□, 장○○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 김○○에게, 피고들은 각자 각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 일인 2007. 3.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 김○○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정○○, 김○○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배○○, 김□□, 장○○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 김□□, 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 김□□, 장○○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배○○, 김□□, 장○○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 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정○○, 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작은 제목 : ‘경찰 능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성폭행 방지’ 보도와 관련하여
- 본 문 : 본 CBS 노컷뉴스에서는 2007. 3. 19.자 메인화면에 “경찰 능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성폭행”, “경찰 능장대응…20대 여성 집단성폭행 방지,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검거도 차일피일 미뤄”라는 제목 하에 서울 동작경찰서 담당부서의 능장대처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실종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건처리 및 범인검거를 지체한 사실이 없고, 위 경찰관들이 대응을 늦게 함으로써 예방가능했던 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니었음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사는 위 보도로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15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일산의 한 고등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지칭하고 있어, 주변 지역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사망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8가합96333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09년 6월 17일 장○○가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와 칼럼 기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메트로신문사는 무료 일간지 ‘메트로’ 및 그 홈페이지에 피고 최○○이 작성한 『금쪽같은 내 새끼야!』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여 일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4교시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학생이 1교시가 끝난 후 담임교사에게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담임교사가 궤변이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 흔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일산의 한 고등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지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당 학교의 수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사망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망인이 원고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궤변이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 등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정보도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최소한 학교 현장에 나가 당사자들로부터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조차도 없이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가합96333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장 ○ ○

피 고 : 1.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2. 최 ○ ○

변 론 종 결 : 2009. 6. 3.

판 결 선 고 : 2009. 6. 17.

주 문 : 1. 가.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메트로’ 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5면 내지 제9면의 기사게재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는 위 1항과 같이 종이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날로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초기 메인화면 중앙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고딕체로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인터넷 판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같은 날로부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다. 만일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가 위 가.항 및 나.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메트로’의 최초 발행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가.항의 경우 1일 700,000원, 나.항의 경우 1일 3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5.부터 2009.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① ‘메트로’ 1면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및 내용 모두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고, ②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게재된 정정보도 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3】 정정보도문을 30일간 게재하라. 피고가 위 정정보도 내지 기사삭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1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 소재 ○○고등학교 교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 신문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른바 무가지(無價紙)인 ‘메트로’(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다. 피고 최○○은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2008. 7. 9.자 이 사건 신문 제9면에 게재된 【별지 1】 기재와 같은 칼럼(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종이신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아울러 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도 이를 게재하였다.

마. 망 엄○○은 2008. 6. 23. 원고가 답임을 맡고 있던 ○○고등학교 ○학년 ○○반 학생으로 4교시 수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고 당일 망 엄○○이 원고에게 조퇴를 요청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피병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 등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학교 이름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해당 담임교사가 원고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것으로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우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떠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표현의 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 흔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일산의 한 고등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지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당 학교의 수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사망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기사는 외부 필자에 의한 칼럼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과음과 과로가 겹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망인이 1교시를 마친 후 담임교사에게 병원에 가봐야겠다면서 조퇴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대뜸 피병이라며 조퇴를 허용하지 않았고, 망인이 3교시를 마친 후 친구의 부축을 받아 겨우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교사가 3교시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러가고 없었으며, 망인이 쓰러진 후 양호교사나 체육교사 등 누구도 응급처치를 할 줄 몰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당초 조퇴를 불허하였다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기사에서도 피고 최○○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후 담임교사가 조퇴만 하게 해주었더라도 망인은 목숨을 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렇다면 과연 망인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조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이 있다.

우선,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대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항의가 있자 피고 최○○이 망인의 친구인 우○○에게 부탁하여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고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메모인데, 이에 의하면 이□□라는 친구가 망인에게 “너, 어디 가니?”라고 묻자, 망인이 “조퇴하러”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고, 망인이 양호실에 간 적은 없으며, 망인이 쓰러진 후 체육교사가 팔을 주무르고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못해 반응이 없었는데, 5~8분 후 앰블런스가 도착하여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하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을 제2호증의 1은 우○○이 다니는 입시학원 ‘○○○○’의 강사인 이◇◇가 우○○으로부터 들은 내용

을 토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이에 의하면 망인이 같은 반 친구인 이□□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조퇴 신청을 하러 갔으나, 망인이 평소 자주 조퇴를 하던 학생이라 담임교사가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고, 망인이 3교시가 끝난 후 친구와 함께 양호실에 찾아갔으나, 양호교사가 식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양호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증인 이○○의 증언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은 사고 당일 아침에 등교하여 망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로는 망인 쪽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알지조차 못하며, 망인과 함께 교무실에 가 담임교사인 원고에게 조퇴를 신청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3교시가 끝난 후 친구와 함께 양호실에 간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는 달리 실제로 망인이 양호실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조퇴하러 간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망인에게 “너, 어디 가니?”라고 묻자, 망인이 “조퇴하러”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인 반면,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나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같은 반 친구인 이□□와 함께 교무실에 조퇴를 신청하러 간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

다만,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후 학생들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소문 내용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위 증인인데, 위 증인이 그와 같은 소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 을 제1호증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사고 당일 망인이 원고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께병이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 등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고등학생이 수업 도중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은 지역 도서관에서 학생들 사이의 대화를 듣고는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사고 내용의 개요 정도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처인 이○○가 학원에서 우○○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 주자, 그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일체 확인한 바 없이 이○○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만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최○○과 이○○가 부부 사이로서 양자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최○○이 이○○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그 자체 우○○ 등을 거쳐서 전달된 말이라는 점에서 피고 최○○과 이○○ 사이의 신뢰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달 과정에서 오류나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그 전달자들이 미성년의 고등학생들로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예상치 못하였던 사건을 접하고는 충격을 받아 사태를 냉철히 관찰하거나 숙고하지도 아니한 채 흥분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하여 잘못 전달된 것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최소한 학교 현장에 나가 당사자들로부터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조차도 없이 이○○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의한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

(1) 정정보도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망인이 사망 당일 원고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꾀병이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체와 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를 포함한 구체적인 게재방법,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에서 정정보도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 사건 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건 기사 자체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범위를 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분량,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의 정도, 보도 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목적, 원고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8.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6.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사내용

금쪽같은 내 새끼야!

최○○ ○○○○○○소장

고3 남학생이 연일 밤샘을 하며 기말고사 준비를 했다. 시험 스트레스를 잊으려 전날 친구들과끼리 술을 마셨다. 그날 아침에는 과로에 과음이 겹친 탓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1교시를 마치고 담임선생님에게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다면서 조퇴하게 해 달라고 했다. 교사는 대뜸 피병이라며 조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학생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평소 심장이 안 좋았던 그 학생은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옆에 앉은 짝꿍이 3교시를 마치고 양호실에 가자고 했다. 친구의 부축을 받고 겨우 양호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양호실 교사는 3교시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없었다.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학생은 이내 혼수 상태로 빠졌다. 교사들이 달려왔다. 그런데 양호교사나 체육교사 등 그 누구도 응급처치를 할 줄 몰랐다. 학생의 목숨이 꺼져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광경이었다. 119가 와 학생을 신고 갔지만 이

미 늦었다. 병원으로 호송 도중 그 학생은 숨이 멎고 말았다. 18세의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최근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어찌보면 그 학생은 지독히 운이 없었다. 담임교사가 조퇴만 하게 해주었더라도, 양호교사가 3교시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았더라도 그 학생은 목숨을 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응급처치라도 제대로 했다면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에는 안양의 한 여학생이 촛불시위에 다녀온 후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담임 이토록 싫은 사람이 있었던가?”라는 글을 남겼다. 담임교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그 여학생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금쪽같은 내 새끼야.”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 나오는 한 대목이지만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하나같이 금쪽같은 존재다. 그 금쪽같은 자식들이 ‘삭막한 교실’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교사들이여, 당신들도 금쪽같은 자식이 있을진대, 진정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보살필 수 없는 것일까. 【끝】

〈별지 2〉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해 7월 9일 최○○(○○○○○○○소장)씨가 작성한 “금쪽같은 내 새끼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여 일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4교시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학생이 1교시가 끝난 후 담임교사에게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담임교사가 께병이라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망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조퇴를 요청한 바가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문 생략

명예훼손 사례 16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가합40828, 62859(병합)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09년 6월 24일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월간조선 2008년 5월호에 『추적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구 여권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저지른 비리 규모는 약 600억원에 달하고, 설립 이후 매출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한국관광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 설립자금을 조달하였고, 서울 강남점을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 3곳에 카지노를 개설하는 데 위 설립자금에 근접한 878억 4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카지노를 개설하면서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다음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비리의 규모가 약 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굳이 비자금이 무속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원고의 전산시스템이 도스 체제로 되어 있는지 여부나 내국인의 입장 여부 등은 원고 등으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월간지와 같이 신속성 요청이 덜 한 경우 더욱 충실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감사원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리에 대한 고발의 필요성도 별로 없었으며, 그 조사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이를 보도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3월 25일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18)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 및 반론)을 내렸고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40828 손해배상(기)
2008가합62859(병합)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피 고 : 1.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2. 김○○

변 론 종 결 : 2009. 5. 27.

판 결 선 고 : 2009. 6. 24.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사의 제목인 『관광공사 카지노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구여권 개입의혹』과 같은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3】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9.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카지노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2006. 1. 27. 서울 강남 코엑스 오크우드호텔, 같은 해 5. 26.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같은 해 6. 23. 부산 롯데호텔에 세븐럭(Seven Luck)이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였다. 박○○(아래 이 사건 기사에서 ‘P씨’로 언급된 사람이다)은 원고 회사 설립시부터 2008. 4. 17. 사임할 때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이하 ‘피고 월간조선사’라고 한다)는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김○○은 피고 월간조선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월간조선사는 2008년 5월호 월간조선에 <추적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구 여권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저지른 비리 규모는 약 600억 원에 달하고, 설립 이후 매출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원고가 전산시스템이나 서버일런스(보안)시스템 관련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다음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형성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예산이 약 130억 원으로 원고는 이를 자체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중고 시스템을 40억 원 주고 사온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도스(DOS)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요즘 컴퓨터에서는 작동도 안 되는 것이다. 서버일런스시스템 또한 구입에 약 224억 원이 들어갔지만, 상식적인 비용은 100억 원 내외로 충분하다. 매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이 국회의원 K씨, Y씨, L씨 등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전달됐다. 카지노에서 만들어진 자금은 기업이 출신의 한 무속인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핵심인물인 P씨에게 전달되었고, 정치권에 돈을 뿌리는 작업은 P씨가 직접 하였다. 원고의 카지노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나, 지역 카지노 대부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제주도는 휴·폐업하는 카지노가 등장하고 있다. 원고의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립허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다. ‘밸런스’라고 하여 카지노 전체에서 얼마를 벌고 잃었느냐에 대해 2시간마다 보고하여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강원랜드와 함께 세븐러칸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젠 비리가 있다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울 강남에 설치할 사업장 내지 임대인으로 한무컨벤션 주식회사(이하 ‘한무컨벤션’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삼성동 코엑스 내 오크우드호텔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관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김○○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으나 별도로 가치번호를 기재한 것은 그 가치번호만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래 사실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8, 9, 11, 1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감사원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

5. 22. 경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2004. 11.경 카지노 영업장 임대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시설을 갖추고 평가점수도 높은 A사를 제외한 채 시설 일부가 건축법상 카지노 영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B사를 부당 선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2005. 10.경 위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카지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창고로 방치한 채 지난 2년간 임대료 24억 8,000만 원, 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2008. 8.경 원고가 허위 경력자 및 경력 미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원으로 채용한 점, 원고 회사 사장인 박○○이 총 21회에 걸쳐 회사 직원 또는 주변이인 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 합계 15,712,203원을 카지노 고객이 콤포¹⁾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처럼 처리한 점 등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그 이외에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다.

(나) 검찰은 인력 아웃소싱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원고 회사의 전직 직원 윤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안감시 시스템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사전 유출하고 5,000만 원을 받은 한국관광공사 소속 직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원고의 보안시스템 사업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를 시도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의 영업팀장 등 직원 2인을 증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박○○의 경우 원고 회사 본사는 물론 강남점, 힐튼점, 그리고 그의 자택 등에 대하여 자금, 회계 및 경리 업무 담당자들의 일체의 회계자료, 전산자료, 서버일련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총 4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고객의 콤포로 처리한 점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하여는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 한국관광공사는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카지노 사업장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된 원고 회사의 카지노 개설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코엑스점의 경우 279억 7,500만 원, 힐튼점의 경우 283억 1,800만 원, 부산 롯데점의 경우 153억 100만 원 등 총 878억 4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전산시스템 예산 132억 원 중 40억 원을 들여 카지노 전산시스템인 ‘E-SUIT’를 자체개발하였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전산실 서버 및 단말기 등의 장비 구입·설치에 사용하였으며, 외국에서 중고, 그것도 DOS시스템으로 된 전산시스템을 구입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

(마) 원고 카지노 입장객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일본관광객 53.96%, 중국관광객 7.71%,

1) ‘콤포’란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박,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체의 관행에 따라 고객 개인별로 게임시간, 배팅금액 등 게임실적에 따라 그 한도가 설정되며, 콤포 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숙박비, 운송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영업준칙 참조)

홍콩관광객 5.68%, 대만관광객 5.73%, 동남아관광객 3.12%, 교포 14.86%, 기타 8.93%이고, 2007년도의 경우 일본관광객 51%, 중국관광객 10%, 홍콩관광객 및 대만관광객 각 6%, 동남아 관광객 4%, 교포 14%, 기타 9%이다.

(배) 원고 카지노는 모든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전산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손익이 모니터링 되므로 별도의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는 1일 단위로 매출보고가 이루어지고, 감독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에는 월 단위로 매출보고를 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매출액 누락 내지 횡령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 오크우드호텔 별관 컨벤션 2층은 2000년 건물 준공 당시 이미 위락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였던 반면, 3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어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입찰심사 당시 한무컨벤션 측에서 카지노 개설 전에 용도변경을 마치겠다고 하므로 당연히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전제로 심사가 이루어진 끝에 결국 한무컨벤션 2, 3층이 강남 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2004. 11. 22. 한국관광공사와 한무컨벤션 사이에 영업장 임대 가계약까지 체결되었다. 그 후 관할 강남구청에서 2001. 11. 10.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의 거리 이내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관광공사는 2005. 7. 13. 한무컨벤션 측에 위 가계약의 해제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한무컨벤션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24호로 본계약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5. 9. 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 있었다. 이에 그 무렵 설립되어 한국관광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한무컨벤션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3층의 용도를 책임지고 변경하겠다고 하므로 일단은 임대료를 낮추는 등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2005. 10. 5. 한무컨벤션 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무컨벤션은 2007. 1. 31.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28호로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56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5.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의 지적현황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컨벤션 건물로부터 반경 50~60m 이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채의 주택만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컨벤션 건물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택의 대지 경계선과 컨벤션 건물 외곽 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54.02m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건물은 식당, 주점,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상업지역화되어 있는 점, 컨벤션 건물 2층은 위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용도가 위락시설로 정해졌고, 2006년부터 실제로 카지노 영입이 행해지고 있으며, 위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업소이고, 3층에 카지노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규정상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한국관광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 설립자금을 조달하였고, 서울 강남점을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 3곳에 카지노

를 개설하는 데 위 설립자금에 근접한 878억 4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카지노를 개설하면서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다음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비리의 규모가 약 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전산시스템 예산 132억 원 중 90여억 원은 전산장비 구입·설치비이고,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40억 원인데, 위 비용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지 20년 전에 만들어진 도스 체제의 중고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시스템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것으로 유형적인 장비와는 달리 ‘중고’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 더구나 2008년 들어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른 공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 온 박○○ 사장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이 일괄 사임하였고,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감사 및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인력 아웃소싱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원고 회사 전직 직원과 보안시스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유출하고 5,000만 원을 받은 한국관광공사 소속 직원 이외에, 카지노 영업장 개설 당시 물품 구입 또는 용역 발주 등과 관련하여 박○○ 사장 등 경영진이 뇌물이나 커미션을 받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위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가장 금액이 큰 보안시스템 발주와 관련하여 직원이 뇌물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유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장 등 경영진이나 그 외 정권의 실세라고 할 만한 인사들이 거액의 커미션을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정치자금 제공 의혹 역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카지노의 이용자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라는 보도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된다. 원고 카지노는 전산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손익이 모니터링 되는 관계로 별도의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일 내지 월 단위로 매출보고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2시간마다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 유만으로 제기된 매출액 누락 내지 횡령 의혹에 관한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서도 확인되었다. 오크우드호텔 별관 컨벤션 3층이 위락시설 용도가 아니어서 카지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영업장 내지 임대업체 선정시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처음에는 한무컨벤션이 카지노 영업장 개설시까지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나중에 관할 구청에서 3층에 대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는 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한무컨벤션에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무컨벤션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에서 한무컨벤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므로, 부득이 원고가 임대료를 조정하는 한편, 한무컨벤션이 책임지고 소송을 통해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소송 결과 용도변경불허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기타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비리나 범죄 혐의가 밝혀진바 없는바, 위와 같은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서울 강남 영업장 내지 그 임대업체 선정에 정권의 실세가 관여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저지른 비리 규모는 약 600억 원에 달하고, 설립 이후 매출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 원고의 전산시스템 관련 예산이나 서버일련스(보안) 시스템 예산을 부풀려 형성한 자금은 정치자금

으로 제공되었다.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하였다고 하나 요즘 컴퓨터에서 작동도 안 되는 도스시스템을 40억 원을 주고 사온 것이다. 원고의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립허가 되었으나 이 카지노의 이용자는 대부분 한국인이고, 카지노 전체에서 얼마를 벌고 잃었느냐에 대하여 2시간마다 밸런스 보고도 하지 않는데, 이는 비리(매출 누락 내지 횡령)가 있다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한무컨벤션이 오크우드호텔 2층에 카지노를 설치할 때 정권 실세였던 A씨와 L씨 등의 고위급 인사가 관여했다'는 기사 부분은 진실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원고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 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핵심인물이었던 P씨를 선임하는 데 약 1년이 걸렸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公募)기간으로 2개월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취지가 공모기간이 1년이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장 후보자를 물색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렸다는 데에 있고, 실제로 사장 선임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P씨의 예전 경력을 보면 대부분 조직 구성 초기에 들어가 비리를 저지른 흔적이 보인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이 15가지가 된다. 원고의 임원 중 K모씨라는 문광부 출신만 사표 안 쓴다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거론된 P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븐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카지노 대부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제주도는 휴·폐업하는 카지노가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제목에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문(傳聞)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재원 발언의 배치 형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박○○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 등과 연관 지어 보도한 점 등에서 독자들이 판단하기에 취재원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카지노를 설립·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 규모가 약 600억 원 또는 1,000억 원에 달하며, 이런 자금이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등의 내용 면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기관이 설립한 회사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사의 취지는 그 자체로서는 관련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불공정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카지노 사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가운데 앞에서 허위로 인정한 기사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기사의 경우 이를 진실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상당성 여부

피고들이 위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9, 12, 13, 15,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게재 전부터 원고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김○○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차○○의 제보를 기반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갑 제6호증의 1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6. 2. 초순경 일부 언론에 원고의 카지노 보안감시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최종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금품로비 의혹이 보도되자, 원고는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차○○는 같은 달 17. 원고 회사를 사직하고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다만, 차○○는 관련업체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고 그 중 3장을 복사한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김○○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차○○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여 취재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 김○○는 돈을 전달하였다는 무속인에 대하여는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차○○의 제보 이외에 별다른 근거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피고 김○○는 핵심취재인인 차○○가 2008. 2. 28. 인터뷰 첫날에는 박○○ 사장이 해먹은 돈이 약 250억 원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2008. 4. 14.에는 카지노 개설비용으로 실제 투입액의 3배나 되는 2,850억 원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중 20~30% 상당액인 600억 원이나 된다고 진술을 바꾸었음에도 그 전제가 되는 카지노 개설비용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차○○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취재자료(을 제6호증)에는 ‘매출누락액 포함하여 1,000억 원’이라는 내용은 들어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취재자료(을 제7호증의 1)에서는 총 매출 의혹의 근거로 2007년에 원고의 카지노 3곳의 매출액 합계가 워커히 카지노의 매출액을 겨우 따돌린 사정을 들고 있을 뿐인데, 개설한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 년간 뿌리를 내려 온 동종업계 1위 업체의 매출액을 앞질렀다는 것 자체가 기대치 않은 경영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당초 한국관광공사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카지노를 개설하고자 시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과거 한국관광공사가 카지노를 개설하였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음을 들어 사기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의견들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서는 핵심취재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기업가 출신의 한 무속인이 있어요. 일단 카지노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그 무속인을 통해 핵심인물인 P씨에게 전해집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수입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카지노에서 돈세탁을 위하여 무속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핵심취재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인용하여 “그때부터 셋업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람들로 채워서 본격적으로 해먹겠다는 계획이었죠. 핵심인물이었던 P씨를 선임하는 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정치권에 돈을 뿌리는 작업은 P씨가 직접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에도 굳이 비자금에 무속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원고의 전산시스템이 도스 체제로 되어 있는지 여부나 내국인의 입장 여부 등은 원고 등으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월간지와 같이 신속성 요청이 될 한 경우 더욱 충실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감사원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리에 대한 고발의 필요성도 별로 없었으며, 그 조사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이를 보도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액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 내용인 ‘원고가 예산을 부풀려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및 사회에 커다란 파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내용이고, 또한 피고들이 실제적인 진실을 규명할 의지와 노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셋업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람들로 채워서 본격적으로 해먹겠다는 계획이었죠. 핵심인물이었던 P씨를 선임하는 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P씨의 예전 경력을 보면 대부분 조직 구성 초기에 들어가 비리를 저지른 흔적이 보인다”, “방법은 뻔하죠.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한 후 거액의 커미션을 받고 미리 짜놓은 업체에 넘기는 거죠”, “당시 자체 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40억 원 주고 사온 겁니다. 그것도 중고로. 20년 전 도스 시스템이라 요즘 컴퓨터에는 작동도 안 되는 걸 해놓고 큰소리 치고 있더군요”, “A라는 물건을 써놓고, 싸구려 B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검사하면 다

걸리니까”, “정치권에 돈을 뿌리는 작업은 P씨가 직접 합니다. 국회의원 K씨는 P씨가 왔다 하면 국회공관에서 맨발로 뛰어나온대요. 돈을 몇 억 원씩 가져오는데, 안 그러겠어요?”, “밸런스라는게 있습니다. 카지노 전체에서 얼마를 벌고 잃었느냐에 대해 2시간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해요. 전 세계 3,000여개 카지노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와 세븐럭.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두 곳이죠. 이걸 비리가 있다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라는 등의 근거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악의적이기까지 한 취재원의 진술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열하여 원고가 커미션 등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핵심적인 기사 내용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지위와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기사에 원고 측의 반론을 끝 부분에 함께 게재한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비리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나름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박○○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월간조선사가 2008. 6. 5. 박○○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고, 그 후 2008년 7월호 월간조선 172~175면에 『검찰 수사받는 박○○ 전 GKL 사장 “1원 한 푼 비리 저지른 적 없고 정치권에 개입한 적 없다”』라는 제목 아래 박○○의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반론을 상세하게 보도한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08. 5.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8년 5월호에 <추적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구 여권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을 설립하면서 전산시스템에 들어간 예산이 약 130억 원이나, 실제로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중고 시스템을 40억 원 주고 사온 것으로 그나마 도스(DOS)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요즘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서버일런스(보안)시스템 역시 약 224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100억 원 내외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다음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형성한 비자금을 한 번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합계 약 600억 원을 국회의원 K씨, Y씨, L씨 등 국회와 정부 측 인

사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 신설된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립허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다. ‘밸런스’라고 카지노 전체에서 얼마를 벌고 잃었느냐에 대해 2시간마다 보고하여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강원랜드와 함께 세븐백만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설립 이후 매출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남 영업장으로 한무컨벤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동 코엑스 내 오크우드호텔 2층을 선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권 실세였던 A 씨와 L 씨 등의 고위급 인사가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과 부산 등 3곳에 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총 878억여 원인데, 그 중 전산시스템 관련 예산은 132억 원이고, 그 가운데 약 90억 원은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에 사용되었으며, 40억 원이 전산시스템 E-SUIT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외국에서 중고의 도스 운영체제로 된 전산시스템을 40억 원을 주고 도입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서는 모든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전산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손익이 모니터링 되므로 일별 및 월별 매출보고 이외에 별도로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매출액의 누락이나 횡령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지노 이용자 중 국내 거주 교포(외국 영주권자 포함)는 전체의 약 14%에 불과합니다. 한편, 한무컨벤션 주식회사의 코엑스 내 오크우드호텔 별관 컨벤션 건물이 서울 강남 영업장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권 실세가 관여하였다는 점도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끝 -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7

원고들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의 만평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8가단108815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년 7월 16일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소속 기자 2명이 주식회사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8년 11월 18일자 미디어오늘 인터넷뉴스의 '만평'란에 『만평의 상단에는 '중앙일보'라는 신문지면에 '원유보다 싼 휘발유... 정유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장면과 함께 만평의 하단에는 '누구에게 돈을 던지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편집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제목 단 편집기자'라고 쓴 소제목, 취재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기사 쓴 취재기자'라는 쓴 소제목』을 담고 있는 만평을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만평에 표현된 원고 심○○, 이○○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만평은 영향력이 많은 중앙일간지인 원고 회사 및 그 기자들인 원고 심○○, 이○○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에 관한 기사를 비판적 태도없이 보도하는 것을 만평작가로서 풍자적 외피와 은유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 심○○, 이○○이 취재대상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사건 만평으로 사용한 그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1일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2심 확정)

판결문

사 건 : 2008가단108815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심○○

3. 이○○

피 고 :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이□□

변 론 종 결 : 2009. 5. 28.

판 결 선 고 : 2009. 7. 16.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중앙일보’ 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심○○은 원고 회사의 산업부 기자, 원고 이○○은 원고 회사의 편집부 기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미디어오늘 인터넷뉴스(이하 ‘이 사건 인터넷뉴스’라 한다)를 보도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는 피고 회사의 만평 담당 팀장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만평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08. 11. 18. 이 사건 인터넷뉴스의 ‘만평’란에 피고 이□□가 기고한 『만평의 상단에는 ‘중앙일보’라는 신문지면에 ‘원유보다 싼 휘발유... 정유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장면과 함께 만평의 하단에는 ‘누구에게 돈을 던지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편집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제목 단 편집기자’라고 쓴 소제목, 취재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기사 쓴 취재기자’라는 쓴 소제목』을 담고 있는 별지1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만평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기사

원고 회사는 2008. 11. 17. ‘원유보다 싼 휘발유 언제까지..정유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

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의 취재기자가 원고 심○○이고, 편집기자가 원고 이○○이다.

라. 이 사건 만평의 게재를 전후한 시기에 원고 심○○, 이○○이 정유사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 보도도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피고들은 원고 심○○, 이○○이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기타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만평으로 원고 회사의 취재기자인 원고 심○○와 편집기자인 원고 이○○이 취재대상 정유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게 해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원고 심○○, 이○○은 각 10년 이상의 기자경력을 가진 자로서, 원고 회사는 ‘중앙일보’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만평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만평의 작성 및 게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휘발유가격과 원유가격이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계산에 불과하고 이러한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원고들은 정유사들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비판적 접근 없이 이 사건 기사로 보도하였다.

(2) 이 사건 만평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태를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심○○, 이○○이 취재대상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만평이 특정인인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만평이 게재된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심○○, 이○○이 취재대상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보도도 없어서 피고 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심○○, 이○○이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만평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하루 뒤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 이□□ 입장에서 원고 심○○, 이○○이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 사건 만평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원고들이 정유사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적 태도 없이 이 사건 기사로 보도한 행태를 우려하여 그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2008. 11. 19. 이 사건 인터넷뉴스에 ‘정유사의 눈물? 중앙일보의 허풍’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등에 부가하여 이 사건 만평이 게재된 시점에서의 만평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당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원고 심○○, 이○○의 각 기자로서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심○○, 이○○이 오랫동안 기자경력을 가지는 동안 기사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단 한차례의 이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만평에 표현된 원고 심○○, 이○○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사상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만평은 영향력이 많은 중앙일간지인 원고 회사 및 그 기자들인 원고 심○○, 이○○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에 관한 기사를 비판적 태도없이 보도하는 것을 만평작가로서 풍자적

외피와 은유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 심○○, 이○○이 취재대상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점을 전제로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이□□는 원고들이 작성 및 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원고 심○○, 이○○이 기사的大가로 정유사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여 돈을 입에 물고 있는 것으로 결부시켜 이를 희화하고 풍자하였는데, 그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가 만평작가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있을 수도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만평으로 사용한 그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사내용(만평)



〈별지 2〉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18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그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사를 얹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 보도시 단지 혐의임을 밝히고 관련자의 반론을 게재한 아파트관리신문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2560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09년 8월 19일 조○○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 “피고 아파트관리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7년 10월 31일 『동탄신도시 인테리어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피고 아파트관리신문은 2007년 11월 12일 『인테리어업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혐의로 관리소장 3명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들이 인테리어업자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에 관해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원고에게 공갈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사예치금을 공사 완료 후 약속대로 환불하는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역대의 돈을 뜯어냈다는 취지의 기사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진실성을 부인하였다. 또한, “기자가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시공회사,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하였더라면 경찰에서 입건한 사건의 실체나 의미, 이와 관련된 동종업계의 관행 내지 실태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 조선일보는 당시 경찰 수사만 종결된 상태이었음에도 제목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자릿세’ 갈취』라고 표현하여 단정적으로 공갈 범행이 있었음을 나타내었고, 기사 첫머리에서도 ‘동탄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각종 명목으로 역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고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부인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신문사와 관련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혐의임을 분명히 하였고, 연이어 상당한 분량으로 원고와 같은 주택관리사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지회의 반론을 게재하여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찰에서 부여한 혐의와 함께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의 원고 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5월 26일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7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90, 19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추후보도청구는 각 조정성립되고 손해배상청구는 각 취하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92560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 ○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

변 론 종 결 : 2009. 7. 15.

판 결 선 고 : 2009. 8. 19.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09.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는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07. 10.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는 2007. 1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화성시 ○○동 ○○○ 소재 ○○신도시 내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사(이하 ‘피고 아파트관리신문사’라고 한다)는 주간지인 아파트관리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7. 10. 31.자 조선일보에 <동탄신도시 인테리어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게 각종 명목으

로 억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입주 아파트에서 관촉행사를 하는 인테리어업체 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조모(60)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 3명 … (중략) … 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인테리어 업자 신모(여, 44)씨 등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6,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다. 피고 아파트관리신문사는 2007. 11. 12.자 아파트관리신문에 <인테리어업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혐의로 관리소장 3명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인테리어업자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관리소장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최근 입주 중인 동탄지역 S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막을 쳐 놓고 관촉행사를 하는 업체나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행사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관리·경비직원을 동원해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찾아가 행정기관 미신고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83개 업체로부터 6천8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해당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해당 관리소장이 쓰레기 처리 등에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인테리어업체 등에서 비용을 징수한 후 통장에 입금, 정산했거나 정산할 예정임에도 이를 마치 업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것처럼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회는 이어 회원들에게 영수증 발부 등 절차 준수를 통해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라.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백○○는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비용,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등을 위한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대출입문 열쇠를 주지 않거나 경비실 입구부터 막겠다고 겁을 주어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68,175,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입건되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신청되었으나, 수원지방법검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등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조사시 나타나지 않았고, 공사예치금을 공사 완료 후 약속대로 환불하는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 장

가. 원 고

원고가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우선,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으로 특정된 바가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바와 같은 갈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이른바 ‘자릿세’를 받고 있는 실태를 일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도할 공익성도 충분히 있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頭)문자나 영문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0213 판결 등 참조).

제1기사의 경우 원고를 ‘조모(60)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씨’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직업이 특정 지역 내 특정 이니셜로 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관리소장이 피고 조선일보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삼부르네상스, 삼성래미안, 신일유토빌, 서해그랑블, 신도브래뉴, 신일해피트리, 쌍용예가 등 7명에 불과함에도 그의 나이와 성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물론 해당 아파트 938세대의 입주자들도 기사에서 거론된 문제의 관리소장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2기사의 경우에는 ‘동탄지역 S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원고의 직업이 특정 지역 내 특정 이니셜로 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관리소장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록 원고의 추가적인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언론매체에 여러 차례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관련 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물론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도 기사에서 거론된 문제의 관리소장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성립

제1기사는 그 제목에 <동탄신도시 인테리어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소장들이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역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마치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 같은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바,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은 명백하다.

제2기사는 비록 제목이나 본문에 갈취 혐의로 관리소장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원고 등이 갈취행위를 한 것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갈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익성

그 동안 신축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테리어업체 등에 단순 관리 차원 이상의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에는 입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널리 알려 관리사무소 측의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성

㉠ 제1기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 측의 요구로 인테리어업체 약 80여 곳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파손에 대비한 예치금으로 합계 약 8,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설 주식회사 측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재료나 공사쓰레기 운반 및 시공 등의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데 총당한 다음 남은 돈을 다시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아울러 원고는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공사쓰레기 등의 처리비 명목으로 업체당 수십만 원씩, 아파트 단지 내에 행사용 천막을 설치하고 자사 제품 등을 홍보하는 신문사 지국, 이동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업체당 100~200만 원씩 합계 65,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솔빛마을 ○○○○ 관리사무소 조○○’ 명의로 개설되어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한 다음 이로써 단지 내에 방지되는 공사쓰레기 등을 처리하거나 기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 그밖에 원고는 2007. 10. 17. 주식회사 새벽유통과 사이에 위 회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향후 2년간 주 1회 ‘농수산물 알뜰시장’을 개설하는 대신 위 회사로부터 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 개장 전일까지 1,500만 원, 나머지 1,200만 원은 계약기간 동안 월 50만 원씩 나

누어 교부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마찬가지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자, ○○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달 19. 주식회사 진흥관리시스템에 위 알뜰시장 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들과 물의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소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달 말경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들 업체들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돈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차지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공용 계좌에 입금시켜 입주 초기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장차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 2, 3 달 후에야 관리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사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아파트에서도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거두었고, 나아가 ○○건설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진흥관리시스템에서도 농수산물 알뜰시장 개설계약과 일부 입주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만 문제로 삼았을 뿐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거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검찰이 원고에게 공갈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사에치금을 공사 완료 후 약속대로 환불하는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인테리어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는 취지의 제1기사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㉔ 제2기사

제2기사는 제목을 ‘인테리어업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혐의로 관리소장 3명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기재하였고, 기사 첫머리에서도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인테리어업자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관리소장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다. 이어 제2기사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혐의임을 분명히 하였고, 연이어 상당한 분량으로 원고와 같은 주택관리사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지회의 반론을 게재하여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찰에서 부여한 혐의와 함께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의 원고 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2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원고가 경찰에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실에 부합한다.

(3) 상당성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1기사를 작성한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 취재기자는 당시 화성경찰서 강력팀장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경찰이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사자인 원고 등에게 확인하거나 달리 그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찰의 인터뷰 내용과 앞서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만을 토대로 제1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자가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시공회사,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하였더라면 경찰에서 입건한 사건의 실체나 의미, 이와 관련된 동종업계의 관행 내지 실태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 조선일보사는 당시 경찰 수사만 종결된 상태이었음에도 제목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자릿세’ 갈취”라고 표현하여 단정적으로 공갈 범행이 있었음을 나타내었고, 기사 첫머리에서도 ‘동탄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각종 명목으로 역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고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조선일보사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조선일보사로서는 제1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조선일보사는 단순히 원고 등의 혐의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만을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그 진위 여부를 밝힐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의 경력, 나이 및 지위, 위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가 경찰에서 갈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신청되기까지 한 것은 사실인 점,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2008. 7. 22. 조선일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조선일보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10. 31.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아파트관리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19

사건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이나 진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여러 번에 걸쳐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8나9190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8월 19일 김○○ 외 3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그 대표이사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 문화방송은 추후보도를 방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천만원, 원고 조○○, 김□□, 김◇◇에게 각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5년 12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서 불법카드깡 카메라 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강압조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5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강압조사 검찰 전면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매장 불법 카드깡 실태 제보자 강압수사 경관 기소』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김○○가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와 그 처, 자녀들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는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 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김○○가 그 진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진○○이나 이○○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진○○, 이○○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김○○나 수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수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진○○, 이○○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여러 번에 걸쳐

이를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7~314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8나91908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김 ○ ○

2. 조 ○ ○

3. 김 □ □

4. 김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최 문 순

3. 이 □ □

4. 박 ○ ○

5. 이 ◇ ◇

6. 장 ○ ○

7. 김 △ △

8. 박 □ □

9. 김 ◎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7가합90956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5. 13.

판 결 선 고 : 2009. 8. 19.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억 원, 원고 조○○에게 1억 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의 시작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요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매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5,000만 원, 원고 조○○, 김□□, 김◇◇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의 시작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요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매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는 1980. 4. 1.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와 수사3계 경제1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조○○는 위 김○○의 처, 원고 김□□, 김◇◇는 위 김○○의 딸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최문순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보도가 방송될 당시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이□□은 이 사건 각 보도를 담당한

취재부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직접 취재한 기자들이다.

(2) 피고 문화방송은 2005. 10. 23. 저녁 9시 뉴스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울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종로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왔고,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카드깡 사실을 잘 아는 등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 김○○로 하여금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무고성 투서 등을 한 것이므로 그 배후를 밝히라면서 수사를 명하였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

(1) 한편,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보도를 직접 취재한 피고 박○○, 이◇◇, 김△△, 박□□ 및 피고 김◎◎의 취재를 토대로 2005. 12. 14.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서 불법카드깡 카메라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감압조사 물의”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이하 ‘진○○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날 오전 7:17경 및 9:39경 및 2005. 12. 20. 21:40경에도 위 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경찰관인 김모씨가 불법카드깡 보도 사건을 제보한 직원을 파악하면서 진○○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심한 협박을 하고 머리를 손으로 치는가 하면 성추행까지 하였다는 것이었다.

(2) 피고 문화방송은 피고 장○○이 취재한 기사를 토대로 2005. 12. 15.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감압조사 검찰 전면수사”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보도문(이하 ‘이○○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찰관인 김모씨가 이○○를 사기 혐의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은 불법카드깡 사실을 제보하였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였으며, 이○○의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해가며 다그치고, 급기야 이○○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3) 피고 문화방송은 2006. 2. 17.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매장 불법카드깡 실태 제보자 감압수사 경관 기소”라는 제목 하에 별지5 기재 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4) 피고 문화방송은 진○○ 관련 보도를 하기 전인 2005. 11. 22. 및 2005. 12. 13.에 진○○을 취재하였고, 위 22일에는 진○○이 성추행 부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타 신문사에서 진○○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13일에 성추행 부분도 보도하도록 진○○을 설득하여 인터뷰 후 바로 다음날 그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5. 12. 15. 19:00경 이○○를 취재한 후 같은 날 21:30경 이○○ 관련 보도를 위와 같이 방송하였다.

(5) 진○○이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고소장에는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05. 11. 16. 남편인 정○○과 함께 서울시경 경무과장실에서 원고 김○○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가 2005. 12. 5.경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도 원고 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6) 검찰은 2006. 2. 16. 원고 김○○를 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혐의로 서울중앙법원 2006고합13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1), (2)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7) 위 법원은 2006. 10. 26. 원고 김○○의 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진○○에 대한 독직가혹행위 및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은 2007. 8. 30. 위 유죄의 점 중 원고 김○○가 진○○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 김○○만이 상고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 장

가. 원고들

원고 김○○는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하여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폭언,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마치 원고 김○○가 이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폭언,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들은 원고 김○○는 물론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별지 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을 보면 행위의 주체로서 ‘경찰청’ 또는 ‘경찰관’, ‘수사관’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수사 담당자가 원고 김○○임을 제3자가 알 수 있을만한 어떠한 표현도 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하고, 설령 그 보도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의 이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갑 제8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 이전에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에서의 카드깡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고, 경찰이 위 카드깡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원고 김○○가 주도적으로 위 카드깡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적어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도에 언급된 ‘경찰’이나 ‘수사관’이 원고 김○○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 여부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는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1)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 간부인 원고 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성 인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적시된 원고 김○○의 진○○, 이○○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 및 폭언, 폭행, 상해 관련 부분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무죄로 확정되었고,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15 내지 19, 20 내지 24, 25, 26 내지 29, 30, 31, 32, 33 내지 3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상당성 인정여부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취재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 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김○○가 그 진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진○○이나 이○○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 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진○○, 이○○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김○○나 수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수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진○○, 이○○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여러 번에 걸쳐 이를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

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액의 결정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공무원인 원고 김○○의 명예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그 가족들인 다른 원고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하여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도가 피고 문화방송의 9시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를 단순히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 지칭한 점, 원고 김○○도 일부 공무집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사건 각 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이 사건 각 보도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인 2005. 1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추후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그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의 상단에,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본문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만일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김○○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추후보도문

- 제 목 :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의 성추행 및 강압조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 본 문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지난 2005. 12.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2006. 2. 17.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가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위 보도와 달리 김모 경위는 수사과정에서 여경을 동행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2〉 추후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5〉 방송내용 생략

지울 스님의 농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었고, 공정률이 5%에 불과하며, 2조 5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8가합3621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09년 9월 2일 조○○(법명 : 지울)이 주식회사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원고에게 1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5년 2월 4일자 조선일보 A1면에 『지울스님 단식 풀었다 정부, 천성산 석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수용 공사중단 불가피』 등 15차례에 걸쳐 지하수 유출로 인한 습지 등 생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한 지울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2005년 12월 1일경 원효터널의 공정률이 5%에 불과하였고,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2조 5,000여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200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노선재검토 결과 기존 노선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03. 11.경 공사가 시작된 이래 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2004. 8. 26.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2005.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2차에 걸쳐 모두 6개월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2005. 8. 26. 현재 공정률은 원효터널이 존재하는 13-3 및 13-4 공구 중 13-3공구의 경우 계획이 13.04%였으나 실적은 이를 상회하는 13.10%였고, 13-4공구는 계획이 18.86%, 실적이 17.35%이었으며, 2006. 12. 30.경 원효터널은 총 13.3km 가운데 9.6km를 뚫어 굴착률 72%를 보였고, 2007. 9.경이면 터널 전체가 관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굴착 완료시기인 2008. 4.보다 7개월이나 앞서가고 있으며, 2009. 4. 25. 현재 13-3공구의 계획공정률은 99.99%, 실적공정률은 97.77%, 13-4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00%, 실적공정률은 100%였다”면서, “원효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약 145억 원이다”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법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원고는 천성산 터널공사와 같은 사건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 생태환경을 무시한 채 인간 중심, 인간 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경종을 울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최소의 화폐단위인 ‘10원’에 의미를 부여하여 같은 액수의 위자료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가합36218 정정보도청구소송등

원 고 : 조 ○ ○ (법명 : 지울)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

변 론 종 결 : 2009. 8. 12.

판 결 선 고 : 2009. 9. 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포인트 크기의 명조체로, 본문은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이 판결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2면에 【별지2】 기재 상단의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본문은 기존의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로 18회 게재하고, 【별지2】 기재 하단의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본문은 기존의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로 10회 게재하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후 조선일보의 최초 발행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승려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정부는 서울~부산간 418.7km에 사업기간 1992. 6.부터 2010. 12.까지, 총사업비 19조 9,227억 원으로 정하여 고속철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결정된 노선에 따르면 원호터널이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원호터널 공사로 인하여 고산습지가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노선의 재검토 및 환경영향 재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03. 2.경부터 2005. 2.경까지 총 241일에 걸쳐 단식농성을 하였고, 특히 마지막에는 100일간 연속으로 단식농성을 하여 전국가적인 관심을 모았다.

라. 원호터널은 노선이 확정된 후 2003.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소송의 항소심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위한 공사 중단 합의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다.

마. 피고는 조선일보에 2005. 2. 4.경부터 아래와 같이 천성산 터널공사가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1) 피고는 2005. 2. 4.자 조선일보 A1면에 <지울스님 단식 풀었다 정부, 천성산 석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수용 공사중단 불가피>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같은 날 조선일보 A3면에 <천성산 공사중단 불가피, 극적타결엔 안도... 비용손실 등 부담>이라는 큰 제목, <목숨 건 환경운동에 어쩔 수 없는 양보, 대형 국책공사 때마다 선례 될 수도>라는 작은 제목 아래 <100일 만에 지울 스님의 단식 문제가 해결됐다. 지울 스님이 경남 양산시 천성산 관통터널 발파 공사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미뤄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터널 공사는 공동조사단이 요구할 경우 즉각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공사는 3개월 후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10년 말에야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추산이다. 2003년 2월 1차 단식을 벌였던 지울 스님은 정부가 그해 9월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하기로 결정하자 울산지법에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뒤 2차 단식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해 11월 천성산 구간 공사를 시작했다. 1년 5개월 늦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9개월 만인 2004년 8월 26일 다시 중단됐다. 지울 스님이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지법이 공단측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스님이 항고와 함께 3차 단식(2004년 6~8월)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고법이 지울 스님측의 항고를 기각해 공사는 중단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후 천성산 관통터널 북쪽 입구에서 공사를 시작, 3일 현재 195m쯤 굴착이 이뤄진 상태다. 공사 착수시점부터 따져보면 2년 7개월 중 1년 10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건설회사측은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5억~10억 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피고는 2005. 2. 5.자 조선일보 A1면에 <새만금 중단, 경부고속철 지연, 원전센터 취소 국책사업 줄줄이 표류한다>는 제목 아래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사업도 지울 스님 등이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 등을 주장하며 단식과 소송 등의 방법으로 반발,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중략)...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이미 1년을 허비,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밝혔다. 여기에 또다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5,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를,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에 <【흔들리는 국책사업】 ② 천성산 터널, 최소 7개월 지연, 피해 수 천억>이라는 제목 아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 구간인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3일 지율스님의 단식 중단을 조건으로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 기간 중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2002년 6월 2단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세 차례 중단됐다. 우선 2003년 3월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부고속철 노선 재검토(2003.3.~8.)를 하는 바람에 모든 공정이 중단됐다. 지율스님의 2~3차 단식이 계속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이 또 다시 허비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일까지 2년 7개월의 공사 기간 중 총 1년여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2조 5,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평가했다. 총 연장 13.28km인 천성산 터널은 4일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공사감리단장인 (주)유신코퍼레이션의 OOO 이사는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최소한 5,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측은 공사 중단기간이 2~3개월에 그치더라도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에 <【사설】 지율스님 단식 중단 이후를 생각한다>는 제목 아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해온 지율스님이 100일 만에 단식을 풀었다. 정부가 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결과다. 당장 한 차례 환경영향 조사를 더 하게 됨으로써 터널 공사는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 공사 시작 2년7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1년을 허비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이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별지7】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05. 10. 4.자 조선일보 A30면에 <【류근일 칼럼】 20·30대 ‘자유세대’에 달렸다>는 제목으로 <과거 청산, 빈부격차 해소, 환경보존, 참교육, 북한주민 돕기... 누가 이런 말들 자체를 나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과거 청산을 악용한 표적 숙청, 성장을 무시한 분배, ‘단식’에 휘둘려 2조 6,000억 원을 날린 천성산 터널 백지화....(중략)...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라는 내용의 【별지8】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4) 피고는 2005. 12. 1.자 조선일보 A16면에 <【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 “세번 싼만큼 부지런히 뚫어야죠”라는 큰 제목, <잇단 중단으로 1년 허비, 공정 5% 불과, “국책사업 차질 빚어 국가경제 손해 커”>라는 작은 제목 아래 <현재 원효터널은 총 길이 13.28km구간 가운데 693m가량 공사가 진행돼 공정률 5%를 밀돌고 있다.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는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6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세 차례나 중단됐다. 2003년 3월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부고속철 노선 재검토(2003.3.~8.)를 하는 바람에 모든 공정이 중단됐다. 습지와 도룡뇽 생태파괴를 우려한 지율스님의 단식과 환경영향공동조사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또다시 6개월 이상을 보냈다>는 내용의 【별지9】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5) 피고는 2006. 5. 19.자 조선일보 A6면에 <“국책사업 지연, 외부세력 개입 때문 임기 중 중요결정 피하는 관료도 문제” 이회범 무역협회장 일침>이라는 제목 아래 <이 회장은 또 “부산 천성산 터널도 (지율)스

님 때문에 수조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별지10】**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피고는 2006. 6. 3.자 조선일보 A3면에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재개’ 결정 2조 날린 ‘도롱뇽 소송’ 3년만에 마침표>라는 제목 아래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엄청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조 5,16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천성산 공사는 공사 시작 이후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6개월, 2004년 지율 스님 현장 점거 때 3개월, 항고 심 선고 이전 3개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가 벌어진 3개월 등 15개월 이상 중단됐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도 수백억~2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1년여의 공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 5,161억 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는 내용의 **【별지11】** 기재 기사를, 같은 날 조선일보 A31면에 <**【사설】** ‘천성산’ 공사 중단 2조 5,000억 피해 누구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환경단체는 터널공사가 수백억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3년 지질공학회 정밀조사나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선 모두 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건교부장관은 작년 2월 국회에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토대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금까지 네 차례 15개월간 중단된 사이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면 눈이 아득해질 지경이다>라는 내용의 **【별지12】**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7) 피고는 2006. 12. 30.자 조선일보 A12면에 <공사 재개 1년…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현장 르포 2002년 착공 후 3차례나 중단 ‘우여곡절’>이라는 제목 아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는 2002년 6월 착공 이후 세 차례 중단됐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6개월간 모든 공정이 중단됐다. 또 습지생태 파괴와 도롱뇽 피해를 주장하는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과 환경영향 공동조사 등으로 2004년과 2005년 각 3개월씩 다시 일손을 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 5,161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의 **【별지1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8) 피고는 2007. 2. 24. 조선일보 A4면에 <**【노무현 정부 4년 평가】** 공동조사 | 조선일보 · ‘정책과 리더십 포럼’ · 한국갤럽>이라는 큰 제목, <정치, 분권화 · 개방화… 무질서한 ‘정치 실험’>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천성산 터널공사를 포함한 5대 국책사업이 2~3년씩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비용만 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별지1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9) 피고는 2007. 3. 5.자 조선일보 A39면에 <**【사설】** 세금 함부로 써서 세금 내기 싫다는 국민>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한마디에 천성산 터널 같은 국책사업이 1~2년씩 늦어지면서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게 이 정부>라는 내용의 **【별지1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10) 피고는 2007. 3. 12.자 조선일보 A39면에 <**【시론】** ‘빚만 남긴 정부’ 4년>이라는 제목 아래 <‘도롱뇽 소송’으로도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중단도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세 차례 공사 중단 지시로 발생한 손실이 무려 2조 5000억 원이다>라는 내용의 **【별지1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11) 피고는 2008. 3. 6.자 조선일보 A5면에 <【한국 업그레이드】 【2】 원칙 지키는 게 경쟁력이다>라는 큰 제목, <첫째, ‘떼쓰면 된다’ 이제 그만 “법·질서 OECD 평균만 되면 1% 더 경제성장”>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초래된 경제 손실이 4조 1,793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내용의 【별지17】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3, 17호증, 을 제3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단기간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공정률을 실제보다 축소하였으며, 손실액에 대하여 2조 5,000억 원이라는 등의 현실성이 없는 가공(架空)의 숫자를 제시하여 터무니없이 과장을 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이 있었음에도 마치 지하수 유출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으므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과 같이 정정보도를 하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라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소재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위 각 기사 게재 당시 그 기사 게재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기사의 범위

원고는 2005. 2. 4.자 <흔들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제목의 【별지18】 기재 기사, 같은 날 <새만금 중단·경부고속철 지연 등 국책사업 줄줄이 표류>라는 큰 제목, <환경단체·주민 반발로… 수조원 낭비 법원 “새만금사업 계획 변경하라”>라는 작은 제목의 【별지19】 기재 기사, 2005. 2. 5.자 <“공사 중단될라…” 작업 비상 “국가 大計도 소중한데…”>라는 제목의 【별지20】 기재 기사, 2005. 2. 7.자 <이강철 수석 “지을

스님 단식으로 세금납비”>라는 제목의 【별지21】 기재 기사도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각 기사는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의 인터넷신문에만 게재되었을 뿐 지면신문인 피고의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기사를 피고가 게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3, 5, 18 내지 2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ㄱ)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원호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200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노선재검토 결과 기존 노선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03. 11.경 공사가 시작된 이래 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2004. 8. 26.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2005.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2차에 걸쳐 모두 6개월이었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후자의 기간 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파공사만 중지하였을 뿐 노반공사를 비롯한 터널 외부공사는 그대로 진행된 관계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기가 지연되지는 않았다.

(ㄴ) 2005. 8. 26. 현재 공정률은 원호터널이 존재하는 13-3 및 13-4 공구 중 13-3공구의 경우 계획이 13.04%였으나 실적은 이를 상회하는 13.10%였고, 13-4공구는 계획이 18.86%, 실적이 17.35%이었으며, 2006. 12. 30.경 원호터널은 총 13.3km 가운데 9.6km를 뚫어 굴착률 72%를 보였고, 2007. 9.경이면 터널 전체가 관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굴착 완료시기인 2008. 4.보다 7개월이나 앞서가고 있으며, 2009. 4. 25. 현재 13-3공구의 계획공정률은 99.99%, 실적공정률은 97.77%, 13-4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00%, 실적공정률은 100%였다.

(ㄷ) 원호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약 145억 원이다.

(ㄹ)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8. 7. 15. 발간된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사업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경부고속철도의 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 개통이 1년 지연될 경우 경제적 편익손실비용을 1조 9,719억 원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다른 교통수단 내지 경로에 대한 교통수요 때문에 공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 1조 1,120억 원과 여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8,599억 원 등이다.

(ㅁ) 경부고속철도 13-3공구 원호터널에서의 2006. 10.부터 12.까지 1일 평균 지하수 유출량은 10월의 경우 약 524톤, 11월의 경우 약 575톤, 12월의 경우 약 511톤이다.

(ㄷ) 판 단

(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노선재검토로 인한 공사 중단 사실을 언급함이 없이 원고의 단식이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원호터널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었다는 【별지4】 및 【별지5】 기재 기사는 진실에 반한다.

(㉕) 2005. 12. 1.경 원호터널의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는 【별지9】 기재 기사는 2005. 2. 4. 현재 공정률이 5%라는 【별지6】 기재 기사와 비교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도 진실에 반한다.

(㉖) 나아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과 관련하여 일부 기사에서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별지6】기사), 이와는 달리 상당수의 기사에서는 <건설회사 측은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5억~10억 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나(【별지4】기사),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도 이미 1년을 허비하여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밝혔고, 여기에 또다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5,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거나(【별지5】기사), <이에 따른 손실액이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 누적 손실액 2조 5,000억 원을 1만 4,000명의 소년소녀 가장, 142만 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4만 명의 독거노인에게 돌린다면 이들의 아침 밥상에 얼마나 자주 따뜻한 밥이 올라올 수 있겠는가>라든가(【별지7】기사), <세금 함부로 써서 세금 내기 싫다는 국민>이라는 제목 아래 <천성산 터널 같은 국책사업이 1~2년 씩 늦어지면서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게 이 정부다. ...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주이다. 대한민국 주주 68%가 지금 “내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고 항의하고 있다>라든가(【별지15】기사), <‘빚만 남긴 정부’ 4년>이라는 제목 아래 <‘도롱뇽 소송’으로도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중단도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세 차례 공사 중단 지시로 발생한 손실이 무려 2조 5,000억 원이다. ... 국민들이 땀과 눈물로 번 돈 가운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뜰히 쓰라고 준 금쪽같은 세금을 이렇게 물 쓰듯 써버린 정부를 보며 금년 대선을 계기로 제발 국민들의 세금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국민 무서운 것도 알며, 국민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작고 인간적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고대한다>(【별지16】기사)라는 등으로 2조 5,000억 원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시행 내지 시공 주체가 입게 된 세금이나 공사비 등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작성되었다. 이는 원호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약 145억 원이라는 앞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고, 달리 위 각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2조 내지 2조 5,000억 원이라는 기사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경부고속철도의 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경우 공로에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과 여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평가한 예상수치라는 점에서 이로써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㉗)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천성산 원호터널 굴착공사 현장에서 상당량의 지하수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사는 지하수 유출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을 스님과 환경단체들은

13km의 터널을 뚫게 되면 천성산 꼭대기에 있는 20여개의 습지들이 말라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조사에서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든가(【별지7】기사), <환경단체는 터널공사가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3년 지질공학회 정밀조사나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서는 모두 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가장 크다는 무제치늪만 하더라도 터널로부터 수직 300m, 수평으로 900m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별지12】기사)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터널공사로 인하여 천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습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관련 학회나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고, 천성산 원호 터널 굴착공사 현장에서 상당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나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천성산에 고속철도 터널을 굴착할 경우 천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무제치늪 등의 습지가 말라 없어질 것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소송과 단식 등으로 급기야 공사를 중단시켜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환경보호운동가들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책사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과장하여 이를 중단시킴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쉽사리 인정된다.

㉡ 진실성 내지 상당성

이 사건 기사 중 공사중단기간, 공정을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 관한 일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그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ㄱ) 먼저 공사중단기간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의 100일에 걸친 단식이 끝난 직후 2005. 2. 4. 보도된 **【별지3】** 기사 등에서와 같이 피고는 노선재검토를 위하여 원호터널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다가 2003. 11.경 그 공사가 시작된 후 실제로 원고의 단식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2004. 8. 26.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및 2005.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등 2차에 걸쳐 도합 6개월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4】** 및 **【별지5】** 기사에서와 같이 원고의 단식과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다음으로 공정율의 경우 이 사건 기사에 의하더라도 2005. 2. 4. 현재 공정율이나 2005. 12. 1. 현재 공정률이 모두 5%라는 **【별지6】** 기사 및 **【별지9】** 기사는 그 사이에 있는 일부 공사중단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한국철도시설공사 등을 통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공정율에 관한 정보 내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정율에 관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ㄷ) 이 사건 기사 중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나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손실액이 연간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별지4】** 내지 **【별지7】**, **【별지15】**, **【별지16】**의 기사의 경우 피고는 나름대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연간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손실액은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개통이 지연될 경우 공로에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과 여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예상수치일 뿐 위 각 기사의 취지와 같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이나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비 부담 등의 직접적인 손실액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고,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약 145억 원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피고로서는 위 손실액에 관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공익성과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으나, 진실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조선일보의 여러 면에 걸쳐 여러 차례 보도된 점, 원고의 지위, 경력 및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법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원고는 천성산 터널공사와 같은 사건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 생태환경을 무시한 채 인간 중심, 인간 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경종을 울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최소의 화폐단위인 ‘10원’에 의미를 부여하여 같은 액수의 위자료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0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간접강제로서 앞서 위자료 청구에서와 같은 이유로 1일 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피고의 정정보도의무 이행을 강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간접강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간접강제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본 문 : 본지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습지 등 생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한 지울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2005. 12. 1.경 원효터널의 공정률이 5%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2조 5,000여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울 스님의 단식 농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액은 약 145억 원이며, 2005. 8. 26. 현재 원효터널이 존재하는 13-3 및 13-4 공구 중 13-3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3.04%, 실적공정률은 13.10%, 13-4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8.86%, 실적공정률은 17.35%였고, 2009. 4. 25. 현재 13-3공구의 계획공정률은 99.99%, 실적공정률은 97.77%, 13-4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00%, 실적공정률은 100%이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21〉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21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는 일부 인용하되, 지역사회의 중요이슈로서
비방의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 게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언론사인 원고가
수인해야 할 한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9608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부는 2009년 9월 16일 주식회사 강원일보가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정보도청구는 원심을 반복하여 일부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춘천시, 시유림(동면 만천리)－사유림(신동면 혈동리) 맞교환 재추진 3년만에 특혜 논란 재현』 등 10차례에 걸쳐 춘천시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전 자체 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강원일보사에 대한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강원일보사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원일보사 소유의 임야와 춘천시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그 토지가액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②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전례가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춘천시는 이전에도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전례가 있어, ③ 시유지 집단화계획이 명분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원일보사 소유의 사유림 인근에 8필지의 시유림이 있어 강원일보사와 춘천시 사이의 토지교환은 시유림 집단화계획에 부합하며, ④ 춘천시가 이 사건 교환계획을 자체 폐기했다거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춘천시의회에서 사실상 부결처리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폐기된 적이 없고 중단되어 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기사들은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촉발되고,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던 이 사건 교환계획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에 해당하고, 단순히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 게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수인해야 할 한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1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강원조정7, 8)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나96088 정정보도등

원 고, 항 소 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2. 홍○○

3. 정○○

제 1 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가합252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6. 3.

판 결 선 고 : 2009. 9. 16.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되는 강원도민일보 사회면 첫면의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홍○○, 정○○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원도민일보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정○○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가 발행하는 신문 1면의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춘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춘천시장에 대한 2008. 4.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신문 ‘강원일보’를,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이하 ‘피고 강원도민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 ‘강원도민일보’를 각 발행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언론사들로서 평소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피고 홍○○, 정○○은 피고 강원도민일보가 별지 기재 각 기사 및 사실을 보도할 당시에 편집국 사회부 소속의 기자로 각 재직하면서 별지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회사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춘천시 중앙로의 교통정체, 새로운 인쇄기계 도입 등을 이유로 사옥 이전 부지를 찾던 중 춘천시 소유의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 115-1 임야 1,294㎡ 및 같은 리 산 115-2 임야 3,613㎡가 사옥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자사의 춘천시청 출입기자 등을 통하여 춘천시에 위 만천리 임야의 취득가능성을 타진한 후 토지교환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하고, 2004. 7. 20. 교환대상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여○○으로부터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15 임야 155,372㎡(이하 ‘이 사건 혈동리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4. 8. 10. 이 사건 혈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춘천시는 ‘시유립집단화를 위한 임야교환’을 이유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혈동리 임야(당시 공시지가 400원/㎡)와 춘천시 소유의 위 만천리 2필지 임야(당시 공시지가 15,000원/㎡)를 교환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2004. 9. 10. 위 교환계획이 포함된 ‘춘천시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에 포함된 위 교환계획의 예정절차는 2004. 9.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4. 10.에 교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004. 11.에 교환

계약 및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 사건은 2004. 9. 20. 춘천시의회 내부위원회에서, 2004. 9. 21. 춘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마. 그 후 춘천시는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이 위와 같은 토지교환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게 되자, 춘천시는 원고와의 교환계획을 중단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07. 10. 25. 춘천시에 3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던 토지교환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춘천시는 2007. 11. 23. 이 사건 혈동리 임야(공시지가 800원/㎡)와 상승된 토지가를 새로이 반영하여 교환대상 시유지를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 115-2 임야 3,613㎡(공시지가 42,200원/㎡, 이하 ‘이 사건 만천리 임야’라 한다)로 변경하여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교환계획’이라 한다)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임야 교환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 교환대상 토지인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재산가격은 124,298,000원(㎡당 공시지가 800원×155,372㎡), 추정감정가는 497,191,000원으로, 이 사건 만천리 임야의 재산가격은 152,468,000원(㎡당 공시지가 42,200원×3,613㎡), 추정감정가는 578,080,000원이라는 점, 교환취득대상토지 인근이 시유림 밀집지역으로 고가의 시유림을 대면적의 사유림과 교환함으로써 공유임야의 면적확대를 통한 시유림 집단화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교환의 타당성이 있다는 점, 교환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 3-3이라는 점, 2007. 12.에 춘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8. 2.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008. 3. 토지차액 정산 후 교환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도시근교 고가의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시유림 면적확대 및 집단화와 소규모 분산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도모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위와 같은 시유지 교환계획의 재추진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다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교환계획에 관하여 2007. 12. 3.부터 같은 달 6일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 또는 사실(이하 ‘이 사건 기사들’ 또는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을 강원도민일보를 통하여 보도하였다.

아.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무부서인 춘천시의회 내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7. 12. 4.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차례로 둘러보았고, 다음날인 2007. 12. 5. 춘천시의회 내부위원회는 위 변경안을 심의한 후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 강원도민일보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1. 30. 피고 강원도민일보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배경, 계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이며 임야교환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2008. 2. 5.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8. 2.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춘천시에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춘천시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2008. 4. 29. 이 사건 교환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옥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발전계획을 춘천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시는 2008. 5. 15. 춘천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지침

이 사건 교환계획이 추진되던 당시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 (관리 및 처분)

①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8.3〉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39조 (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 (교환)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및 강원도의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가. 업무개요

• 현재의 공유임야 부근의 사유림과 국유림을 취득하여 일단의 규모가 큰 공유림으로 집단화 할 경우 관리효율화와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 다른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국유림간에 상호 교환 등을 적극 추진, 공유림의 집단화 등을 수행하는 업무임

나. 필요성

- 협소한 국토는 필연적으로 전국토의 경제적 활용이 극대화가 요구됨. 따라서 임야의 활용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 교통의 발달, 전국토의 균형적 개발은 도시근교와 오지와의 임야가격이 빠른 시일내 등가화 될 것이며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는 공유임야의 확충이 요구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충족을 위하여는 사유임야보다는 공유임야로서 보존이 유리할 것임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라. 조치사항

1) 공·사유임야의 교환

- 공유임야 확대가 용이한 교환방법 추진 - 면적확대 위주
- 도시근교 임야와 오지 임야 또는 여건이 나쁜 임야의 교환추진
- 공유임야와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임야와의 교환 추진

2) 저가임야의 매입

- 공유임야 확대를 위하여는 저가임야를 발굴 및 매입 등을 통하여 추진

3. 원고의 피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춘천시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던 것으로 원고에 대한 특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원도민일보가 이 사건 교환계획이 특혜라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별지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답변

이 사건 보도는 모두 진실에 부합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

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등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일 경우 피고 강원도민일보의 피고 강원도민일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취지 참조),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K일보’, ‘특정언론사’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여 대상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유의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춘천시 소유의 이 사건 만천리 임야는 실거래가격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 사건 교환계획 이전에는 시유지를 사유지와 맞교환한 유사한 사례가 없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위와 같은 토지교환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춘천시가 토지교환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시유지 집단화 명분도 춘천시가 교환을 통해 취득하려는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인접한 시유지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내세운 명분 없는 명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며, 부수적으로 춘천시가 2004년에 교환계획이 추진되던 중, 위와 같은 특혜의

혹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2004년도 교환계획을 자체적으로 폐기했다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특혜라는 기사들의 진실성 여부

원고는 춘천시와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이 사건 교환계획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음에도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민일보를 통하여 이 사건 교환계획에 문제가 많으며, 춘천시가 원고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허위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기사들에 나타난 특혜라는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보도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 자체가 원고에 대한 특혜라는 기사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실거래가는 3억 7000여 만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만천리 임야의 실거래가는 최저 6억 5000여 만원에서 최고 10억 8000여 만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맞교환할 경우 원고는 최저 2억 8000여 만원에서 최고 7억 1000여 만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특혜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가 최저 2억 8000여 만원에서 최고 7억 1000여 만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예정된 진행절차 및 그 근거법령, 강제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지○,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에 대하여 공히 감정평가를 하되, 어느 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3/4 미만인 경우 교환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고, 어느 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3/4 이상인 경우에도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혈동리 임야가액의 이 사건 만천리 임야가액의 최소치에 대한 비율이 56/100(3억 7000만원/6억 5000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 어느 한 토지의 가액이 다른 토지의 가액의 3/4 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은 이익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피고가 저가의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고가의 이 사건 만천리 임야가 감정을 거쳐 차액이 정산됨이 없이 맞교환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의 보도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보도가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가 차액 정산을 거쳐 교환이 된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만천리 임야가 향후 개발가능성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훨씬 높은 부동산이어서 이 사건 교환이 원고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향후 개발가능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로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차액을 정산하는 이 사건 교환이 바로 원고에게 특혜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보도라고 할 것이다.

(나)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전례가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전례가 없으므로,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이 특혜라는 기사의 의미를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원고와 춘천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이전에는 그 전례가 없는 시유지와 사유지의 맞교환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강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춘천시장에 대한 2008. 4. 15.자, 2008. 6. 20.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춘천시는 2004년에 시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춘천시 소유의 춘천시 칠전동 산 62-1 임야 9,959㎡와 한국불교영산문화원 소유 재산인 칠전동 산 61-1 임야 9,959㎡를 교환하였고, 다른 목적으로도 2003년과 2004년에 각 1회씩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내용의 위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보도라고 할 것이다.

(다) 시유지 집단화계획이 명분이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유림 집단화에 관한 기사를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인접한 시유지가 2필지에 불과하여, 춘천시가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한 시유지와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합해보아도 총 3필지이고 그 면적도 적어 시유림 집단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유림 집단화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성사시킬 의도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지, 실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시유림 집단화와는 무관하고, 시유림 집단화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내세운 허구의 명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별지 임야도의 표시에 의하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는 시유지인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12 및 산 17 임야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시유지인 같은 면 증리 산 212 임야와 일부가 접해 있으며, 위 증리 임야들 옆에는 역시 시유지인 증리 산 211-1, 210, 230, 229-1 임야 등이 차례로 인접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제외하고도 이미 춘천시 소유의 8개 필지의 임야로 시유지군이 형성되어 있어, 위 8개 필지의 시유림에 이 사건 혈동리 임야가 합해지는 경우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인근에는 총 9개 필지의 시유림군이 형성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은 앞서 본 행정자치부의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 및 강원도의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규정된 시유림 집단화업무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면적 155,372㎡는 이 사건 만천리 임야의 면적 3,613㎡의 43배에 달하여 위 각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인 면적확대위주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명분으로 내세운 시유립 집단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명분인 시유립 집단화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다는 위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의 보도라고 할 것이다.

(2) 그 밖에 원고가 허위 보도임을 주장하는 기사들에 관하여

(가) 춘천시가 이 사건 교환계획을 자체 폐기했다거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춘천시의회에서 사실상 부결 처리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4년 추진되던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위 만천리 2필지 임야에 대한 교환계약이 2004. 9. 20.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2004. 9. 21. 춘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춘천시장에 대한 2008. 4. 1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년 추진되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춘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교환을 하려 하였으나, 교환대상 토지인 시유립이 주변개발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토지교환이 특혜라는 여론이 있어 시유립 주변 개발실태 파악을 위하여 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후 원고가 2007. 10. 25.에 춘천시에 이 사건 교환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자, 춘천시가 원래 교환대상 예정 시유지였던 위 만천리 임야 2필지 중 이 사건 만천리 임야만을 교환대상 시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춘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되어 2008. 4. 2. 현재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 추진되던 토지교환계획은 폐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되고 있다가 2007년에 다시 추진되어 2008. 4. 2. 현재 춘천시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4년도에 추진되던 토지교환계획이 춘천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폐기되었다거나 2007년도에 추진되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춘천시 의회에 의하여 사실상 부결처리되었다는 위 보도는 진실이 아닌 허위의 보도라고 할 것이다.

(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도 교환계획의 추진 당시 감사원이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감사원이 위 교환계획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라 주장하므로, 과연, 감사원이 2004년도 교환계획의 추진 상황을 감사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4년도 교환계약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춘천시의회의 현장조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춘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교환대상 임야들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본 것은 교환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현장조사 당시에도 시의원들은 교환가격이

나 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위 현장조사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특혜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춘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춘천시 의회는 상정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지○의 증언만으로는 춘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교환대상 임야를 둘러본 것이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거나 현장 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이 특혜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및 간접강제

(1) 따라서,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보도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민일보는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사실에 위배되거나,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 강원도민일보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강원도민일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강원도민일보가 행할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일부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내용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보도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보도로서 그 관련자인 원고는 언론사인바,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원칙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 52142 판결 참조).

(나) 공익성의 유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만큼 공공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목적, 경위, 경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취재,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들은 당시 춘천시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던 시유지 교환과정과 정당성에 관하여 다룬 보도로서 주요한 부분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도가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새로운 사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위 만천리 임야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만천리 임야들의 소유자인 춘천시에 위 임야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경우 시유림 집단화 지침에 부합하므로 만천리 임야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춘천시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2004. 7.경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매수한 사실, 원고 소속의 사회부장이었던 문○○와 춘천시청 출입기자 지○이 춘천시 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교섭하면서 교환계획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2004. 9. 22. '춘천시 의회는 시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라!' 라는 보도자료를,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같은 날 성명서를, 강

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07. 12. 5. ‘<성명>지역언론은 강원일보 특혜문제 본질을 보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의정보니터단이 2007. 12. 5. ‘춘천시는 특혜성 토지 맞교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발표하여 원고와 춘천시의 토지 교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계획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을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획에 대하여 언론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경과와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언론사 임야 맞교환 특혜 논란, 춘천시의회의 도덕불감증 시민 앞에 반성해야, 특혜 의혹 시유지 맞교환 즉각 중단해야, 춘천 시유지 맞교환 특혜논란 감사원 감사(2004. 9. 23.), 시유지 맞교환 특혜논란 감사 이후 판단(2004. 9. 23.), 세계일보 - 춘천시, 언론사에 부동산 특혜의혹(2004. 9. 22.), 한겨레 - 강원일보 소유 싸구려 임야 알짜 시유지와 맞교환 논란(2004. 9. 22.), 춘천시유지-언론사 땅 ‘맞교환’ 감사원 조사 착수, 시민비난붐물(2004. 9. 24.), 한국일보 - 언론사에 특혜의혹(2004. 9. 22.), 경향신문 - 춘천시 언론사에 특혜의혹(2004. 9. 23.), 춘천시 언론사특혜 파문확산(2004. 9. 24.), 춘천시장의 양식을 기대하며(2004. 9. 30.), 미디어오늘 - 춘천시·강원일보,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2004. 9. 24.), 땅값 오르면 맞교환 하겠다(2004. 11. 25.)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비록 시유지 집단화 지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춘천시의 시유지 분포 현황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는 하나 실제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접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언론사로서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이 사건 교환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원고의 담당부서가 아닌 춘천시 출입기자과 사회부장이 춘천시 내부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교환계획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점,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비록 시유지 집단화라는 명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장 필요성이 없고 향후 이용계획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시유지와 교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들은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촉발되고,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던 이 사건 교환계획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에 해당하고, 단순히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 게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수인해야 할 한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홍○○, 정○○에 대한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원도민일보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홍○○,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 목 : 춘천시,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특혜논란 정정 보도
2. 내 용 : 본지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춘천시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전 자체 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강원일보사에 대한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기사 및 사설을 통해 반복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지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지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전무하고, 강원일보사 소유의 사유림 인근에 시유림이 단 2필지에 불과하여 교환계약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유림 집단화계획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이며, 토지교환으로 강원일보사가 큰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강원일보사와 춘천시 사이의 토지교환은 강원일보사에 대한 특혜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춘천시는 이전에도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전례가 있고, 강원일보사 소유의 사유림 인근에 8필지의 시유림이 있어, 강원일보사와 춘천시 사이의 토지교환은 시유림 집단화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원일보사 소유의 임야와 춘천시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그 토지가액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토지교환으로 강원일보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토지교환이 강원일보사에 대한 특혜라는 보도는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추진되던 토지교환이 춘천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폐기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폐기된 적이 없고 중단되어 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9〉 기사내용 생략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확인을 앎은 채 ‘국회의원 성접대’ 등의 보도를 한 것은 심히 경솔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03825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9월 30일 전 국회의원 임인배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대표이사,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는 2007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1면에 『“국감 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단란주점 뒤풀이... 일부는 모텔 2차까지”』 등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한 공익성은 인정하였으나, “원고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았거나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 50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술자리가 있었을 뿐이고, 성 접대는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진실성을 부정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당성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셨던 ‘□□□□’ 가요주점을 상대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지 않았던 ‘○○○’ 유흥주점을 상대로 잘못 취재하였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술집 주인의 말을 과신한 채 원고 등 관련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장, 직원들을 상대로 성 접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등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앎은 채 술집 주인의 진술을 들은 바로 다음날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비록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는 심히 경솔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1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42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나103825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임 인 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김 학 준

3. 임 ○ ○

4. 최 ○ ○

5. 이 ○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95937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7. 1.

판 결 선 고 : 2009. 9. 30.

주 문 :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글씨 크기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아래 신문기사가 보도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위’라 한다)의 위원장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 및 배포하는 회사이고, 피고 김학준은 피고 신문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신문기사 보도 당시의 발행인, 피고 임○○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최○○은 피고 신문사의 사회부장, 피고 이○○은 피고 신문사 소속의 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7. 10. 26.자 동아일보 1면에 「“국감 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단란주점 뒤돌이... 일부는 모텔 2차까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 과기위(위원장 원고) 소속 국회의원 6, 7명이... 대전에 있는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A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A 단란주점에 갔던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과 함께, 국감을 받았던 한 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국감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입법조사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식사와 술값으로 쓴 비용은 모두 2,500만원 정도 되고, 이를 여러 기관이 나눠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A 단란주점의 사진과 함께 별지3 기재와 같이 게재하였다.

다. 피고들은 나항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 3면에 「“기자들 눈에 안 띄는 한적한 톨살롱 알아보라”」라는 제목 하에 과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 후 의원보좌관, 국회입법조사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후, 위 국회의원 중 6, 7명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A 단란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위 국회의원 중 2명은 여종업원과 모텔에 투숙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향응이나 성접대는 모두 뇌물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 10. 27.자 동아일보 1면에 「의원-보좌관-국회관계자 3~5곳서 따로 ‘2차 술자리’」라는 제목 하에 「관련자들, 파문 커지자 일제히 말바뀌 의혹」이라고 소제목을 기재하고, 「원고는 25일 “술자리엔 의원 5, 6명이 있었다”고 했다가 26일 오전엔 “의원 3명만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피고들은 라항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 3면에 「단란주점... 노래방... 호프집... ‘술취한 국감’」이라는 제

목 하에 「원고, 류근찬, 김태환 의원 등 3명은... 단란주점으로 갔다. 여성접대부 3명도 자리에 있었다. 원고는 25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5, 6명이 근처 노래방에 갔었고 우리끼리 양주 한 병 시켜서 마셨다”고 하였다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 김태환,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과 술집에 갔고 피감기관장 5, 6명이 어떻게 알고 술집으로 왔으며 술집은 허름했고 3층에 있었다고 말했다. 원고는 기자회견 직후 “그 술집은 원래 여종업원이 없는 술집이었는데 전화로 (접대부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접대부가) 3명이 있었다”며 접대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피고들은 라향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 4면에 「“의원 6, 7명 술 마셔” → “국감 관계자는 없었다”」는 제목 하에 「단란주점 주인도 말 바뀐다」라는 소제목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 「국감에 나섰던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자의 술자리 합석을 처음 밝힌 단란주점 주인 A씨는 26일 언론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전 주장을 번복했다. 그는 “22일 오후 9시경 국회의원 6, 7명과 연구단지 관계자 등 10명이 찾아왔으며... 당일 참석자들이 폭탄주를 많이 마셨고 기분이 상해 대부분 ‘2차’를 가는 분위기였으나 나중에는 의원 2명만 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는 종전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 피고들은 라향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에 「“국감 받는데 1억” → “1600만원 들었다”」는 제목 하에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 한 번 치르는 데 총비용이 1억 원이나 들어야 하니 말이에요. 이 가운데 술값, 밥값으로만 2500만 원이 들었어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A 연구원의 B씨는 23일 저녁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C 연구원에서 국감을 준비한 부서에 있었던 D씨. 그는 22일 국회의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음식점과 비용 등을 소상히 밝혔다. 이어 “국감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국회 관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2차’를 나갔다”는 말도 전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이들이 말한 음식점과 저녁 식사비용은 정확했다. 그러나 ‘국감 향응’ 관련 본보 보도가 나간 26일부터 B씨와 D씨는 자신들의 말을 대부분 번복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 위와 같이 국감향응 문제가 기사화되자 한나라당은 2007. 10. 28.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성접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피감기관장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당원권 정치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 후 원고는 2008. 3. 13.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되었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의무 여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 참조),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0. 22. 열린 국정감사 후 과기위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 김태환, 류근찬, 김희정 및 홍창선과 수행원들, 피감기관 소속 직원 등 총 92명은 근처 식당에서 약 42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는데, 국회 과기위 사무처에서 약 312만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정산하였고, 원고 등 국회의원 3명과 피감기관장 등 8명은 인근 주점에서 68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으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약 30분 정도 머물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위 국회의원들에게 성접대는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위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나아가 그 중 일부 국회의원은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신문사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면의 위치와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내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 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 등 과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성이 있는 2,5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뿐만 아니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기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

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2)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각 기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감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접대 문제는 공론화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적인 문제로 이 사건 각 기사의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 이 사건 각 기사의 진실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았거나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 50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술자리가 있었을 뿐이고, 성 접대는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각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의 대전·충남지역 기자인 이□□은 2007. 10. 23.경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된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업무를 총괄한 노○○로부터 과도한 국감 준비부담 등으로 인한 고충과 함께 국감 후 의원들이나 국회 직원 등에 대한 식사나 술 접대 등에 2,500만원이 들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 이□□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정보보고에 의하여 파견된 지○○, 피고 이○○과 이□□ 등 피고 신문사 기자들은 2006. 10. 24. ○○○ 주점의 주인 윤○○, 김○○, 종업원 황○○ 등에게 국회의원들이 그곳에 온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윤○○ 등은 그곳에 국회의원 6~7명과 박사님 등 10명 정도가 와서 5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그 중 5명이 속칭 ‘2차’를 끊었다가 실제로는 2명만 2차를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 기자들이 다음날 다시 윤○○ 등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며 2차를 간 아가씨들의 명단을 요구하자 윤○○은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단지 위 노○○로부터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깔끔하게 먹던데. 아이고 심지어 속기사까지 2차를 보내줬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어떠한 추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신문사에 정보보고를 함에 있어 “국회 과기위 국정감사단이 대전 유성에서 ‘기생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일부 의원 및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속기사 등은 술집 여종업원과 모텔 행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옴...”이라고 한 사실, 2007. 10. 26.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는

당시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셨던 ‘□□□□’ 가요주점을 상대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지 않았던 ‘○○○’ 유흥주점을 상대로 잘못 취재한 사실, 피고 이○○은 2007. 10. 24. 원고로부터 “저녁식사 후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술집에 가서 한나라당 의원 5, 6명과 술을 한잔 했다”는 말을 듣고 이□□이 제보를 들었다는 성 접대했다는 곳과 원고가 갔다는 술자리는 별도라고 생각했음에도 별지3과 같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위 기자들은 원고 등이 갔었던 식당 여직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중 몇 명과 피감기관장들이 ‘□□□’라는 술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7. 10. 24. 위 □□□□ 주점 사장인 정○○과 통화를 하면서 2일 전에 그곳에 국회의원들이 왔었는지 물었으나 정○○으로부터 자신은 잘 모르니 문의하려면 직접 오라는 대답만을 들은 사실, 위 기자들은 위 정○○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그 위치를 물어 그곳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채 노○○가 “후미지고, 기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안 가는 곳”이라고 말했던 것과 원고가 “○○가든에서 걸어서 2~3분 거리인 주점”이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 원고 등이 ‘○○○’ 주점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는 □□□ 모텔의 지하에 있는 ○○○ 주점으로 가 취재를 한 사실, 당시 유성 지역에는 ‘□□□’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점이 여러 개 있었고 위 김○○이 피고 이○○에게 □□□ 모텔과 □□□ 호텔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며 □□□ 호텔 지하에도 술집이 있으므로 그곳에 가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윤○○이 그곳에 국회의원들이 왔던 것처럼 말을 하자 계속 ○○○ 주점에서 취재를 한 사실, 윤○○은 2차를 간 국회의원이나 누구냐는 위 기자들의 질문에 과기위 소속 국회의원 중에 없는 의원인 “권 의원 아냐?”고 말하였고 당시 이□□ 기자는 “권○○이라면 과기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위 윤○○은 위 기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면 “김 실장이 들어가서 나는 잘 몰라”라고 진술을 반복한 사실, 위 기자들은 2007. 10. 26. 새벽 ○○○ 주점의 영업 장부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보았으나 원고 등이 그 주점에 왔거나 속칭 2차를 나갔다는 정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던 사실, 위 기자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기 전 원고 등 관련 국회의원들이나 위 정○○ 등으로부터 그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첫 보도 이후인 2006. 10. 26. 취재한 장소가 다른 점 등 취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사를 정정하지는 아니한 채 원고 등이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보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은 노○○의 말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과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것과 같이 정보보고를 하는 등 이미 성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재를 한 점, 위 기자들은 국회의원 등이 간 주점의 이름이 ‘□□□’라고 들었고 그곳 주인인 정○○과 통화까지 하였음에도 그곳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생각에 국회의원들이 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 주점으로 가 그 곳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더 이상 다른 곳을 취재하지 아니한 점, 술집 주인 등 업소 관계자들이 자기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 신상을 다른 손님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기자들이 윤○○에게 그 당시 상황을 따져 묻자 진술을 반복하는 등 윤○○의 진술에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윤○○ 등의 말을 과신한 채 원고 등 관련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장, 직원들을 상대로 성 접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등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각 기사 내용이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그에 따른 취재가 아직 미흡한 상태였고 바로 보도해야 할 만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술집 주인의 진술을 들은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비록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는 심히 경솔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

(1)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 등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술 접대와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기사는 원고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 등이 가지도 않은 술집 주인의 말만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술집 주인의 말은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200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정당의 공천 심사에서 탈락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지위, 나이, 경력,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기사가 ‘동아일보’ 제1면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면에 걸쳐 여러 차례 보도된 점, 특히 2007. 10. 26.자 3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원고 등 현직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후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표를 작성하여 가며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 그러나 피고들은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기사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채 원고 등이 진술을 반복한 점만을 부각시킨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로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이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접대문화가 많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원고에게도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기사 게재일인 2007. 10.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작은 제목 : 국정감사 의원들, 수사 결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본 문 : 본 동아일보에서는 2007. 10. 26.자 1면에 “국감 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단란주점 뒤 풀이... 일부는 모텔 2차까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기사에서 문제된 국정감사 후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임인배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그 수행원들, 피감기관 소속 직원 등 총 92명이 식당에서 약 42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는데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사무처에서 약 312만원 상당을 정산하였고, 원고 등 국회의원 3명과 피감기관장 등 8명은 인근 주점에서 68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으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약 30분 정도 머물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국회의원들에게 성 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 기사는 본보 소속 기자들이 당시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셨던 C 단란주점을 상대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지 않았던 A 단란주점을 상대로 취재하여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4〉 기사내용 생략

명예훼손 사례 23

여론조사기관의 오기된 자료를 받아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및 보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8972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10월 14일 김○○이 주식회사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2명, 여론조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을 증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회사의 오기된 자료를 받아 2008년 4월 2일 제1면에 『총선 D-7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정당별 판세 분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제4, 5면에 8개 권역별 1, 2위 후보 이름(소속 정당), 지지율을 게재하면서 『부산 영도구 김형오(한나라당) 45.6%, 김무규(평화통일가정당) 6.6%』로 기재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여론조사 회사가 원고의 지지율인 6.6%를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로 잘못 기재된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게재하여 낙선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가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잘못 정리하여 오기된 자료를 피고 신문에 제공하였고, 피고 신문사 및 피고 김□□, 신○○이 이를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및 표본의 크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조사기관과 그 시기만 후속보도 형식으로 수정한 것은 여론 조사 및 보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최초 보도로 독자 및 유권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지율이 2위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방향 등에 영향을 주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12월 17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7~372면 참조)

판결문

사 건 : 2009나8972 손해배상
원 고, 항 소 인 : 김○○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김 □ □

3. 신 ○ ○

4. 주식회사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합48297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7. 15.

판 결 선 고 : 2009. 10.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라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라 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문○○의 일부 서면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KBS, 부산MBC, 부산KNN, 부산CBS, 부산YTN,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피고 김□□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신○○은 피고 신문사의 여론조사 전문기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부산KBS는 2008. 3. 25. ‘뉴스9’ 프로그램에서 정음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결과 부산 영도구에서 김형오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 1위, 원고의 지지율이 6.6%로 2위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피고 ○○○○○의 아르바이트생인 정○○은 2008. 3. 26. 위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지율인 6.6%를 평화통일가정당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피고 ○○○○○는 피고 신문사 및 주식회사 YTN으로부터 5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업무를 의뢰받았고 위 50개 선거구에 부산 영도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 ○○○○○의 차장 박○○은 위 선거구 외에 여론조사결과를 취합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도 보내달라는 피고 신○○의 요청에 따라 2008. 3. 27. 위 잘못 기재된 자료(이하 ‘오기된 자료’라 한다)를 피고 신○○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신○○은 오기된 자료에 따라 2008. 4. 2.자 중앙일보 제1면에 ‘총선 D-7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정당별 판세 분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제4, 5면에 8개 권역별로 1, 2위 후보 이름(소속 정당), 지지율을 게재하면서 ‘부산 영도구 김형오(한나라당) 45.6%, 김무규(평화통일가정당) 6.6%’로 기재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마. 피고 신○○은 위 보도 당시 각 선거구별로 지지율이 1, 2위인 후보자들의 이름과 지지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조사의뢰자나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인 2008. 4. 3.자 중앙일보 제6면에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 분석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4. 2.자 위 기사는 지역구별로 각각 다른 조사기관과 조사 시기가 병기되지 않아 일부 지역구의 조사결과가 최근 여론으로 오해를 받게끔 하였다. 후보 등록 이후 출마자가 바뀐 곳도 있어 위 조사 결과는 최근 판세와 다를 수 있다’며 영도구는 정음리서치가 3. 21.부터 3. 24. 사이에 조사한 것으로 후속보도를 하였다.

바. 2008. 4. 9.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자가 24,426표(43.46%)를, 원고가 그보다 968표가 적은 23,458표(41.74%)를 득표하여 위 김형오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사. 한편, 부산 영도 지역구에 관하여 부산KBS의 여론결과 보도와 이 사건 기사 외에는 어떠한 여론조사결과 보도도 없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

(1) 피고 ○○○○○가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잘못 정리하여 오기된 자료를 피고 신문에 제공하였고, 피고 신문사 및 피고 김□□, 신○○이 이를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및 표본의 크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조사기관과 그 시기만 후속보도 형식으로 수정한 것은 여론 조사 및 보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최초 보도로 독자 및 유권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지율이 2위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방향 등에 영향을 주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 ○○○○○의 오기된 자료의 제공과 피고 신문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보도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한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문○○의 일부 서면증언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신문사, 김□□, 신○○의 주장

피고 신문사, 김□□, 신○○은, ① 유력 여론조사업체인 피고 ○○○○○가 보낸 자료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② 여론조사결과와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위 요건들을 모두 명시하지 않고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갑 제1호증, 을라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부산KBS에서 이미 오기되기 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 피고 신○○은 피고 ○○○○○의 여론조사부장인 김◇◇에게 2008. 4. 1.경 전화를 걸어 전달된 자료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은 그 자료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¹⁾은 선거와 관련된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전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도록 하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함께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부산 영도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자료는 박○○ 차장이 피고 신○○에게 사적으로 보낸 것일 뿐 어떤 계약관계에 따라 대가를 받고 준 것이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없고 위 자료가 보도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는 피고 신문사에게 50개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업무를 수행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신○○은 다른 선거구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도 업데이트 되는 경우 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박○○이 오기된 자료를 보내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피고 신문사에게 오기된 자료 등을 제공한 것이 50개 선거구에 관한 계약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신문사는 각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기 위하여 피고 ○○○○○에게 그 조사를 의뢰한 것인 이상 피고 ○○○○○는 피고 신문사가 각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도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잘못된 보도가 없었더라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을 2008. 5.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1,000만 원과 2억 원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기사의 여론조사결과 수치가 제대로 보도되었다면 원고가 반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지지도, 후보의 공약, 정책, 선거운동, 유권자의 성향 및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총합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전 이미 부산KBS를 통하여 정음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가 그대로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만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선거 직전에 보도된 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2위로 보도되는 것과 그 순위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선거권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선거운

동원 및 지지자들의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 원고가 당선자와 사이에 득표율 1.72%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 보도는 이 사건 기사와 부산KBS의 보도 밖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신문사의 영향력과 인지도 및 다른 언론기관에서 이 사건 보도를 인용 하거나 확대 보도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즉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5.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8. 5.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사례 24

원고와 안산타임즈가 이 사건 기사를 두고 벌인 분쟁은 정정보도하고 손해청구는 취하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화해를 통해 종결되었고, 원고의 안산타임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8543 판결 (확정)

사실개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년 11월 5일 재단법인 ○○○○재단이 안산시와 주식회사 안산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안산시는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고를 1순위로 결정하였다가, 안산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모집철회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안산타임즈는 2007년 9월 13일자 사회면에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 및 같은 달 20일자 『보육센터 위탁심의 1위 학교 ‘자격미달’』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공모에서 원고 학교가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몇 차례 더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안산시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심사가 이뤄진 후 피고 안산시가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철회공고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안산시가 고의, 과실에 기해 위법하게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안산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안산타임즈와 관련해서도 “피고 안산타임즈가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나아가 설령 피고 안산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들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2007. 9. 13.자 기사 및 같은 달 20.자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번호 2007경기조정57호로 정정보도 및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 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07. 11. 15. ‘피고 안산타임즈는 마치 H디지털대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받기 위해 불법 내지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H디지털대학은 적법한 방법으로 안산시에 위탁운영자 신청을 하였으며,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기에 이를 정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정정보도를 안산타임즈의 사회면에 하기로 조정·화해가 이뤄진 사실, 이 사건 조정·화해 이후 피고 안산타임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아니하였고, 2007. 11. 22. 위 조정·화해에서 이뤄진 내용대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원고와 피고 안산타임즈가 이 사건 기사를 두고 벌인 분쟁은 2007. 11. 15. 이뤄진 이 사건 조정·화해를 통해 종결되었고,

원고의 피고 안산타임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화해의 효력이 2007. 9. 13.자 기사와 같은 달 20.자 기사에 한정된다거나, 정정보도 부분에만 미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화해의 효력을 위와 같이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11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경기조정57)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정정보도청구는 조정성립되고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8543 손해배상(기)

원 고 : 재단법인 ○○○○재단

피 고 : 1. 안산시
2. 주식회사 안산타임즈

변 론 종 결 : 2009. 10. 15.

판 결 선 고 : 2009. 11. 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안산시는 3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안산타임즈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0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안산시가 2007. 8. 20. 안산시 공고 제2007-488호로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2007. 8. 말경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위탁운영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안산시는 2007. 9. 7.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이하 ‘이 사건 심사결과’라 한다) ○○○○○대학교가 1순위자로 결정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대학교를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채 2007. 11. 20.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철회를 결정·공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안산시에 대한 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이 사건 심사결과 1순위자로 결정된 이상 피고는 안산시 보육조례 제8조 및 안산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대학교를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자 선정결정을 하여달라도 독촉하였음에도, 원고의 경쟁자인 ○○○교회 측을 옹호하고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한 안산시장의 의도에 따라 위탁운영자 선정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모집철회공고를 하였다. 나아가 원고 법인의 주소 및 ○○○○○대학교의 단체성 등 자격요건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신청서 접수시 내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에 고지하거나 ○○○○○대학교를 1순위자로 결정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 안산시가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한 행위들로 인해 ○○○○○대학교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모집공고시 피고 안산시는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일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2) 원고는 ○○○○○대학교 및 원고 명의의 각 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 ○○구 ○○동 ○○○-○○’로 되어 있어 위 자격제한에 걸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9. 7. 이뤄진 이 사건 심사결과 ○○○○○대학교가 1순위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3) 이 사건 심사 이후의 일정은 ‘2007. 9.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탁운영자 및 시설장 결격사유 조회, 같은 달 14. 위탁운영자 선정 통보, 2007. 10. 1. 위·수탁계약 체결 및 증서교부’ 등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

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학교가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자격에 미달하고, 심사위원 중 일부가 ○○○○○대학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7. 9.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심사과정에 대한 피고 안산시의 특별조사가 실시되었고, 위 특별조사를 통해 ① ○○○○ ○대학교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를 이 사건 모집 공고상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사결과를 무효화한 후 위탁운영자를 재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② ○○○○○대학교의 이해관계인 중 일부가 이 사건 심사위원에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제대상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내용이 각 지적되었다.

4) 이후 피고 안산시는 2007. 10. 8.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1순위자인 ○○○○○대학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방안(제1안)과 재공고를 통해 재모집하는 방안(제2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제3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1안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므로 채택하기 힘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2안 내지 제3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동의를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 안산시에서 직영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5) 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0. 15.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2007. 9. 7. 이뤄진 이 사건 심사결과를 배제하고, 피고 안산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영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6) 결국 피고 안산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하기로 한 뒤, 2007. 11. 20.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철회공고를 하였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심사가 이뤄진 후 피고 안산시가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철회공고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안산시가 고의, 과실에 기해 위법하게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안산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안산타임즈에 대한 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안산타임즈(이하 ‘피고 안산타임즈’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행위 내지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듯한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2달에 걸쳐 연속으로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안산타임즈가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안산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들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조정결과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안산타임즈가 2007. 9. 13.자 사회면에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라는 제목 및 같은 달 20.자 “보육센터 위탁심의 1위 학교 ‘자격미달’”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학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주사무소 자격기준 논란’, ‘심의위원 중 2명 학교 재학생 확인’, ‘학교를 단체로 해석하는 오류 범해’ 등의 기사를 게재한 것 외에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기사(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몇 차례 더 게재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2007. 9. 13.자 기사 및 같은 달 20.자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번호 2007경기조정57호로 정정보도 및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 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07. 11. 15. “피고 안산타임즈는 마치 H디지털대학¹⁾이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받기 위해 불법 내지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H디지털대학은 적법한 방법으로 안산시에 위탁운영자 신청을 하였으며,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기에 이를 정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정정보도를 안산타임즈의 사회면에 하기로 조정·화해(이하 ‘이 사건 조정·화해’라 한다)가 이뤄진 사실, 이 사건 조정·화해 이후 피고 안산타임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아니하였고, 2007. 11. 22. 위 조정·화해에서 이뤄진 내용대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률조항에 비취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안산타임즈가 이 사건 기사를 두고 벌인 분쟁은 2007. 11. 15. 이뤄진 이 사건 조정·화해를 통해 종결되었고, 원고의 피고 안산타임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화해의 효력이 2007. 9. 13.자 기사와 같은 달 20.자 기사에 한정된다거나, 정정보도 부분에만 미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화해의 효력을 위와 같이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화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학교를 지칭한다.

영어마을의 입장객 수, 설립취지와 달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의무가 있으나, 기사내용이 공공성과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가합76176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09년 11월 18일 재단법인 ○○영어마을이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와 소속 기자 및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일보는 2009년 6월 17일자 11면에 『○○ 영어마을 썰렁 ‘오 마이 갓’』이라는 제목으로 ○○ 영어마을의 관람객이 급락하고 있으며, 매년 적자에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 “이 사건 기사 중 2009. 5. 20. ○○캠프 기숙사 10개동 중 2개동만이 사용 중이었다는 내용, 2009년 4월까지의 입장객 수가 3만 6,112명에 불과하다는 내용,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원어민 강사수를 줄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적자가 감소한 것이 공무원을 대거 유치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 ○○캠프 기숙사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내용,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초 설립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고(특히, ○○캠프를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운용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도 없어 원고 차원에서 이를 계획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 한국일보사,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기사내용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캠프를 비롯한 영어마을의 재정 적자나 운영방식 및 효과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던 사실, 피고 강○○은 ○○캠프에 직접 방문하여 관람객이나 기숙사 입소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원고 법인 소속의 홍보담당 직원 박○○을 만나 취재하였으며, 그 취재과정에서 박○○이 2009년 3월까지의 입장객 수를 4월까지의 입장객 수로 잘못 알려준 사실, 피고 강○○은 피고 한국일보사의 사회부 차장이었던 이○○로부터 ○○캠프의 사무총장인 장○○가 학교 동문끼리의 사석에서 ○○캠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원고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의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장단기 교사연수과정 확대나 민간기

업의 영어연수 유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 유가 있다 할 것이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합76176 정정보도 등

원 고 : 재단법인 ○○영어마을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2.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
3. 강 ○ ○

변 론 종 결 : 2009. 10. 21.

판 결 선 고 : 2009. 11. 18.

주 문 : 1.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국일보 1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사의 중간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한국일보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 24시간 동안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한국일보(news.hankooki.com)의 초기 메인화면 왼쪽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3】 기재 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별지3】 기재 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다. 만일 위 피고들이 위 가.항 내지 나.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국일보 11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한국일보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 24시간 동안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한국일보(news.hankooki.com)의 초기 메인화면 중간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인터넷한국일보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터넷한국일보의 사회면에 별도로 게재하라. 만일 위 피고들이 위 가.항 내지 나.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영어마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영어캠프의 개최 등 영어권 생활문화 체험 관련 영어교육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이하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www.hankooki.com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강○○은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다. 원고는 2006. 4. 3. 경기 영어마을 ○○캠프(이하 ‘○○캠프’라고 한다)를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한국일보사는 2009. 6. 17자 한국일보 11면에「○○ 영어마을 썰렁 ‘오 마이 갓’」이라는 큰 제목, 「방문객 첫해 51만 → 올해 4월까지 3만여명, “숙소엔 거미줄… 이런 곳에 자녀 보내겠나”, 매년 적자에 ‘성인 전문 교육기관’ 전환 검토」라는 중간 제목 아래 <지난 5일 ○○영어마을 ○○캠프. 마을 입구에 있는 매표소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고, 넓은 주차장에도 대형 버스 4대만 서 있었다. 캠프 안에서 모든 대화는 영어로만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찾은 영어마을 내 기숙사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단기 입소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기숙사 10개 동이 마련돼 있지만, 이날은 2개 동만 사용 중이었다. 그나마도 이용자는 연수 온 공무원들이었다. 영어마을의 ‘원조’로,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을 일으킨 ○○ 영어마을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입장객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고,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영어마을의 질을 좌우하는 원어민 강사 수를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초 설립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2006년 9개월 동안 51만 3,881명이던 입장객은 이듬해 32만3,480명, 2008년 24만5,011명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4월까지 3만6,112명

에 불과해 사실상 명맥만 이어가는 상태로 전락했다. 그러나 흑자 전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2006년 192억 원 이던 적자가 김 지사 취임 이후 2007년 66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41억원을 기록했다. 그나마 공무원들을 대거 유지한 결과로 영어마을의 본래 취지는 실종된 지 오래다. 한 교육공무원 입소자는 "숙소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세면실에 비누도 없는 등 관리가 엉망인데다,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쓰는데 누가 자녀를 이런 곳에 보내겠냐"고 하면서 "원래 영어마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껍데기 뿐인 교육기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라는 취지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인터넷한국일보 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갑 제2, 4, 5, 7, 10, 11, 1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캠프에는 2009. 5. 20. ○○○○ 중학교, ○○○○ 중학교 등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생 475명,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 64명, 경기도 영어교사 30명 등 총 569명이 숙박형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숙사 12개 동 중 11개동이 사용되고 있었다.

(나)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 ○○캠프의 입장객은 54,015명이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	-	-	-	-	-	96	100	106	110	108	103
2007년	103	103	75	87	86	86	81	85	95	93	98	103
2008년	105	108	103	98	93	94	90	98	99	99	100	99
2009년	97	95	93	93	94	95	102	99	92	-	-	-

(다) 2006년 처음 개장된 이래 ○○캠프의 원어민 강사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중학생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사, 공무원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교정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캠프의 2008년 기숙사 입소인원 중 공무원 교육인원은 전체 입소인원 중 2.9%에 불과하였고, 교사를 포함하여도 그 인원은 전체 입소인원 중 6.2%였다.

(마) ○○캠프에서는 기숙사에 비누 등 개인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대신 교육생 사전 입소안내를 통하여 이를 각자 준비하여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배) 원고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을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만 받고 운영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그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공무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한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캠프의 경우 개설 첫해인 2006년도에 192억 원에 달하던 적자를 2007년도에는 66억 원, 2008년도에는 41억 원 등으로 큰 폭으로 줄여 왔다. 아울러 원고는 향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연수프로그램을 도입·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영어마을을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원고는 물론 설립주체인 경기도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2009. 5. 20. ○○캠프 기숙사 10개동 중 2개동만이 사용 중이었다는 내용, 2009년 4월까지의 입장객 수가 3만 6,112명에 불과하다는 내용,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원어민 강사수를 줄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적자가 감소한 것이 공무원을 대거 유치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 ○○캠프 기숙사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내용,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초 설립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고(특히, ○○캠프를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도 없어 원고 차원에서 이를 계획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 한국일보사,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러나 ○○캠프 내에서 관람객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캠프 내 상업시설에 외국인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캠프 내 레스토랑 등에서 영어가 사용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5) 이 사건 기사 중 흑자 전환이 요원한 실정이라는 내용의 경우 갑 제5호증의 3 내지 5,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캠프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높아졌고, 적자도 2006년 159억 원에서 2007년 48억 원, 2008년 41억 원, 2009년 8월까지 29억 원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평가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장객 수가 급감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2006년부터 2008까지 입장객 수가 감소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2009. 6. 5. ○○캠프가 한적하였거나 ○○캠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기사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거나 평가적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이 사건 기사는 ○○캠프의 입장객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고,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어마을의 질을 좌우하는 원어민 강사를 줄이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당초의 설립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고, 기숙사 관리도 엉망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경기도의 감독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사업의 일부를 업무로서 수행하는 재단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캠프 등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며 영어마을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으로 ○○캠프의 운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인 이 사건 기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영어마을인 ○○캠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 등의 심각성 및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캠프가 영어마을 설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가 인정된 부분의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들에게 위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기로 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캠프를 비롯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나 운영방식 및 효과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던 사실, 피고 강○○은 ○○캠프에 직접 방문하여 관람객이나 기숙사 입소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원고 법인 소속의 홍보담당 직원 박○○을 만나 취재하였으며, 그 취재과정에서 박○○이 2009년 3월까지의 입장객 수를 4월까지의 입장객 수로 잘못 알려준 사실, 피고 강○○은 피고 한국일보사의 사회부 차장이었던 이○○로부터 ○○캠프의 사무총장인 장○○가 학교 동문끼리의 사석에서 ○○캠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다만,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장○○는 진술서(갑 제14호증의 1)를 통하여 일선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거나 교사 재교육과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을 뿐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요지의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의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장단기 교사연수과정 확대나 민간기업의 영어연수 유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본 문 : 본지는 2009. 6. 17.자에서 ○○ 영어마을의 입장객 수가 올해 4월까지 36,112명에 불과하고, 2009. 5. 20. 기숙사 10개동 중 2개동만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숙소에 비누도 없는 등 관리도 엉망이고,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원어민강사를 줄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을 대거 유치한 결과이고,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당초의 설립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9. 4.까지 입장객 수는 54,015명이었고, 2009. 5. 20. 당시 기숙사 12개동 중 11개동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비누 등의 위생용품은 사전에 입소자로 하여금 지참하도록 하였고, 2008년 숙박

형 프로그램 참가자 중 공무원은 2.9%, 교사를 포함하여도 6.2%에 불과하며, 원어민 강사 수도 개설 첫해인 2006년 96~110명에서 2007년 75~103명, 2008년 93~108명, 2009년 92~102명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고, 적자개선 및 영어공교육 보완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 교사연수를 확대하고 시·군 영어체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개설취지와는 달리 성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기사내용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1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기관의 업무장면을 촬영·방영한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나215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103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년 5월 12일 강○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8년 3월 30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접전... 무소속 선전』 및 2008년 3월 31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수도권 '초접전'』 제목으로 2008년도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원고가 여론조사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면을 약 2초 간 보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여론조사기관, 대상, 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기 위한 자료로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실제로 여론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방영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침해의 방법에 있어서도 촬영각도, 방영시간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원고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점에서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원고가 여론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원고를 아는 지인들에게 알려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8월 20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4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01)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는 2008년 12월 3일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9나2155 손해배상(기)
 원 고, 피 항 소 인 : 강 ○ ○
 피 고,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8가소140565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4. 21.
 판 결 선 고 : 2009. 5. 1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9시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 ‘MBC 뉴스투데이(이하 ‘뉴스투데이’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3. 20.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김○○ 차장으로부터 전화 여론조사 업무 광경의 촬영을 위한 동의를 받고, 같은 달 25. ○○○○○○의 전화여론조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전화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하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3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접전... 무소속 선전’ 보도 및 같은 달 31.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의 ‘수도권 ‘초접전’ ’ 보도 내용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장면을 약 2초 간 방영하였는데, 위 각 프로그램에 방영된 이 사건 장면은 별지 정지화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장면을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면은 원고의 동의 혹은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기관·대상·방법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방영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격권의 보장 등)

①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장면이 원고가 ○○○○○○에서 전화여론조사업무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장면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초상권 침해 여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세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가 포함된다.

(2) 피고의 항변

(가) 동의로 인한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하는데 있어 ○○○○○○의 담당 차장 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이나, 더 나아가 원고의 동의 혹은 묵시적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면 촬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이익형량의 법리)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되어 방영된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의 각 보도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것인 사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장면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보도하기 위한 자료화면인 사실, 이 사건 장면은 ○○○○○○의 전화여론조사 업무 전경 전체 6컷 중 1컷으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2분 39초 방영분 중 2분 28초에서

2분 30초까지에 걸쳐서,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2분 6초 방영분 중 1분 55초에서 1분 58초까지에 걸쳐 방영된 사실, 위 6컷 중에서 다른 여론조사 업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또는 뒷면이나 측면을 촬영하여 방영한데 비하여 이 사건 장면은 원고 혼자만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얼굴 전체가 나오도록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우측 상반신 부분을 약 2초간 촬영한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동일 화면 중하단에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방법, 신뢰수준을 같이 표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제반고려요소와 대비하여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여론조사기관, 대상, 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기 위한 자료로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실제로 여론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방영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침해의 방법에 있어서도 촬영각도, 방영시간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원고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점에서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원고가 여론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원고를 아는 지인들에게 알려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지화면 생략

3심 판결문

사 건 : 2009다41038 손해배상(기)

원 고, 상 고 인 : 강 ○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나2155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8. 20.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3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09년 5월 19일 이○○와 그 자녀 2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백만원, 원고 김○○와 김□□에게 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6년 4월 11일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제목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고 김○○, 김□□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년 12월 11일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및 2007년 2월 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위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년 2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46)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손해배상 1,000만원)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자동소제기가 되었으나, 양당사자의 합의(손해배상 500만원 및 원고들 관련 자료 폐기)로 소는 취하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분 5초 동안 『초등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ADHD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위 PD수첩에서 방송되었던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4:00경 <뉴스24시> 프로그램 및 다음 날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위 원고들 촬영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와 그 자녀 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PD수첩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원고 이○○ 및 김◇◇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뉴스데스크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10월 22일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합311 손해배상등

원 고 : 1. 이○○

2. 김○○

3. 김□□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09. 4. 28.

판 결 선 고 : 2009. 5. 19.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1,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09.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 김○○, 김□□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 한다) 증상을 가진 어린이들이고, 원고 이○○는 위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가 방송하는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원고 이○○의 동의를 얻어 원고 김○○, 김□□의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2006. 4. 11. 23:1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PD수첩에서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제목으로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고 김○○, 김□□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및 2007. 2.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위 PD수

첩의 원고들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방송하였다.

라. 원고 이○○ 및 김◇◇(원고 김○○, 김□□의 아버지)은 2007. 2. 28. ‘피고는 ① 김◇◇, 원고 이○○에게 2007. 3. 9.까지 각 2,5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7. 3. 9. 이전까지 PD수첩, 생방송 오늘 아침, 뉴스데스크의 각 원고들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원래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서울조정46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간에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 9. 22.자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분 5초 동안 “초등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ADHD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위 PD수첩에서 방송되었던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4:00경 ‘뉴스24시’ 프로그램 및 다음 날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위 원고들 촬영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4,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위배하여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위 PD수첩 방송 중 원고들의 촬영분을 삭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올려놓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보도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 기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PD수첩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원고 이○○ 및 김◇◇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뉴스데스크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4(이 사건 재보도 방송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3차례 각 재보도 방송은 아나운서가 도입부에서 ADHD를 짧게 소개하고 이어 담당 기자가 음성만으로 우리나라 ADHD를 가진 초등학생의 비율과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약정 위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이○○에게 1,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재보도일인 2008. 9.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09.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정보전달형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가단23128 판결

사실개요

부산지방법원은 2009년 9월 22일 박○가 주식회사 케이엔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1월 25일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서부산 요금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의 전화연결 방식으로 설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였는데, 원고가 서부산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면이 약 3초간 방영되었다. 이에 원고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촬영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사건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방송보도는 설연휴 귀성길 교통상황이라는 정보전달형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면에 비록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근접 촬영되어 나오기는 하나, 전체 방송보도 약 1분 12초 중 약 3초간의 분량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장면이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촬영거리, 시간, 표정 등으로 보아 원고 자신도 자신의 근무모습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면의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이 아니고 원고의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된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보도로 인하여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장면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2010년 3월 26일 보도의 긴급성과 침해행위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번복,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확정)

판결문

사 건 : 2009가단23128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피 고 : 주식회사 케이엔엔

변 론 종 결 : 2009. 9. 1.

판 결 선 고 : 2009. 9. 2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KNN 뉴스아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설연휴 기간인 2009. 1. 25. 저녁 8시경 방영된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서부산 요금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의 전화연결 방식으로 설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였는데, 약 1분 12초 분량인 별지 1. 기재 보도의 자료화면 중 원고가 서부산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면(그 정지화면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이 약 3초간 방영되었다.

다. 이 사건 장면은 피고가 2007년경 서부산 요금소의 전경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화면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한국도로공사를 퇴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점에 위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면은 원고의 묵시적 승낙 아래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도 없었다고 다룬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초상권 침해 여부

㉠ 초상권의 내용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인 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되거나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인 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인 초상영리권이 포함된다.

㉡ 원고의 묵시적 동의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할 당시 원고가 자신의 근무장면이 촬영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촬영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법성 조각 여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방송보도는 설연휴 귀성길 교통상황이라는 정보전달형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면에 비록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근접 촬영되어 나오기는 하나, 전체 방송보도 약 1분 12초 중 약 3초간의 분량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장면이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촬영거리, 시간, 표정 등으로 보아 원고 자신도 자신의 근무모습이 촬

영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면의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이 아니고 원고의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된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면의 보도로 인하여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나, 이 사건 장면은 원고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서 요금징수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장면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방영내용 생략

〈별지 2〉 정지화면 생략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09년 10월 14일 오○○이 뉴스앤조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언론사는 기사 일부분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뉴스앤조이는 2001년 5월 14일 『이단 사이비의 거센 역습』(별지 제1목록 기사), 2003년 6월 15일 『백주 대낮 종교단체 사이에 둔 가족 상잔』(별지 제2목록 기사) 등 7차례에 걸쳐 이단 종교 단체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별지 제1목록 기사에 대해서는 “위 기사는 위 기사를 읽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과 주소, 남편의 실명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원고가 이른바 이단 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러 남편인 정○○을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보자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과 기사 일부에 대한 삭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외로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

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하에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시위 현장인 도로상이었고, 원고가 ‘○○○의 교회’ 신도로서 그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피켓을 제작·지참하여 시위 현장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진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 기관에 의해 촬영·보도된 것으로서 촬영 또는 보도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각 사진 또는 기사의 내용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사진의 촬영·게재 행위에 의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별지 제3, 4, 5, 7목록 기재 각 기사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별지 제6목록 기재 기사에 대해서는 “위 기사가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상 비록 위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5월 27일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합41071 손해배상(기)

원 고 : 오○○

피 고 : 1. 이○○
2. 뉴스앤조이

변 론 종 결 : 2009. 8. 26.

판 결 선 고 : 2009. 10. 1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뉴스앤조이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www.newsjoy.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본문 열한 번째 단락(“실제로 이 사건을 보도한”으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열다섯 번째 단락(“거센 반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로 끝나는 단락)까지 부분을 삭제하라.

나. 피고 뉴스앤조이가 위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뉴스앤조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뉴스앤조이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www.newsnjoy.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뉴스앤조이가 위 각 기사를 삭제할 때까지 매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가 위 삭제를 구하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변경신청서 및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에 따르면 위 삭제를 구하고, 이를 전제로 그 불이행시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2 내지 4, 제9호증, 제14호증, 제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 ○○회 ○○○의 교회', 줄여서 '○○회'라고도 함, 이하 '○○○의 교회'라 한다)'의 신도이다.

2) 피고 뉴스앤조이는 인터넷 사이트(www.newsnjoy.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주로 기독교 관련 기사들을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사이고, 피고 이○○은 위 뉴스앤조이의 이사 겸 편집장으로 별지 각 목록 기재 기사의 작성자이다.

나. 기사 작성 전후의 정황

1) 원고는 1993. 12. 17. 소외 정○○과 혼인하여 세 딸을 두었다.

2) 원고는 1998. 3.경부터 '○○○의 교회'에 다녔고, 소외 정○○은 '안산 ○○교회'에 다녔는데 소외인이 원고에게 '○○○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이니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원고와 소외 정○○ 사이의 불화가 시작되었다.

3) 소외 정○○은 원고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2000. 1.경과 같은 해 6.경 소외인의 폭행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친정에 가 있기도 하였다.

4) 소외 정○○은 원고의 부모·형제를 설득하여 그 동의를 얻은 다음 2000. 12. 27.경 자신이 다니는 안산

○○교회에 원고를 데리고 가 위 교회 목사인 소외 진○○으로부터 이른바 개종 교육을 받게 하였고, 2000. 12. 31. 원고에게 종교적 망상의 의심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5) 원고는 2001. 3. 22.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01. 5. 9. 인지기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고 정신병적 징후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6) 위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소외 정○○은 감금방조, 진○○은 강요 및 감금방조, 의사 박○○은 감금 등의 죄로 2004.부터 2007.까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각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1) 피고 이○○은 원고가 위 정○○, 진○○ 등을 감금죄 등으로 고소한 무렵인 2001. 5. 14. ‘이단 사이비의 거센 역습’이란 제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3. 6. 15. ‘백주 대낮 종교단체 사이에 둔 가족 상잔’이란 제목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 2003. 6. 23. ‘봉천동 ○○회 건물 부근 2주 연속 북새통’이란 제목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사, 2003. 7. 7. ‘○○회 신도 대 시위대 세 번째 충돌’이란 제목의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사, 2003. 7. 12. ‘법원, ○○회 집회중지가처분 신청 기각’이란 제목의 별지 제5목록 기재 기사, 2006. 4. 14. ‘○○회 신도 입원 결정 의사 무죄 선고’란 제목의 별지 제6목록 기재 기사, 2009. 4. 5. ‘<월간조선>의 이단 띄우기’란 제목의 별지 제7목록 기재 기사를 각 작성하였다.

2) 피고 뉴스앤조이는 위 각 일자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뉴스앤조이 사이트에 피고 이○○이 작성한 위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기사는 제2목록 기재 기사에 첨부되었던 원고의 사진만 제외된 채 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 등의 인정 여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 대한 판단

1) 위 기사의 주요 내용

위 기사는 전체적으로는 기성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판단된 종교 단체들이 언론 등을 통해 기성 교단을 비판하고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그 중 ‘○○○의 교회’ 신도들이 이른바 이단 전문가인 소외 진○○과 자신들의 남편을 고소하는 등 대대적인 비난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본문 열한 번째 단락(“실제로 이 사건을 보도한”으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열다섯 번째 단락(“거센 반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로 끝나는 단락)까지에서 “오모씨(경기도 성남시 ○○구 ○○○동)”를 예로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소외 진○○이 자신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회 여

신도 오모씨(경기도 성남시 ○○구 ○○○동) 등 수백 명의 ○○회 신도들로부터 집단적인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다는 부분, ② 소외 진○○은 가족들 스스로 의논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오모씨(경기도 성남시 ○○구 ○○○동)의 남편인 소외 정○○도 부인이 ○○회에 다니면서 말 못할 가정 파탄을 겪었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친정 가족들의 동의하에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며 진○○의 반박에 동의하고 있다는 부분, ③ 위 정○○은 또한 부인 오씨가 1년 동안 세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한 것은 물론 ○○회 출석을 막는 것에 항의해 1달 동안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않은 채 방 안에서 꼼짝도 않는 시위(?)를 하는 등 참으로 겪을 수 없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④ 현재 오씨를 포함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회 여신도는 3명으로 이들은 대개 진 목사와 남편 등을 법원에 고소하는 한편 이혼 수속까지 밟을 태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 측은 여신도들의 가정파탄 사태의 책임을 진 목사와 남편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반 여론까지 등에 업고 기성 교계를 향해 거센 반격을 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2) 명예훼손 여부

원고는 위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의 전체적 취지 및 문제되는 각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기사는 위 기사를 읽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과 주소, 남편의 실명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원고가 이른바 이단 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르러 남편인 정○○을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들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소외 정○○, 정□□은 물론 ‘○○○의 교회’ 측 인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기사가 소외 정○○, 정□□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전달한 이상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는 전문 형태로 원고가 이단 종교에 빠진 것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들은 위 사실들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정○○의 갈등 및 원고가 집을 나가 있었던 데에는 소외 정○○의 개종 강요와 폭행 등도 주된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소외 정○○, 진○○ 등의 주도하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바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들이 정○○ 등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2목록 기재 기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의 교회’ 앞에서 위 교회로 인해 가정 파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려는 사람들과 위 교회 신도들 사이, 특히 가족 관계인 시위대와 신도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위 기사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본문 중 ① “시위 진행 과정에서 ○○회 신도 중 시위 참가자들의 전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여성 혹은 혈육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들의 시위를 가로막았으며, 한 여성은 전 남편의 실명과 ‘정신차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까지 들고 시위 현장을 누볐다.”는 부분(본문 네 번째 단락 첫 문장)과 ② “○○회 여성신도가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전 남편의 이름을 쓴 피켓을 들고 시위대에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원고의 사진(제목과 본문 사이의 첫 번째 사진으로 원고의 얼굴이 나타나 있다, 이하 ‘제1사진’이라 한다) 및 ③ “이 여성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은 전 남편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는 뜻이다.”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원고의 사진(본문 뒤 두 번째 사진으로 원고의 상반신과 피켓이 나타나 있다, 이하 ‘제2사진’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의 위 각 사진은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게재되었는데, 2004. 11. 19. 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의 이후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8.경 위 기사에서 삭제되었다.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기사의 전체적 취지 및 문제되는 각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위 기사가 ‘○○○의 교회’ 신도인 원고와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정○○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초상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각 점, 즉,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반드시 그 지점의 소유나 관리형태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집회·시위가 사적 영역이면서도 통상은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성격상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일반인들이 통상은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시위 현장인 도로상이었고, 원고가 ‘○○○의 교회’ 신도로서 그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피켓을 제작·지참하여 시위 현장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진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 기관에 의해 촬영·보도된 것으로서 촬영 또는 보도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각 사진 또는 기사의 내용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사진의 촬영·게재 행위에 의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위 각 사진이 당초 전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게재되었고 제1사진의 경우 원고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사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제7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사 이외에도 2003. 6. 내지 7.경 ‘○○○의 교회’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의 충돌에 관하여 수 회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들에는 원고에 대한 사실적시 등이 전혀 없어 일련의 기사들이 합해져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제3, 4, 5, 7목록 기재 각 기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기사의 경우 ‘○○○의 교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별론으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제6목록 기재 기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 중 “○○○ ○○회 ○○○의 교회측 신도 0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 “판결문에 따르면 0씨는 맹목적으로 종교에 집착을 하고 물건을 교회에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는 등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위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하였던 의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취지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기사가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상 비록 위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본문 열한 번째 단락(“실제로 이 사건을 보도한”으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열다섯 번째 단락(“거센 반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로 끝나는 단락)까지 부분은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사 중 위 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위 기사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 뉴스앤조이는 위 기사 중 위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별지 제2목록 내지 제7목록 기재 각 기사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는 2001. 5. 14. 처음 등록된 이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줄곧 게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로서도 위 기초사실에 게재된 각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는 위 기사의 전제가 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이트는 주로 기독교 관련 기사들을 게재하는 인터넷

넷 신문 사이트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야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하고, 또한 피고 뉴스앤조이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까지 위 기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1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뉴스앤조이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위 기사 중 본문 열한 번째 단락부터 열다섯 번째 단락까지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뉴스앤조이가 위 기간 내에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뉴스앤조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7〉 제1목록~제7목록(기사내용)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5

원고가 명시적인 취지 및 인터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인 원고의 실명 및 초상의 공개는 이 사건 방송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62527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9년 11월 24일 박○○가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2008년 7월 26일 MBC <뉴스 후> 프로그램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 방송의 취재·보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내용은 변호사인 원고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공개하면서 옥션 정보 유출사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원고의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취재과정에서의 행위가 기망 혹은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취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므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권,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방송은 그 자체로서 설명적 기능을 가지면서 실감나는 영상에 의해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여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여부와는 따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실명이 공개된 변호사들과는 달리 명시적인 취지 및 인터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방영한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방송에서의 소개 및 해설 내용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취지와 흐름상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피고로서는 굳이 원고의 실명이나 사진을 방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의도한 목적과 취재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일부 언론매체에 몇 차례 집단소송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 및 초상의 공개는 이 사건 방송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고 또한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단62527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피 고 : 김○○

변 론 종 결 : 2009. 10. 20.

판 결 선 고 : 2009. 11. 24.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2008. 9. 17.까지 연 5%,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보도 제작국 소속 기자로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 후」를 취재·보도한 담당기자이다.

나. 「뉴스 후」의 2008. 7. 26.자 방송 내용

(1) 방송의 개요와 피고의 역할

㉠ 위 프로그램은 2008. 7. 26. 토요일 21:40경부터 22:40경까지 60분 동안(전체 프로그램 중 광고 등을 제외한 실제 방송분량은 약 45분 50초 정도이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운영하는 MBC에서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중간에 옥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관한 부분은 약 19분 정도이다.

㉡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는 주 진행자 혹은 전담기자로 출연하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 또는 해설을 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제보자나 사건당사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위 방송의 취재·보도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원고가 등장하기 이전의 방송 내용

㉢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토로하는 소송의뢰인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실제로 수임료를 제시

하는 현장 화면을 보여주고, 뒤이어 이러한 수입료의 사용처와 산정기준, 이로 인한 피해구제 수단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뉴스 후」가 알려주겠다는 해설과 함께 피고가 등장한다.

(나) 피고는 이전의 2008. 7. 12.자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부제 ‘두 얼굴의 변호사들’ 이후 시청자들이 의견이 쏟아졌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없는 변호사 수입료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다는 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다) 이후에는 재차 형사피고인이었거나 민사소송의 당사자였던 사람들과의 인터뷰 및 재차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듯한 변호사나 사무장의 수입료 제시 현장화면(이 때에는 해당 변호사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고, 촬영대상자를 알 수 없도록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함)의 재생을 통해 구체적인 변호사 수입과정과 경위, 수입료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 및 수입료 액수의 과다함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이어서 변호사 수입료에 관한 국세청 내부자료에 대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준 다음, 다시 스튜디오에서 피고가 등장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규칙상 수입료 과다책정의 경우 별다른 기준과 제재수단이 없음을 설명하는 등 변호사 수입료에 관하여 지속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3) 원고가 등장하는 방송 내용

(가) 한편, 원고가 등장하는 대목은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다수의 정보유출 개인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입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시작 후 15분 08초 가량이 경과한 부분부터 시작되어 불법 업로드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에 관한 부분이 시작되는 19분 08초경까지 약 4분간의 분량이고, 그 중 원고가 등장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시작 후 약 16분 33초경부터 약 17분 22초경까지 약 50초간이다.

(나) 원고가 등장하기 이전의 프로그램 내용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인터넷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겠다는 변호사들의 카페가 다수 생겨났는데, 그 수입조건과 관련하여 소송참가비, 즉 착수금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20~30%를 받겠다는 변호사들의 수입료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소송참가비를 1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변호사의 경우 착수금 8억 원에 이르고,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성공보수금까지 합쳐 150억 원 정도를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소송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다) 뒤이어 피고가 직접 원고의 사례를 들며 원고가 참가비 3만 원에 성공보수 30%를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원고와 계약한 피해자가 2만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 후, 원고의 경우 소송참가비만 6억 6,0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의 청구금이 모두 승소하였을 경우에 성공보수는 132억 원에 이르며, 다른 정보유출 소송에서 인용되었던 승소금액 20만 원으로 따져보더라도 원고가 받는 돈은 13억 원이 넘는다는 해설을 한다.

(라) 그러는 와중에 원고와 관련한 두 가지 내용의 자막이 뜨는데, 첫 번째는 작은 박스 형태로 ‘박○○ 변호사 보수조건’이라는 제목의 자막으로, 그 내용은 ‘소송참가비(착수금) 3만 원, 성공보수 30%’라는 내용으로서 그 노출시간은 약 4초간이고, 두 번째는 ‘승소시 변호사 총수입료,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 × 2만 2천명 = 약 6억 6천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 × 2만 2천명 × 30% = 약 132억, 총 138억 6천만 원’이라는

자막이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그 노출시간은 약 10초였다.

(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피고의 멘트와 함께 다음 화면으로, 원고의 실명과 얼굴이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 방송사의 성우로 추측되는 사람의 목소리로 원고의 반박 내용을 대독하면서 그 반박 내용이 자막에 나타난다.

(배) 그 대독 및 자막의 내용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보수에 비해 턱없이 적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소장 내고 앞으로 관리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라는 것이다. 그 자막의 노출시간은 약 12초간이다.

(4) 원고 등장 이후의 방송 내용

(가) 원고에 대한 수입료 내용에 뒤이어 ‘옥션’ 정보유출 소송을 맡은 다른 변호사들의 실명 및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실명과 함께 직접 피고와 인터뷰를 한 현장 화면이 나오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이나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대리변호사(김□□, 설○○)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활동에 비해 수입료의 액수가 과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직접 위 옥션사건의 소송대리를 하지 않은 변호사(최○○)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면서 다른 주제인 불법 업로드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의 내용으로 넘어간다.

(나) 원고에 뒤이어 나오는 김□□ 변호사의 경우 화면에 ‘김□□ 변호사의 보수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1만 원, 성공보수 20%’라는 내용의 자막이 뜨고, 그 노출시간은 약 5초간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6. 2.경부터 피고의 취재의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나 인터뷰 거절의사를 완곡히 표시하였고, 그 이후 2008. 6. 30.경 이루어진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앞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실명과 사진과 함께 등장한 자막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있으나, 그 다음날인 2008. 7. 1. 제3자를 통해 취재나 인터뷰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갑 3(을 6), 을 1의 각 기재, 을 3의 19의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복사한 CD(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 결과,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피고가 원고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취재목적과 녹취 여부를 은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가 인터뷰를 거절하자 그 사실을 이 사건 방송에 내 보내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고, ②원고가 피고의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이 사건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③피고는 기자로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는 성공보수가 없는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보도를 하고 소송참가비와 착수금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착수금 전부를 변호사가 받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를 옥션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에서 과중한 성공보수를 받는 부도덕한 변호사로 묘사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은 법률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천차만별인 변호사 수입료의 실태와 합리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제작·방송된 것으로, ①피고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 목적을 기망하거나 원고를 협박한 적이 없으며, ②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③성명권,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실명 공개는 원고의 동의에 따른 것이었고 원고의 성명과 사진의 공개는 원고에 대한 사실보도를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성명권,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미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다룬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취재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피고의 기망 혹은 협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갑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취재과정에서의 행위가 기망 혹은 협박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의 보도내용이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과중한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는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은 법률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천차만별인 변호사 수입료의 실태와 합리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의도로 제작·방송된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가 지급받은 착수금 3만 원 중에 인지대가 40~50%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막으로 ‘소송참가비(착수금+소송비용) 3만 원’이라고 보도하여 3만 원 가운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점, 성공보수 방송 부분도 약 132억 원이라는 성공보수액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약정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위 방송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한 점,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가 ‘외국에도 이런 성공보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와 관련된 옥션정보유출 소송과는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원고에 대한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방송내용이 진실하였으

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명권,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한편, 성명권과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성명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것인데,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의 초상의 촬영,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러한 실명과 초상의 공표는 대상자의 성명권과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가 없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실명과 함께 얼굴을 방영하였고, 원고로서는 명시적인 거부사에도 불구하고 옥션 정보유출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과중한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대목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공표됨으로써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성명과 사진의 공개는 원고에 대한 사실보도를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성명권,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미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방송은 그 자체로서 설명적 기능을 가지면서 실감나는 영상에 의해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여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여부와는 따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방송사가 대상자의 실명이나 초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실명과 초상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실명이 공개된 변호사들과는 달리 명시적인 취지 및 인터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방영한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방송에서의 소개 및 해설 내용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취지와 흐름상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피고로서는 굳이 원고의 실명이나 사진을 방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의도한 목적과 취재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일부 언론매체에 몇 차례 집단소송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 및 초상의 공개는 이 사건 방송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고 또한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

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취재 및 방송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형식,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노출된 시간,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된 불법행위일인 200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08.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생활 침해 사례

사생활 침해 사례 1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원고 및 간첩혐의와 무관한 사적 사항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09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4548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9년 1월 14일 구○○ 외 2명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면서 “피고는 원고 구○○에게 2백만원을, 원고 김○○에게 4백만원을, 김□□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6년 10월 27일, 30일, 31일자 조선일보에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손○○, 최○○의 실명, 사진 등 인적사항을 보도하였고, 이에 각 혐의자의 처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의 가족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고,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고는, ① 이○○의 사업체 운영상태에 관한 위법한 보도로 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 등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② 손○○의 실명과 얼굴 사진, 사업체의 소재지와 운영상태에 대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원고 김□□의 간첩 유죄판결 전력 등 최○○의 간첩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적인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최○○, 원

고 김□□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피의자들에 대한 위 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들의 처인 원고들 또는 원고 김□□가 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5월 14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4일 “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백만원을,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 김□□에게 3백만원을, 피고 중앙일보가 원고 구○○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9~140면 참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중앙일보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14093 손해배상금(기) 등

원 고, 항 소 인 : 1. 구○○

2. 김○○

3. 김□□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10. 1.

판 결 선 고 : 2009. 1.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구○○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09.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김○○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2008. 1. 4.까지 연 5%의,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2009. 1. 14.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김□□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2008. 1. 4.까지 연 5%의,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2009. 1. 14.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소의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의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연대하여 원고 구○○에게 29,000,000원, 원고 김○○에게 28,000,000원, 원고 김□□에게 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4, 8호증, 을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구○○은 이른바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출판사 ○○○의 사장이자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전 ○○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미 문화원 점거사건의 참여자)의 처이고, 원고 김○○은 같은 사건 및 혐의로 구속된 손○○(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논술학원 운영)의 처이며, 원고 김□□는 같은 사건 및 혐의로 구속된 최○○(민주노동당 창당멤버이자 사무부총장)의 처이며, 피고는 발행부수 200만 부 정도의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내용

피고는 2006. 10. 26. 이○○, 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고, 같은 달 27. 최○○이 추가로 체포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이하 이○○, 손○○, 최○○을 총칭할 때는 ‘피의자들’이라고 하고, 아래의 보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

(1) 2006. 10. 27.자 A04면 전체

386 운동권출신 간첩혐의사건, 정치권·재야 10여명 적힌 ‘포섭리스트’ 압수라는 큰 제목하에,

① ‘드러난 간첩혐의’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기사내용보다 큰 글씨로 ‘이○○이 베이징서 북공작원 만나는 사진도 확보’, 기사내용과 같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민노당 최○○·이○○씨가 핵심’이라고 적고, 아울러 ‘386운동권 출신 간첩혐의사건 흐름도’라는 제목의 도표(상단 중앙에 위치, 크기 가로 11cm, 세로 8cm)를 작성하여 피의자들의 출신대학교 및 나이, 학번을 공개하였으며, 이○○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상단 우측에 위치, 크기 가로 7.5cm, 세로 15cm)을 게재하고,

② ‘추가체포 최○○ 부인 · 처남까지도 94년 간첩 유죄’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은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김□□씨다』라면서 나아가 원고 김□□의 실명과 유죄판결 전력을 보도하고(상단 우측 위치, 크기 가로 51cm, 세로 20cm),

③ ‘간첩’에 돈까지 주는 정부? 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간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같은 당의 최○○ 사무부총장이 정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생활비까지 지원해줬다는 지적을...』이라고 보도(하단 우측에 위치, 크기 가로 16.5cm, 세로 11cm)하였다.

(2) 2006. 10. 30.자 A05면 좌측

① 굵은 글씨로 ‘북, 주요 현안마다 개입시도’라는 제목으로 『일심회 회원이자 민노당 간부인 최○○은 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된 뒤 경위를 대북보고문으로 작성, 손○○ 등을 통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라고 보도(상단에 위치, 크기 가로 21cm, 세로 18cm)하고,

② ‘베이징 비밀아지트 동육화원서 북 공작원 접촉한 일심회 멤버’라는 제목의 도표로 피의자들의 실명, 얼굴사진, 나이, 직업을 게재(중단에 위치, 크기 가로 20.5cm, 세로 9cm)하였다.

(3) 2006. 10. 31.자 A08면 좌측(크기 가로 20.5cm, 세로 31cm)

‘간첩혐의 386 3인방 운영업체 가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① 중앙부분 기사 내용보다 굵은 글씨로 ‘이○○의 영어교재 회사, 외국인 강사 10여 명 고용, 일주일에 2~3번만 들러’라는 소제목으로 『서울 서교동 소재 실평수 25평의 사무실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120~130만 원 정도로, 올 3월 이○○이 들어오기 전에는 임대료가 비싸 6개월가량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작 본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렀다 가는 정도였다...』라며 이○○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하여 소재지, 운영실태 등의 구체적 정보와 함께 사무실 입구 사진을 게재하고,

② 기사 내용보다 굵은 글씨로 ‘손○○의 논술학원, 지난 2년간 매출 7억 넘어, 사업자금 출처 알려지지 않아’라는 소제목으로 『손○○은 서울 목동에서 논술학원을 크게 운영하면서 짹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규모의 학원을 열 경우 적어도 2억 원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매달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로 보면 지난 2년간 7억 원이 넘는 규모다...』라며 손○○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하여 소재지, 운영실태 등의 구체적 정보와 함께 논술학원이 입주한 건물의 정면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취재경위

피고는 2006. 10. 26.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1부를 통하여 피의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이 발표되자 수사기관의 발표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기초로 위 보도에 관한 취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손○○이 운영하던 각 사업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 등이 그들의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학원을 취재하여 위와 같이 보도하였다. 다만, 그 업체의 명칭은 이니셜로 표기하였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07노929)에서, 이○○은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손○○도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간첩으로 인한 부분과 잠입·탈출 및 그 교사,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최○○은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피고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들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간첩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취재도 하지 아니한 채 ‘간첩’, ‘간첩단’, ‘386 간첩 조직 일심회’ 등 피의자들의 간첩행위 등을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피의자들의 실명과 인적 사항 및 얼굴사진까지 게재하여 원고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의 가족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들에게 자녀들이 위 기사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특히 이○○, 손○○의 직업과 사업체의 소재지 및 구체적인 운영 실태, 원고 김□□의 종전 간첩죄 유죄판결 전력 등 위 사건과 무관한 부분까지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과 원고 김□□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이○○, 손○○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고 구○○, 김○○ 등 가족들에게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이 피의자들의 명예 등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각 기사는 이른바 국가의 존립이나 사회안녕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간첩단’ 사건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수사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 이상 기사내용에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사생활 침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피의자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 직업이나 사업체의 소재지 및 운영실태 등 사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피의자들이 간첩단의 일원으로서 간첩행위,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였음을 암시하거나 단정하고, 이○○, 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출처와 사업에 전념하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그들이 마치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업보다는 간첩활동에 치중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발생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생명이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간첩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간첩죄와 관련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도 함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 피의자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기는 하나 피의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고통은 가족들 특히 배우자도 함께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경험적상 배우자에게도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로 피의자들뿐 아니라 원고들에게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최○○의 보도와 관련하여 굳이 그의 간첩혐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밝혀진 바 없는데도 그의 처인 원고 김□□의 간첩죄 유죄판결 전력을 함께 언급한 것은, 한편으로 최○○의 사생활에 대한 동의 없는 보도에 해당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원고 김□□가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과거 전력이 실명과 함께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원고 김□□ 자신의 성명권이나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2) 공공성과 공익성

(가) 인정되는 부분

이 사건 각 기사는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하였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①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다만,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은 ○○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의 전력이 있고, 1985년의 미 문화원 점거사건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386’ 세대의 전면에서 이념투쟁을 주도하였던 사람이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으로 공식적인 정당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영어교재를 발간하면서도 대중 앞에 자신의 위와 같은 경력을 당당히 소개할 정도로 자신의 이념적 주장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드러낸 사람인 점에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최○○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서 공식적인 정당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의 공적인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라는 점에서 공적 인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최○○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실명보도가 허용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의 동기가 없더라도 신원을 특정하는 범위 내에서 얼굴 사진의 게재와 기본적인 사회 경력의 공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실명보도나 얼굴 사진의 게재 및 기본적인 사회 이력의 공개에 관한 보도는 공공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손○○은 대학시절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공적 활동을 한 바 없고 식당이나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가 적시한 간첩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손○○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물론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에서 기사 작성상 범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는 사실 특정이 곤란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재발 방지 또는 이를 위한 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손○○의 신원 공개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에 대한 보도 부분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실태 등의 보도 부분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이 공적 인물이므로 그 신원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사회경력의 소개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혐의사실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재지와 상세한 운영실태까지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이○○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거나 그가 사업체의 운영에 전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보도는 그 진실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끝으로, 원고 김□□ 역시 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다루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도 아닌 점에서, 또한 최○○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처에 관한 사적 사항이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 김□□의 성명이나 과거 유죄판결 전력을 남편인 최○○의 혐의와 관련하여 함께 보도한 것 역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손○○과 원고 김□□와 관련된 보도 부분, 이○○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도부분의 공공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이○○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의 간첩죄를 암시하는 듯한 피고의 보도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으로 인하여

극도로 보안이 유지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달리 사실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청구된 구속 영장의 기재를 기초로 간첩혐의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나중에 이○○의 다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내용이 통신·회합, 잠입·탈출 등 바로 간첩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외형을 가진 것들일 뿐 아니라,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는 증거부족에 따른 것일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에 대한 간첩죄 부분 보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최○○은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그렇다면, 피고는, ① 이○○의 사업체 운영실태에 관한 위법한 보도로 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 등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② 손○○의 실명과 얼굴 사진, 사업체의 소재지와 운영실태에 대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원고 김□□의 간첩 유죄판결 전력 등 최○○의 간첩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적인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최○○, 원고 김□□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피의자들에 대한 위 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들의 처인 원고들 또는 원고 김□□가 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내용 및 기사의 크기, 그 표현방법, 피고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에 이○○, 손○○의 경우 그들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실태가 소재지와 함께 상세하게 보도됨으로써 그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의 일부 청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의자들이 아닌 그 배우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구○○에게 2,000,000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구○○에게 2,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김○○에 대한 2,000,000원, 원고 김□□에 대한 금 3,000,000원에 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6.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

급을 명하는 원고 구○○, 김○○에 대한 각 2,000,000원, 원고 김□□에 대한 1,000,000원에 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6.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판결문

사 건 : 2009다14548 손해배상금(기)등

원고, 피상고인 : 1. 구○○

2. 김○○

3. 김□□

피 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093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원고가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명과 주소를 낱말로 밝히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7가소297921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1월 16일 정○○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십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2004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소개하면서, 청구인 중 1인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를 그대로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실명과 주소는 사적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의 보도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부터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 사건의 내용이 이를 청구한 개인의 인적 사항과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기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게재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청구인의 실명과 주소는 삭제하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실명과 주소, 특히 개략적인 것이 아닌 세부적인 주소를 낱말로 밝히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소297921 손해배상(기)

원 고 : 정 ○ ○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변 론 종 결 : 2008. 10. 17.

판 결 선 고 : 2009. 1. 16.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0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값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이라 한다)의 청구인 중 1인이고, 피고들은 각각 발행부수 150만 내지 200만 부 정도의 ‘동아일보’와 발행부수 200만 부 정도의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주요 언론사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내용

피고들은 2004. 10. 22.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그 전날 내린 결정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위 사건의 결정문의 전문을 각각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게재된 결정문에는 청구인 중 1인으로서의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는 무관한 소송인 점, 위 헌법소원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서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공인이라 볼 수 있는 점,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점, 피고들은 위 결정문을 게재한 이외에 원고 개인에 관하여 보도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원고는 2004. 10. 22. 위 보도내용을 알았고 이 사건 소장은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채로 2007. 10. 22. 위 피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이 '2007. 7. 22.'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07. 10. 22.'의 착오인 것으로 보임)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원고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에 인지를 첩부한 것은 2007. 11. 8.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보도내용을 안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사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영역은 ①인간자유 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 '내밀영역', ②사회통념상 이성적인 평가를 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보도할 수 없는 '비밀영역', ③가족 및 가정과 친구나 친지와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이익형량에 의하여 공표할 수는 있으나 익명 보도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사적 영역', ④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서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사회적 영역', ⑤모든 사람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되어야 할 인간생활영역으로서 보도가 자유로운 '공개적 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 이른바 사적 사항은 그것이 위 인격영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별기준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실명과 주소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사적 사항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들의 보도행위가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사적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①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 즉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되는 것에 의하여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 ②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일 것임을 요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은 그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여러 이익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실

명과 주소가 알려지는 것에 관하여 다소간의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공개를 바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그 당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행위는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사적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이라도 그 시대의 초점이 되는 인물 또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경우에는 그의 사적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란 건전한 기준을 가진 공중의 합리적인 구성원이 통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로서, 그 해당여부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는 당해 개인의 활동상황과 공표되는 사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부터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 사건의 내용이 이를 청구한 개인의 인적 사항과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 기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게재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청구인의 실명과 주소는 삭제하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실명과 주소, 특히 개략적인 것이 아닌 세부적인 주소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소제기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 제출시에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흡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흡이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효과를 가져오는 소제기의 시점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흡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2007. 10. 20.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 사건 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이 이 법원 민사소액과에 접수된 2007. 10. 22.이 아니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당직실에 접수된 2007. 10. 20.로 보아야 할 것임) 위 시점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동

아일보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피고들이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각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20.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생활 침해 사례 3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7가단83352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년 4월 21일 전○가 씨제이티브이엔 주식회사와 소속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씨제이티브이엔은 2007년 4월 3일 tvN <옥주현의 나쁜여자>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한 번에 35명까지 사귀 경험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을 하고 원고의 이름 및 나이, 사진까지 공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한 번에 35명까지 사귀 경험이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을 하고 원고의 이름 및 나이, 사진까지 공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소외 최○의 질문에 응답하고, 그 사진과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실명과 나이까지 그대로 공개되고, 특히 ‘바람기가 다분한 관상을 타고 난 사람들입니다’, ‘눈썹이 눈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서 이성을 사랑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처럼 사귀다’, ‘눈썹과 눈이 지나치게 가깝다’, ‘콧구멍이 앞에서 보인다’라는 자막과 함께 그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은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단83352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 ○

피 고 : 1. 씨제이티브이엔 주식회사

2. 황○○

변 론 종 결 : 2009. 3. 17.

판 결 선 고 : 2009. 4. 21.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 씨제이티브이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부른다)는 “tvN” 방송 채널의 운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황○○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육주현의 나쁜여자” 2회분의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을 제작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여성을 사권 남성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조작가인 소외 최○○의 설문조사에 응한 후, 방송을 허락하였고, 그 사진과 프로필이 게재되어 있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위 최○○이 링크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2007. 4. 3. 피고 회사의 “tvN”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방송중지 및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07. 5. 23. 피고 회사와 관계 회사인 “올리브티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방송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마. 위와 같이 방송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중간에 원고의 사진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그 사진 밑에 원고의 이름과 나이, “한번에 35다리!”, “절대지존 최강 바람둥이” 등의 내용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07. 10. 18. 피고 황○○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으로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스스로 여러 명의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승낙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아이템 선정, 구성 및 제작, 방영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해와 동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인격을 매도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

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한 번에 35명까지 사귀 경험에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을 하고 원고의 이름 및 나이, 사진까지 공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자인한 2회에 걸친 방송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 최○○의 설문에 응답하고, 그 사진과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실명과 나이까지 그대로 공개되고, 특히 “바람기가 다분한 관상을 타고 난 사람들입니다”, “눈썹이 눈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서 이성을 사랑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처럼 사귀다”, “눈썹과 눈이 지나치게 가깝다”, “콧구멍이 앞에서

보인다”라는 자막과 함께 그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은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자체는 허락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까지 제공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경위와 방송 내용, 방송시간 및 방송 후의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된 날 이후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8. 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로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여 얻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어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는 2009년 9월 10일 이○○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1년 7월 4일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죽음 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 제목으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사장으로 있던 이○○씨의 횡령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실명공개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태에 관하여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그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실명이 공개된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가능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5년 9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2006년 12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다71 손해배상(기)

원 고, 상 고 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김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561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9. 10.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및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나.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범죄사건 보도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 범죄 사실과 함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도 내용이 범죄사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언론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며,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도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

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가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01. 7. 4. ‘피디(PD)수첩’을 통하여 ‘죽음 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이라는 제명(題名)으로 방영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김○○이 사금고인 ○○상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한센병환자들의 정착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한 것으로서, 원고의 범죄혐의 사실을 공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감시·고발에 중점을 둔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인 점,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상조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여수신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 임직원들의 거액의 배임·횡령 및 부실대출, 예금기장 누락과 예금잔고 소진 등으로 인하여 정착촌 주민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며 일부는 양돈업도 그만두게 되는 등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조회 회원이었거나 임직원 이었던 3명이 자살을 기도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회·경제·문화적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고 실제 다른 언론 기관들도 이미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일부 언론기관들은 ○○상조회에서 다액의 예금이 없어진 사실과 전임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도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발생한 기간 동안 한센병 환자 등을 상대로 사금융업을 하여 온 ○○상조회의 최고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그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다른 ○○상조회 직원 2명도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조회의 명칭과 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언급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공개가 불가피해 보이고, 이에 더하여 주민들이 원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하는 장면 등을 방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실명이 간접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심각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당사자들과 담당경찰관 등에 대한 다방면의 취재결과 등을 토대로 ○○상조회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의 의혹이 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태에 관하여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그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상조회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원고의 실명이 나타난 영상 등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를 특정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방영하였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원고에 관한 범죄혐의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문제와 원고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가중되는 법익침해의 위법성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성이 있고 그 방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명이 공개된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익명보도의 원칙이나 사생활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을 사용한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명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별도로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명권 침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거절하는 원고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음성이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신용훼손 사례 1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피고와 부제소합의하고 후속방송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그 구성원인 원고가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조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9가합6395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09년 6월 9일 서울경기두부류및묵류제조업협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제소합의한 조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9년 1월 3일 KBS <스펀지 2.0> 프로그램에서 『두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재래식 두부는 천연간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나,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두부는 인체에 유해한 ‘실리콘소포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9년 1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서울조정19)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두부의 긍정적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고 그 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9년 3월 14일 위 프로그램에서 『새봄맞이 동물스펀지』라는 제목으로 달팽이가 두부를 먹으면 달팽이집이 커지고, 두부가 사람의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피고의 위 후속방송이 이 사건 조정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이를 구성원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조정결정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방송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위 조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09. 3. 14.자 후속방송이 이 사건 조정 취지에 미흡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합6395 정정보도
 원 고 : 서울경기두부류및묵류제조업협동조합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 2009. 5. 26.
 판 결 선 고 : 2009. 6. 9.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KBS 2TV '스펀지 2.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방송 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3. 18:35경 KBS 2TV '스펀지 2.0' 프로그램에서 “두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재래식 두부는 천연간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나,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두부는 인체에 유해한 ‘실리콘소포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

나. 한국연식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9. 1. 15.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으로 언론조정 신청을 하여, 2009. 1. 29. 피고는 한국연식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게 2009. 3. 14. 까지 위 ‘스펀지 2.0’ 프로그램에서 ‘① 식품영약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두부의 장점, ② 두부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명(두부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약청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내용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서 사용된다는 내용), ③ 두부의 긍정적 효과 안내(두부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내용과 가능한 범위 내 해외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방송을 이행한 경우 한국연식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2009서울조정19)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09. 3. 14. 위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새봄맛이 동물스펀지”라는 제목으로 달팽이가 두부를 먹으면 달팽이집이 커지고, 두부가 사람의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4,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원인 사실 및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9. 3. 19. 이 사건 후속방송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고 위 소 제기를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09. 3. 14.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조정결정에 따라 두부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내용 등의 후속방송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과 같은 원고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조정결정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방송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위 조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09. 3. 14.자 후속방송이 이 사건 조정 취지에 미흡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신용훼손 사례 2

이 건 기사는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부족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133(병합) 판결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09년 9월 29일 ○○○○ 주식회사가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2,881,47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언론사는 2009년 1월 29일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 제목으로 ○○○○이 공업용 유기화합물인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수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유가공 제품의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날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 외에도 2009년 1월 29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 멜라민 의심 분유 사실상 은폐』, 『○○, 먹을거리 안전인식 도마에』, 『네티즌 “믿고 먹었는데..” ○○ 비도덕성 맹비난』, 『방사능 · 사카자키균 · 멜라민. ○○은 식품파동 단골?』 등 이 사건 분유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45건의 후속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가 잘못된 기사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며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분유에 들어있으리라고 의심하는 멜라민 함량은 0.000099~0.00231ppm이다. 이러한 양의 멜라민은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 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멜라민 기준이 2.5ppm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조제분유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중국산 멜라민 분유로 인하여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유아가 의도적으로 혼합된 최고 2,650ppm의 고농도 멜라민에 노출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에

게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상당성을 부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합2126 손해배상(기)
2009가합2133(병합) 정정보도등

원 고 : ○○○○ 주식회사

피 고 : 1. 윤○○
2. 노○○
3.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 2009. 9. 1.

판 결 선 고 : 2009. 9. 29.

주 문 : 1.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30.자 윤○○ 기자 작성의「○○○○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fnnews.com’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윤○○ 기자 작성의「○○○○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30.자 윤○○ 기자 작성의「○○○○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fnnews.com>’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를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http://www.fnnews.com>’ (이하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윤○○은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 피고 노○○은 피고 회사 편집국 생활경제사회부 부장이다.

나. 멜라민은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업용 유기화합물로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물질이다. 중국에서는 2008. 9. 10.경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섭취한 4명의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뉴질랜드의 타투아(Tatua)사(社)로부터 분유의 원료인 우유 단백질 락토페린을 아래 표와 같이 수입하였다.

순 번	수입일	생산일	수입량
1차 수입분	2008. 5. 29.	2008. 5. 2.	90kg
2차 수입분	2008. 6. 23.	2008. 6. 11.	190kg
3차 수입분	2008. 9. 25.	2008. 6. 17.	200kg

원고는 1차 수입분 90kg중 38.4kg을 분유 108,309캔(이하 ‘이 사건 분유’라고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 나머자인 51.6kg은 2008. 9. 5. 및 2008. 9. 29.에 실험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라. 국내 언론들은 2008. 9. 30.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은 2008. 9. 30. 원고의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2, 3차 수입분에 대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하였다(1차 수입분은 위와 같이 모두 소비되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에 대하

여는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 3차 수입분에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차 수입분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2차 수입분은 물론 3차 수입분에 대하여도 폐기를 명하여 원고는 2008. 10. 17.에 2, 3차 수입분을 반송폐기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2. 13. 이 사건 분유 중 52,92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1. 29. 피고 윤○○이 작성하고, 피고 노○○이 편집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날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였다.

•제목: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혼란을 치른 바 있어 이번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 수출이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은 최근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제품 5만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으로 수출된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제품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을 함유한 분유 ‘○○○○○’다.

당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는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은 지난해 뉴질랜드산 480kg의 락토페린을 국내에 수입했으며 이 중 멜라민이 검출된 200kg과 불검출된 190kg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했으나 90kg으로는 ‘○○○○○’ 10만8000캔을 생산했다.

그러나 ○○○○은 문제의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5만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나머지 5만4000캔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베트남 간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 ○○○○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문제의 제품을 폐기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은 “해당 제품이 자체 조사나 식약청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1ppm 이하의 멜라민이 함유됐을 경우 측정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을 중단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제목: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

○○○○이 멜라민 검출 의심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국내 소비자를 피해 외국에 유통시켜 국제적 비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멜라민 파동 이후 안전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늘고 있는 국내 유업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지난해 6월 수입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락토페린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 완제품인 ‘○○○○○’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당시 타투아사에서 수입한 ○○○○의 락토페린 480kg 중 390kg을 수거해 폐기했다. 그러나 제품으로 생산된 90kg은 존치시켰다.

○○○○은 당시 90kg으로 ‘○○○○○’ 10만8000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5만4000캔을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수출금액으로는 6억원 안팎에 이른다. 이는 ○○○○의 연간 베트남 수출물량 50억원가량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규모다. 나머지 5만4000캔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문제의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을 뉴질랜드산에서 네덜란드산으로 교체하고 유산균 성분을 강화한 ‘○○○○○’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 것과는 달리 베트남 등지에는 문제의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이 과정에서 ○○○○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대답도 번복했다.

박○○ ○○○○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폐기 등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멜라민 파동이 잠잠해지자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은 수출을 통해 소진했다.

이번 ○○○○의 멜라민 의심 제품 수출은 국가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의 이번 수출은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무사히 비켜간 한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이 베트남과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부각돼 한국산 유제품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 수출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번 수출은 단일 기업의 도덕성을 벗어나 국가신뢰도 차원의 문제”라며 향후 한국산 유가공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사 이외에도 2009. 1. 29.부터 2009. 2. 11. 사이에 ‘○○ 멜라민 의심 분유 사실상은 폐’, ‘○○, 먹을거리 안전인식 도마에’, ‘네티즌 “믿고 먹었는데..” ○○ 비도덕성 맹비난’, ‘방사능 · 사카자키균 · 멜라민.. ○○은 식품과동 단골?’ 등 이 사건 분유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45건의 후속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10, 12 내지 15, 20 내지 2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2008. 9. 23. 락토페린 1차 수입분 90kg에 대하여 미국 FDA 공인방법에 의한 자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나) 원고는 위 1차 수입분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2008. 9. 28.부터 2008. 9. 30. 사이에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다) 식약청은 2008. 10. 2.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박○○는 2008. 10. 24.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건 분유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변웅전 의원의 질문에 “이것은 제품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유를 수출하기 전에 이 사건 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2008. 12.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에 이 사건 분유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식약청은 2009. 1. 30. 원고가 베트남 등에 수출한 이 사건 분유는 식약청 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 식약청의 2008. 10. 21.자 설명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1일 총 섭취량 중 음료와 주류를 제외한 고형식품이 모두 멜라민에 오염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를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멜라민 기준은 2.5ppm이다. 위 설명자료에 따른 각국의 멜라민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 가	대 상 식 품	기 준
중 국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홍 콩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미 국	분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	2.5ppm 이하
E U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대 만	모든 식품	2.5ppm 이하
영 국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뉴질랜드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일반 식품	2.5ppm 이하
	원료 식품	5ppm 이하
캐 나 다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 16, 17, 34, 35, 36, 43, 4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이□□의 각 증언

(3) 판단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도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함유하고 있는 분유’,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이 중단된 제품’, ‘폐기처리가 예정된 제품’, ‘문제의 제품’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과 유사한 국제분쟁을 야기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제목 및 본문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원고의 자체 검사와 외부검사 결과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에서 위 반론 등 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길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 등 앞서 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독자들이 받게 될 위와 같은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 등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 방법 기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멜라민 분유’ 또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인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① 내지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정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

① 타투아사는 2008. 9. 29. 자사 생산의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 결과 4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

하였는데, 원고가 타투아로부터 1차분 아포락토펜 90kg을 수입한 시기는 2008. 5. 29.로서 위 발표가 있기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08. 6. 23.에 2차로 아포락토펜 190kg을 수입하였는데 여기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1,2차 수입분의 생산일자 사이의 기간도 약 40일에 불과한바, 1차 수입분에도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분유와 이유식 생산에 첨가되는 락토펜의 양은 그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3~0.7%에 불과하므로 락토펜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만든 분유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락토펜에 멜라민 3.3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완제품에는 멜라민 함량이 0.000099~0.00231ppm이 된다. 현재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의 멜라민 검사장비의 검출한계는 1ppm 이상이고, 보다 성능이 좋은 검사장비로도 0.1ppm 미만의 멜라민을 검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락토펜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08. 10. 2.자 식약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7.부터 2008.까지 타투아사로부터 락토펜 390kg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390kg은 2차 수입분 190kg과 3차 수입분 200kg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2008. 9. 30.에 이루어진 식약청의 조사 당시 1차 수입분 90kg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9. 28. 멜라민 조사 대상을 중국 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분유 원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9. 29. 1차 수입분 중 남아있던 11.6kg을 미생물필터링 실험(10kg)과 용해도 실험(1.6kg)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시켜 버렸다. 이는 그 실험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만의 실험일 뿐 당국의 멜라민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황급하게 검사를 회피하고자 한 이유는 1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거나 적어도 멜라민 함유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⑤ 식약청이 멜라민 시료 등 검사 시험법을 식품업체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2008. 9. 26.인데, 원고가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8. 9. 21~9.23.은 식약청에 의한 검사시험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멜라민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당시 이 사건 분유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1차 수입분 원료에 대하여도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점, 자체 검사 결과를 기재한 제품검사성적서(갑5의 13 내지 15)는 시험성적서(갑5의 22 내지 24)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에도 그 일부 작성일자가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수입분에 대한 자체 검사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되는 함유량이 극히 소량 이어서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고 회사는 그러한 취지를 밝혀서 이 사건 분유가 위험한 분유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유에 들어있으리라고 의심하는 멜라민 함량은 0.000099~0.00231ppm이다. 이러한 양의 멜라민은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 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멜라민 기준이 2.5ppm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조제분유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중국산 멜라민 분유로 인하여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유아가 의도적으로 혼입된 최고 2,650ppm의 고농도 멜라민에 노출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손해배상 액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19,586,519,583원의 재산상 손해(= 매출감소 손해 19,064,638,111원 + 특별근무 손해 72,881,472원 + 광고비 손해 449,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재산상 손해의 일부인 70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재산적 손해

(가) 살피건대, 갑29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009. 1. 30.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근무를 시작하여 2009. 3. 26.까지 특별근무를 한 영업 1부문 전 조직원 136명에 대하여 총 72,881,472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추가 수당 72,881,472원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19,064,638,111원 상당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28의 1 내지 5, 갑3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449,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한 광고의 효과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30(가치번호 포함), 3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광고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분유는 유아들이 먹는 식품이라는 점, 멜라민은 식품에 절대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는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기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생산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기사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기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소비자들이 멜라민에 대하여 극히 불안해하던 시기였던바, 이 사건 기사의 영향력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분유가 식약청 조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사건 기사 보도 직후에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9.부터 2009. 2. 11.까지의 2주 동안에 무려 45건의 원고에 대한 의혹 기사 내지 비방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의 무형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는 2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272,881,472원(= 200,000,000원 + 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일 다음날인 2009. 1.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 1. 30.자 제1면에서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의 기사, 제14면에서 윤○○ 기자 작성의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 제품은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연구소에서 생산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고, 또

한 폐기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 수출한 분유를 ‘멜라민 분유’ 또는 ‘폐기 제품’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모욕 사례

원고를 시스템 늪은이·동물적 존재 등으로 지칭하고, 출연료만을 챙기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단2413 판결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10월 14일 지만원이 인터넷신문 미디어스 기자인 김○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 안○○은 각자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 송○○은 각 인터넷신문 미디어스의 기자들로서, 피고 김○은 2008년 11월 19일 『천사살인(날법한) 미수 모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의 기사를, 피고 송○○은 2008년 12월 20일 『[비추] 국민여동생에게 씌운 연좌제의 굴레, ‘빨치산 논쟁’ 지만원 글』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별지 4.의 기사를 게재하여,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해 지만원이 홈페이지에 적은 글을 비판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자 무리한 이념적 문제라며, “원고의 의혹제기는 문근영의 기부행위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문근영과 그 가족을 결과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일반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원고의 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김○이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를 시스템 늪은이, 몰아이, 동물적 존재 등으로 지칭하고, 원고가 출연료만을 챙기기 위하여 평화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김○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안○○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별지 4.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

사 건 : 2009가단2413 손해배상

원 고 : 지 만 원

피 고 : 1. 김 ○

2. 송 ○○

3. 안 ○○

변 론 종 결 : 2009. 9. 16.

판 결 선 고 : 2009. 10. 14.

주 문 : 1. 피고 김○, 안○○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 200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 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송○○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안○○ 사이에 생긴 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송○○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2008. 11. 13.경 언론에서는 ‘배우 문근영이 수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8억 5000여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곳에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나. 그런데 와이텐 뉴스 등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문근영의 기부행위 기사와 별도로 ‘문근영이 기부천사가 된 데에는 사회운동에 헌신적인 남다른 가족사가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로서 빨치산 경력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문근영은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는 등의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인터넷상에 전파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8. 11. 14. 별지 1.의 글을, 그 다음날 별지 2.의 글을 각 게재하였다.

라. 피고 김○, 송○○은 각 인터넷신문 미디어스의 기자들로서, 피고 김○은 2008. 11. 19. “천사살인(날법한) 미수 모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의 기사를, 피고 송○○은 2008. 12. 20. “ [비추] 국민여동생에게 씌운 연좌제의 굴레, “빨치산 논쟁” 지만원 글”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별지 4.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 안○○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스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1) 주장

원고는,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와이텐 등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문근영 외조부의 빨치산 경력을 미화하는 것을 보면서 좌익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지적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별지 1, 2의 글을 게재한 것일 뿐 문근영의 선행을 비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문근영의 선행에 찬물을 끼얹고 선행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공적인 의견표명에 대한 대응 내지는 비판의 의도로 반대취지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견표명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일반인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를 자초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래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비난하려 한 게 아니고 일부 인터넷 매체의 빨치산 미화 등을 지적하려고 한 의도였던 점은 어느 정도 수긍된다. 그러나 원고의 2008. 11. 14.자 글 중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라는 큰제목과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2005년 외할아버지가 죽기까지 빨치산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니 마음이 쓸쓸하다.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원고의 본래 의도를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문근영의 기부행위의 의미가 빨치산 외할아버지 때문에 퇴색되었다. 문근영이 빨치산 외조부에 의하여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라는 취지로 비취질 수 있는 점, 그로 인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원고의 주장을 ‘문근영의 가족사를 통하여 문근영과 가족들에게 사상적 비난을 가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기부행위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문근영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점, 또한 별지 2. 중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큰 제목과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표현과 별지 1.에서 ‘신윤복 역할을 맡은 이상한 배우’들로 규정지면서 별지 2.에서의 ‘문근영과 김민선 주연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신윤복을 띄우는 이유가,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는 것. 국가를 뒤엎자는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표현들을 보면, 원고는 ‘문근영의 선행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빨치산 미화를 확산시키려는 좌익세력의 음모이며, 나아가 문근영 띄우기가 신윤복 드라마와 영화를 연계되어 사회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자 무리한 이념적 문제제기이며, 원고의 당초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터넷매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목적'을 훨씬 뛰어넘은 것인 점, 원고의 주장대로 기부행위를 단순히 기부행위로 봐주지 아니하고 최초로 가족사와 연결시킨 것은 일부 인터넷매체였지만 위 가족사와의 연결보도는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돋보이게 하는 의미가 있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문근영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하여, 원고의 의혹제기는 문근영의 기부행위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문근영과 그 가족을 결과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일반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원고의 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모욕 부분

(1) 별지 3. 기사 관련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이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를 시스템 늙은이, 꼴아미, 동물적 존재 등으로 지칭하고, 원고가 출연료만을 챙기기 위하여 평화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김 ○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안○○는 연대하여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김○, 안○○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위 피고들의 관계, 위 불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를 2,000,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2) 별지 4. 기사 부분

살피건대, 별지 4.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초과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 안○○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 행위일 이후인 2009. 1.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 안○○에 대 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 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송○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1〉 참고자료1~2 생략

〈별지 3〉 기사내용1

천사살인(날 법한) 미수 ‘모욕’ 사건

심상치 않았다. 인터넷에 악플다는 일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겠지만, 분명 심상치 않았다. ‘광주좌익’, ‘빨치산의 손녀’ 따위의 문맥이 우르르 쏟아지는 일은 그리 평범한 풍경은 분명 아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조선일보>마저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들이 꺾기했던 날이었고, KBS가 시선을 360도 돌려버려 미네르바에 이어 아고라까지 돌아버린 그런 날이었다.

물론, 그 행위의 천사스러움은 비범한 일이다. 우익 악플러들이, 아니 우익 악플러들의 손가락질을 결정한 그 자가 ‘그 비범한 천사스러움’을 어찌 알 수나 있겠는가. 그건 손톱의 때만큼도, 정말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다. 그 자는 “광주사태는 17~22살 양아치 계급과 일부 시민, 학생들이 조직적인 선동에 놀아나 벌인 난동”이라 말하고, 김구 선생을 일컬어 “현대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나 마찬가지”라 칭하고, 심지어 “조선이 먹힐 것해서 일본에 먹힌 것 아닌가. 못나서 당해 놓고 일본을 원망한다” 따위의 사사로운 발언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이다. 그 자가 ‘그 비범한 천사스러움’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난리법석 날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시스템 클럽이란 뭔가 하는 음습한 시시껄렁함을 운영하는 그 늙은이가 일큰하게 술이라도 걸친 듯 심상치 않은 문맥으로 인터넷에 올랐다. 당시, 인터넷에 악플 자리는 비어있었고,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기사는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 시스템 늙은이는 폴아일랜드만의 전용 카드인 ‘연좌제 하나면 충분해’ 카드를 사용한다. 광주 좌익과 빨치산을 옵션으로 하는. 그 시스템 늙은이는 급하게 ‘좌익 여동생’을 주문했다. 그를 따라 잇따라 인터넷에 오르게 된 오른손잡이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더군. 그들은 결단코 후에 있을 조선일보의 날카로운 배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렇게 ‘좌익 여동생’을 퍼 날랐다. ‘연좌제 카드’를 사용한 시스템 늙은이의 악플강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시스템 늙은이와 우익 신문의 얹은 우애마저 치명적으로 갈라놓게 된 눈물의 씨앗이었지.

그렇다. 언제나 문제는 사소하고 아주 개인적이지만 또 언제나 늘 정치적인 것이다. 시스템 늙은이는 조선일보의 놀림에 발끈하여, 현재의 상황이 좌익 인민재판임을 주장하며 오늘 아침 성큼성큼 라디오로 걸어 나갔다. 글쎄, 그걸 뭐라 해야 할까? 출연료를 챙기기 위한 한 인간의 숭고한 결음. 아니면 집단적 따돌림과 그로 인한 고독을 존재 입증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헛소리. 그것도 아니라며 시대의 뒷자리 귀퉁이 어딘가를 멍하니 뭉개고 앉아있는 사물적 존재가 아닌 동물적 존재로서의 자기 웅변이랄까. 하여간 그 시스템 늙은이와 오늘 아침 라디오는 그렇게 하찮았다.

〈시스템 늑은이〉 “이러저러하니, 이래저래 하니 … 모략이고 좌익세력에 의한 인민재판을 중단해주세요.”

〈라디오 진행자〉 “이러저러하니, 이래저래 하니 …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시죠.”

이제 됐으니 재판이나 어서 끝내 달라는 그 늑은이와 묻는 질문에 포박포박 대답이나 하라는 진행자간의 팽팽한 긴장과 모순은 결국, 조선일보에 의해 중단됐다. 셋더마우스를 뜻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한나라당〉 “이러저러하니, 이래저래 하니 … 지만원은 우익이 아니란 말이야.”

〈조선일보〉 “이러저러하니, 이래저래 하니?… 지만원 같은 악플러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건 아니면 다른 무슨 방안이건 무책임한 사이버 폭력을 몰아내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앞말은 길어지고 뒷말은 짧아지는 조선일보만의 언어적 격렬함은 우익 안에 새로운 리듬감을 생성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시스템 늑은이는 과기스러운 악플이 천사를 노려보고 있는 인터넷의 풍경과 기막히게 매치되었으며, 나경원의 처절함과 최진실의 절명함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얹혀든 시원한 뿔림이었다. 고마워요, 시스템 늑은이. 잘 썼어요, 당신 따위. 내게 중요한 것은 ‘사이버모욕죄’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천사를 향한 그 늑은이의 도발은 그 늑은이가 장사속으로 천사를 팔려 인터넷에 오르던 그 순간에 이미 어쩔 도리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구? 이유는 조선일보만이 안다. 너와 내가 그 시간에 우연히도 인터넷에 함께 올라, 늑은이를 욕하든 천사를 욕하든 ‘우리’라는 이름의 악플러로 불리게 된 어떤 이치처럼. 어떤 집단 그리고 그 집단 내 사건들은 명확한 결론 없이 흐르기만 할 뿐이고, 그것은 누구도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이 ‘사이버모욕’이 될 뿐이다. 언제나 악플이 있고, 그건 때때로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나경원처럼 모든 악플을 일일이 삭제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순 없잖아? 바쁘디 바쁜 국회의원 나리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 늑은이는 결국 다시 한 번 천사를 걷어찼다지만, 조선일보는 보란 듯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쏟아 부었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이런 때 일어나는 법이지.

〈조선일보〉 “거, 좀 ‘입법’ 합시다.”

그 늑은이와 천사를 횡단하며, 인터넷 안의 긴장을 날카롭게 찢고 든 조선일보의 오래된 외침은 실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반전이었고, 나경원 외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발력이었다. 생각해보라, 우린 이렇게 앞가림조차 분간할 수 없는 무거운 엉덩이를 걸친 사람들이다. 아, 어쩌란 말인가. 그럭저럭 겨우 ‘우리’가 네티즌이 된 것 뿐인데, 그 모두를 동일한 모욕이라 하여 처벌하겠다는데. 지만원이 나쁘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찬성하세요. 조선일보,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별지 4〉 기사내용2

[비추] 국민여동생에게 씌운 연좌제의 굴레, ‘빨치산 논쟁’ 지만원 글

포랑포랑한 큰 눈에 귀여운 외모, 탄탄한 연기력과 나이답지 않은 착한 마음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여동생’ 문근영. ‘국민여동생’ 호칭을 김연아 선수에게 살짝 넘겨주긴 했으나, 요즘 TV에서

‘계살몽땅’을 깜찍하게 부르는 그녀는 여전히 우리들의 엄친딸 ‘국민여동생’이다.

이런 문근영씨를 향해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며 거침없는 말을 퍼부은 지만원씨의 글을 2008년 인터넷 비추 게시글로 꼽았다. 지만원씨는 지난달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여자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공식 확인한 직후부터 문근영씨에 대한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잠시 지만원씨의 글을 감상해 보자.

“하지만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2005년 외할아버지가 죽기까지 빨치산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니 마음이 씁쓸하다. 연좌제는 전두환 시절에 이미 철폐했기에 빨치산 외손녀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전까지도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훌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문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인터넷에서 지씨의 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여러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지씨는 급기야 “좌익세력에 의한 인민재판”이라며 문근영씨의 선행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빨치산 가문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11일 ‘모든 언론 및 언론인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 인격과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그것들도 중요하다”며 “저에 대해 위와 같이 비난하시는 분들은, 좌익 매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것을 지적하고 나선 저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는 사상적 편향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 따르면 지씨는 <미디어스> ○군과 진중권씨를 비롯한 8개 대상에 이미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선일보 △SBS △경향 △한겨레 등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인격과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그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은 지만원씨 스스로 한 말이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나, 명확한 한 가지는 지씨는 글을 쓰면서 문근영씨의 인격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씨의 글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문근영씨에 대한 명예를 얼마나 크게 훼손했는지 먼저 곱씹어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상적 편향은 말할 것도 없고.)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현대차 노조가 실제 사용하는 휴일수가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최대 일수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는 2009년 4월 9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는 조선일보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기사 등 총 7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제1~5기사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거나 의견표명이라면서 그 불법성을 부정하였고, “제 6, 7기사 역시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전달 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제 6, 7기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수의 최대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4년 11월 3일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원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305~318면 참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05년 10월 18일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259~271면 참조)

판결문

사 건 : 2005다6549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명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4. 9.

주 문 :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원고는, 현대자동차와의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을 실시한 끝에, 2003. 8. 5. 현대자동차와의 사이에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는데, 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합의의 금액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를 2003. 9. 1.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고,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4)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5)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위 잠정합의에 따른 휴일수에 관한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기사의 형식과 게재일자 및 게재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기사 내지 제7기사가 포괄하여 1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 4, 5기사에 관하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부분과 함께 전체적 ·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3, 4, 5기사의 내용 및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 4기사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와의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 ·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않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5기사는 위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로 인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그 기초로 적시된 사실에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제3, 4, 5기사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제3, 4, 5기사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1, 2기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실의 형식으로 보도된 제1, 2기사는 원고의 투쟁방향이냐 전임자의 숫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개략적인 상황을 적시한 다음,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의 쟁의행위를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피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2기사는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실전달 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보도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피고의 평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임자의 숫자나 노조원의 임금수준에 관한 보도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 또는 그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모두 연결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부분 중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주관적인 명예감정 등을 침해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제1, 2기사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제1, 2기사에 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6, 7기사에 관하여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실 및 오피니언의 형식으로 보도된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에 나타난 원고 조합원들의 임금과 휴일의 수준, 위 노사협상의 배경과 결과 등에 관하여 개략적인 상황을 적시한 다음, 이러한 협상내용을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6, 7기사 역시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전달 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제6, 7기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수의 최대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은, 제6, 7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보도부분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 사례

기타 사례

**화해권고결정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장이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이 합의를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미이행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2044 판결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09년 5월 20일 기독교복음선교회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그 소속 신도 20명은 피고가 원고 및 그 총재인 소외 정명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4가합64765호로 손해배상(기) 및 방송보도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2005년 8월 2일 <원고측의 방송내용 중 제보자 측의 저속한 표현과 행동이 담긴 장면 및 그 내용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원고측에 관한 방송을 제작·보도할 경우 원고측의 반론내용을 논평 없이 공정하게 동시에 방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위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년 6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JMS 정명석 체포, 남겨진 의혹과 진실』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의 총재인 정명석에 의한 한국인 여성신도 성폭행 사건 의혹 등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사항을 10회 위반하여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한 표현과 행동’에 관해서는 “ ‘저속’이란 그 자체로서 특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법리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최소한 목시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는 확정방법이 존재한다면 그에 의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한 표현과 행동’과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기타의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정명석은 피고가 보도한 바와 같은 비리사항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고, 결국 피고가 보도한 바는 대부분 사실과 일치되는 점이 밝혀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국가에 대해 이와 같은 부당함에 터잡은 합의내용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위에 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는 스스로의 주장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위 합의에 터잡아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허위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엮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원고의 권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되어 오히려 과거 원고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마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2010년 5월 26일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3회 위반하였다며 원심을 번복, “9천만원의 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원고 일부승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12044 집행문부여의소

원 고 : 기독교복음선교회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 2009. 4. 29.

판 결 선 고 : 2009. 5.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4765 손해배상(기) 및 방송보도금지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소속 신도 20명은 피고가 원고 및 그 총재인 소외 정명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4가합64765호로 손해배상(기) 및 방송보도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2005. 8. 2.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이 사건 결정사항’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에 위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중파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원고측(원고측이라 함은 원고 기독교복음선교회 또는 정명석 총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1999. 3. 20.자, 2002. 11. 2.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및 2004. 6. 13.자 ‘세븐데이즈’의 각 방송보도 내용의 전부를 재방영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각 방송보도 내용 중 일부를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제3항에 따르되, 제보자 측의 저속한 표현과 행동이 담긴 장면 및 그 내용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프로그램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외 김○○, 김□□의 직접적인 제보 또는 자료제공 등에 의한 원고측에 관한 방송을 제작·보도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프로그램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측에 관한 방송을 제작·보도할 경우, 속보성 뉴스 등 방송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외의 기획·편집 방송의 경우 등에는 최소한 방송 48시간 이전에 원고측에게 방송의 기본적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측의 반론을 접수한 다음, 당해 방송보도 내용 중에 방송시간의 적어도 5%의 시간 동안 원고측이 제공한 자료화면과 함께 원고측의 반론내용을 논평 없이 공정하게 동시에 방영한다. 다만, 원고측은 피고의 방송준비를 위하여 최소한 12시간 이전에 위 반론내용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만일 피고가 제1, 2, 3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매 위반시마다 손해배상으로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5. 8. 22.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중 “원고측이 제공하는 자료화면과 함께 원고측의 반론내용을 논평 없이 공정하게 동시에 반영¹⁾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편집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원고측이 제공하는 자료화면이나 원고측이 제시한 의견 또는 반론이 왜곡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동시에 반영한다”는 취지임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 자사 방송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하여 ‘JMS 정명석 체포, 남겨진 의혹

1) 앞서 본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에 비추어 ‘방영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과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총재인 정명석에 의한 한국인 여성신도 성폭행 사건 의혹 등에 관하여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라. 한편 정명석은 2008. 2. 27.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2. 10.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2199)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정명석의 상고(대법원 2009도200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1999. 3. 20.자 및 2002. 11. 2.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 비디오 테이프를 각 판매하여 이 사건 결정사항 제1항 본문을 2회 위반하였다.

나. 피고가 추후 원고나 정명석에 관한 방송을 제작·보도시 1999. 3. 20.자, 2002. 11. 2.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및 2004. 6. 13.자 ‘세븐데이즈’의 방송내용 중 일부를 자료로 사용하되 제보자측이 악을 쓰거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사항 제1항 단서에서 “제보자측의 저속한 표현이 담긴 장면 및 내용”을 사용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에서 기존 방송내용 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① “치마 속으로 막 손을 넣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② “인간의 가족을 덮어쓰고... 짐승이야, 짐승. 우리는 무덤에 갈 때까지 따라간다.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③ “정명석은 반드시... 희대의 색마 정명석은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의 눈물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내어 위 결정사항 제1항 단서를 3회 위반하였다.

다. 피고가 김○○, 김□□로부터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정명석을 급습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김○○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에게 대한 폭력사건과 관련한 사진과 중국 공안국이 소외 윤○을 취조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방송에서 방영하여 이 사건 결정사항 제2항을 3회 위반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 48시간 이전에 정명석이 중국 안산시에서 한국여성 납치 미수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방송보도내용과 원고가 정명석이 중국 안산시에서 한국여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진단서와 중국 공안 검사의 의견서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보도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문을 1회 위반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반론보도영상을 먼저 방영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위 반론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측의 반론내용을 논평 없이 공정하게 방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후문을 1회 위반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을 총 10회 위반하여 이 사건 결정사항 4항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0원(= 30,000,000원 × 10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한 표현과 행동’에 관하여

(1) ‘저속’의 개념 및 관련 법리

통상의 사전적 풀이에 따르면, “음란”이란 “음탕하고 난잡함”을 의미하고, “저속”이란 “품위가 낮고 속됨”이라고 풀이되는데, 그렇다면 “저속”이란 그 외설성이 음란에는 달하지 않는 성적 표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및 욕설 등 상스럽고 천한 내용 등의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이 “저속”의 개념은 우선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저속”이라는 문언은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인 바, 환언하면 “저속”의 개념에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어서, 성을 소재로 한 유머나 왜곡된 사회도덕이나 윤리를 풍자하는 다소 품위없는 표현도 여기의 “저속”에 해당될 수 있고, 한두 번의 폭력적인 표현이나 살인현장의 다소 상세한 묘사도 여기의 “저속”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개념 자체도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속”의 의미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95헌가16 참고).

물론 위에서 본 내용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에 관하여 제시된 법리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의 위헌성을 다루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2009. 5. 현재 공연법 시행령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이 아직도 ‘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저속’이라는 용어가 법령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근본적으로 의미를 달리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대해 항상 위에서 본 바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2)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의 일부로서의 ‘저속’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판결상의 주문과 같은 의미와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주문에 대해 요구되는 간결성과 명확성이 요구되고, 결정사항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속’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특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법리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는 확정방법이 존재한다면 그에 의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한 표현과 행동’과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덧붙이는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속’은 특별한 정의방법이 부가되지 않고는 특정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저속’하다고 볼 만한 상황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동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저속’의 개념이 ‘음란’의 개념보다 넓다는 의미에서 단계적 구조로 이해한다면, ‘저속’의 개념을 어떻게 보더라도, ‘음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저속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속’은 명확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저속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의하여 일정 영역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주문 또는 화해조항의 해석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영역의 존재만으로는 명확성이나 특정성의 결함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표현이나 행동이 ‘저속하다’거나 나아가 ‘음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살펴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사인간의 의사에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문제가 된 보도내용, 피고의 지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언론자유 제약문제도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언론자유 역시 민주사회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합의의 당사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후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내용과 경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되는 자유와 제한 정도 및 각 당사자들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속’이라는 용어에 의하여 포괄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에 터잡은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타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언론자유 제약의 한계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하겠는데, 주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이를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합의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권리행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임이 드러난 경우나 여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역시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달리 볼 여지가 생기게 되고, 비록 그 합의에 기관력을 비롯한 소송법적인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소송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 매우 높은 정도로 존중되어야 함 역시 극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후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합의의 실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고, 그러한 허위의 점이 판결 등을 통하여 높은 정도로 공인되고, 또한 그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나 합의가 실행되었을 경우의 결과가 도저히 수긍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 실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에서 본 각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피고의 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된 당시에는 정명석이 국외도피 중이어서 정명석에 대한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가 정명석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 높은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원고측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성립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간 점과 원·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자체가 하자있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뒤로 정명석은 피고가 보도한 바와 같은 비리사항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고, 결국 피고가 보도한 바는 대부분 사실과 일치되는 점이 밝혀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국가에 대해 이와 같은 부당함에 터잡은 합의내용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위에 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는 스스로의 주장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위 합의에 터잡아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허위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원고의 권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되어 오히려 과거 원고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마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보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 제약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그리 높지 않고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에 기초한 권리주장만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사항 전체에 의한 권리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옳다. 아울러 이러한 점은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저속’에 대한 판단을 위에서 본 바와 달리 하는 경우, 그 ‘저속’의 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방송내용 생략

〈별지 2〉 범죄사실 생략